

2018년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추계학술회의

관념사와 동양정치사상

일시 : 2018년 10월 27일(토) 14:00-18:15

장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주최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협찬 :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모시는 말씀

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최고라고 기록을 경신하던 여름 더위가 아련한 추억으로 희미해질 정도로 아침저녁의 일교차가 커진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의 10월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추계 학술회의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총 네 분의 선생님께서 관념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약조하여, 이번 추계 학술회의에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래의 일정을 참조하시어 주말 오후이지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일

회장 박병석

프로그램

《관념사와 동양정치사상》

- 일 시 : 2018년 10월 27일(토) 14:00-18:15
- 장 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동 B104호
- 주 최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협 찬 :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 개 회 사 : 14:00-14:10 박병석 회장(서울사이버대)

- 제 1 세션: 14:10-15:30
 - 사 회: 정운재(한국학중앙연구원)
 - 제 1 발표: 김 혁(전북대) <조선 왕의 형상과 관념>
토론: 이병택(동북아역사재단)
 - 제 2 발표: 김봉진(기타규슈시립대) <“조선 = 속방(屬邦)”의 개념사>
토론: 전세영(부산교대)

- 제 2 세션: 15:45-17:05
 - 사 회: 이택선(한국외대)
 - 제 1 발표: 강상규(방송대) <주권 개념의 도입과 한국근대사>
토론: 권선홍(부산외대)
 - 제 2 발표: 변성호(서울대) <혁명 이전의 혁명 관념: 해방 이후부터 4. 19
이전까지>
토론: 남광규(고려대)

- 제 3 세션: 17:15-18:00
 - 사 회: 박병석(서울사이버대)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전원 토의 참여

- 연구윤리 교육: 18:00-18:15
 - 진 행: 권행완(다산연구소)

- 만 찬: 18:30-
 - 장 소: 박가네하이포크(강북구 덕릉로28길 63, 02-982-2929)

목 차

조선 왕의 형상과 관념	김혁 01
“조선 = 속방(屬邦)”의 개념사	김봉진 17
주권 개념의 도입과 한국근대사	강상규 37
혁명 이전의 혁명 관념: 해방 이후부터 4. 19 이전까지	변성호 65

조선 왕의 형상과 관념

김혁(전북대)

목 차

1. 머리말 : 어쩌서 조선 왕을 이야기하는가?
2. 조선 왕의 권력 조건
3. 왕의 형상과 위(威儀)의 개념
4. 왕의 관념: 덕의 표상과 은혜의 정치
5. 맺음말

1. 머리말 : 어쩌서 조선 왕을 이야기하는가?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1987년에 김용옥 선생이 6.29 선언의 의미를 대중에게 피력하였던 글의 제목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정치 팜플렛에 가까운 그 글의 내용은 아득히 잊혀 졌지만 제목만큼은 뇌 속에 또렷한 것을 보면, 적어도 필자에게 그의 테제가 당시즘에 입각한 운동권의 어떤 현실인식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이 분명하다. 왕정/민주정 프레임은 꼭 한 세대만큼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돌이켜 보아도 1987년 체제를 부르주아 체제의 출발로 보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 지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학술적 관점에서 되짚어 볼 때, 이 테제가 과연 현실의 어느 면에 어느 만큼 부합하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1987년 이전이 왕정이라면, 조선 왕정, 일제 강점기의 총독부 통치, 군부독재를 한 가지 틀에서 묶어 파악한 것일 텐데, 이는 이론적으로 지나친 무리가 아닐까? 그 이후를 민주정으로의 진전이라고 보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 지적일까? 무엇보다 그가 말한 왕정은 무엇이고, 민주정은 또 무엇인가? 잇따르는 이런 의문이 당시에 찾아든 것은 아니었지만, 세월이 한참 흐르고 보니 어쩌서 그때 그 말이 내 귀에 솔깃하였고, 지금은 어쩌서 의아하게 여겨지는지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일정한 생애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개월 수에 따라 수십 가지의 백신 주사가 기다리고 있고, 더 자라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른바 국민 교육(혹은 시민교육)이라는 정신 백신을 더 맞아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치려야 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최초의 의무인 셈이다.

반성의 차원에서 여기서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신 백신의 성분이다. 과거의 어느 때에 이 백신에는 반공과 민주정이 반반 쯤 섞여 있었고, 오늘날에 가까워질수록 후자의 비율이 훨씬 높아져왔다. 이 성분은 민주정은 공간적으로 반공과 짝을 이루는 동시에, 시간적으로는 왕정과 길항하는 짝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왕정은 민주정의 거울상으로 여겨질 만큼 시간의 배열에서 서로 마주보아왔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어느 국가를 왕정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 국가의 후진성에 모욕을 가하거나 조롱하는 일이다. 아무리 독재 옹호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횡행하던 유신 치하의 교실에서도 왕정 그 자체를 정당화하는 법은 없었다. 군사 정부의

독재자들조차 민주정의 형식에는 민감하여 자신의 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하였는지 몰라도 떳떳한 것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집단까지 이어져 있어서, 최근 명성교회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재까지는 몰라도 세습에 이르면 사람들은 더욱 공분하고, 심지어 사기업인 삼성이 독재와 승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씨 왕조’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에게 왕의 정치는 더할 수 없는 욕설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개념적 대립쌍인 민주정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그렇게 확고한 것은 아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에서 고안된 민주정은 왕정과의 대결 속에서 수백년 간 자신의 피를 뿌리고 결국 왕의 피를 마시며 성장한 역사적 실체가 있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그 민주정이 머문 지점은 어디까지나 루소의 직접 민주정도 아니고, 오늘날과 같은 대의제 민주정이다. 왕정과 대의제 민주정 사이에 과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 대의제 민주정조차,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왕의 목을 실제로 벤 것은 프랑스의 경험이었고, 우리는 그저 그것으로부터 왕정/민주정의 도식을 배운 것일 뿐이다. 학습 과정은 돈키호테가 기사도를 습득하고 보바리 부인이 연애의 환상에 들떠가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모두 책을 통하거나, 풍문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낭만적인 정서가 농후하다.

그나마 민주정이 우리 역사에서 자신의 실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그것은 독재정이지, 왕정은 아니었다. 군부독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동원된 왕정 개념도 프랑스혁명의 왕정이지, 조선의 왕정은 아니었다. 우리가 혹시 돈키호테처럼 풍차를 거인으로 혼동한 것은 아닐까? 이는 민주정과 왕정을 둘러싼 서양사와 한국사의 접점에서 벌어진 해프닝만은 아닐 것이다.

한 발 물러서서 군부독재를 왕정으로 은유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그 왕정이 앙상 레짐의 왕정인지, 오리엔탈리즘의 왕정인지, 조선의 왕정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 중에서 단점만을 뽑은 왕정인지,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아닌지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왕정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면 사실상 그것의 개념쌍인 민주정의 개념도 불분명한 것이고, 민주정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면, 민주정을 추구한다고 선언한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지난 일을 되돌아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민주정이 아니라면 무조건 왕정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념적인 오인이 초래하고 있는 혼란 중에서 비근한 예 하나를 들어보자. 우리의 교실에서 민주정과 대비된 왕정에 대해 강한 혐오를 교육하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에서 역사적 위인으로 지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왕이나 왕의 신하들인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그들로 채워져 있다. 세종대왕, 이황, 이이, 이순신 등에 얼굴이 실린 그 위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왕정을 제대로 실행할까를 고심하였다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매우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왕정은 극단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올바른 왕정을 꿈꾼 사람들을 위인으로 숭앙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오늘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왕정/민주정’의 인지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고 이것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내고 있지만, 사실상 이 인지 장치가 어떤 의미인지, 현실에 어느만큼 부합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된 적은 없었다. 왕정은 한 사람이 다수를 통치하는 것이라면, 민주정은 다수가 다수를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형태적 구별은 가능하겠지만, 푸코가 지적하였듯이 그로부터 한 층위 더 내려와 사회 통치의 기술에서 보면, 이 둘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주정의 경우 더욱 강력한 강철 우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실상 이러한 개념의 불일치는 현실적으로 많은 비극을 초래한다. 민주정의 원리를 최상의 가치로

주입받은 젊은이들이 왕정의 질서로 오인하기 딱 좋은 대부분의 사회집단에 들어가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다.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왕정/민주정 프레임을 회의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때에 근래 우리 역사에서의 왕,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의 왕에 대한 학계나 대중의 관심이 갈수록 비등해지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 연구들은 다음의 두 방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왕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세종이나 영조, 정조와 같은 왕들이 통치자로서 갖는 위대성이나 매력을 재확인하면서 통치 기술의 놀라움에 감탄하거나¹⁾, 광해군이나 고종과 같은 왕들이 갖는 기존의 오명을 벗겨주려 한다.²⁾ 이는 확실히 우리의 위대성을 과거를 통해 투영하려는 민족주의의 영향이다. 혹은 최근 이영훈의 세종 연구처럼 근대성의 관점에서, 세종의 통치에 대한 수정주의적 관점을 제시하며, 기존의 환상을 일깨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³⁾ 이는 말시즘적 근대화론의 내용적 변용이다.

위의 작업을 통해 드러난 왕은 민주정의 거울상으로 비쳐진 이론적으로 도입된 이념적 왕이 아니라는 점에서 왕정의 이해에서 한 걸음 진보가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역시 오늘날의 시각을 강하게 투사시킴으로써 현실의 필요를 영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념적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사실상 이들이 사용하는 자료들은 왕의 입장에서 생산된 선전용 자료가 대부분이므로, 이것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접근한다면, 또는 그 번역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개입하는 한, 편향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중들이 왕의 권력에 관심을 갖는 데에는 이와는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왕정을 폐지한 부르주와 민주정이란 상위 계급 간의 이익 대립을 대중정당이나 대의제를 통해 공화의 형식으로 해소하려 하지만, 사회적 수준에서 기업이나 종교집단, 학교, 관료집단 등이 서로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각각의 왕국을 구축해내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화제의 실질적인 내용은 결국 이익 집단 간에 국가 존립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서로의 이익을 지켜주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결국 민주적인 공화제는 수많은 왕국들이 연립해 있는 구조를 부추기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한 명의 큰 왕이 사라지자, 만 명의 작은 왕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로의 영역을 넘을 수 없는 강철 우리로 만들어진 각각의 사회 셀 안에서 권력과 통치는 절대화되어 가고 있다. 그들의 제왕적 통치를 비판하는 시사프로의 고발이 연이어 지고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무방비상태이다. 이러한 전제적인 미시 권력은 과거의 유제로 오인될 수 있지만 참으로 새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권력에 대해 전 시대의 왕만큼 광범위한 자료를 남긴 경우는 드물 것이며, 그들의 권력은 이러한 관점에서 참고 되고 있는 것은 생각한다.

이 글의 논의로 왕의 권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앞서 지적한 편향을 넘어서기 위한 한 방편으로, 우회로를 택하려 한다. 그것은 왕에 대한 우리 시대의 소망을 투사하는 것 대신에 당시 사람의 눈으로 파악된 왕의 모습을 되짚어보려는 방도를 취할 것이다. 이는 왕의 형상을 둘러싸고 왕과 신민들 간에 형성된 시선의 긴장을 해명함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의 관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해의 관점에서 아울러 고려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여기에는 사실상 민주정의 거울상인 왕정을 둘러싼 오늘날 우리 관념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물론, 오늘날 우리의 원형 경기장에서 안쪽을 향해 유일한 진리로

1) 박현모, 『세종처럼』, 미다스북스, 2014. 등등.

2) 한명기, 『광해군-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 역사비평사, 2018. 등등.

3) 이영훈,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백년동안, 2018.

대중이 열광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체를 다른 쪽을 헤아려 봄으로써 진지하게 다시 회의해보는 실험실을 새로 여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 조선 왕의 권력 조건

왕정은 문명이 출현한 이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정치제도이다.⁴⁾ 지구 위의 일부 고립 지역을 제외하고 왕정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왕정을 유지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적지 않다. 어느 한 지역에서 발명되어 특히 근대에 들어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민주정과는 달리, 서로 교류가 없던 모든 지역에서 저마다 독자적으로 생겨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왕정은 자연스러운 제도였다. 따라서 현대인의 조상들은 대부분 왕의 신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왕정은 왕의 정치를 뜻하므로, 왕이 출현한 뒤에 왕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기술되지만, 사실상 이는 논리적 추론에 불과할 뿐이다. 왕이 출현하기 전에 왕정의 출현이 가능한 조건이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한 조건이 형성된 곳이라면 어디서나 왕은 출현할 수 있었다.

인류학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왕정의 출현은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영향 받은 결과이다. 하나는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족 간의 싸움을 중재하고자 하는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처한 위험(대표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집단적 대응의 필요에 기인한다.⁵⁾ 이 둘은 어느 것이 먼저냐를 결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지만, 어째서 부족 간에 중재의 필요가 발생하는가를 고려한다면, 그 필요조차 위험에 응대하는 결속 과정에서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공동의 위험이 선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왕정, 또 그에 따라 왕의 조건은 문명의 전개 과정에 조응하여 출현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위험의 제거와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체제가 반드시 왕정일 필요는 없겠지만, 김수로왕이나 김알지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신성한 이를 추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알기 쉽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러한 성립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왕정이 전쟁 상태에서 더욱 활성화되었으리라는 추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는 서양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그리스의 많은 왕들은 서로 간의 전쟁을 멈추고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었다. 구약의 왕들도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오디세우스의 여로에서 보여주었듯이 그의 싸움은 매우 독특하여, 그 목적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부하들을 무사히 귀환시킬 책무였다. 결국 10년 동안의 수많은 위험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며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단순한 용맹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부적인 분열을 획책하는 기묘한 적들과의 싸움이였다. 이 싸움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전쟁과는 다른 외부적 위험에 직면하여 꾀바름에 가까운 지혜가 요구되며, 이는 부하들을 통합시키는 방략과 연관된다.

그런데 왕들이 항상 전쟁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에 이겨서 왕의 권력이 내부로만 향하게 되면, 외부로 향한 무력적인 투쟁 보다는 조정과 화합을 통한 평화의 유지에 더 힘을

4) David Graeber, Marshall Sahlins. *On kings*, HAU Books, 2017.

5) 마르셀 에나프 지음, 김혁 옮김, 『진리의 가격-증여와 계약의 계보학, 진리와 돈의 인류학』, 눌민, 2018.

써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덕목은 통합을 위한 자애, 명변(明辨), 관용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위험이 반드시 전쟁일 필요는 없다. 『서경』에서 요임금에게 자신의 권능을 필요로 한 위험이 홍수와 맹수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⁶⁾ 왕정의 조건은 집단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위험과 그로인한 대처의 차이를 두고 카를 비트포겔은 동양적 전제주의 가설이 제기하며 동양 사회의 특수성을 언급한 바 있다.⁷⁾ 환경의 차이에 의해 특수성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사실 그 같은 주장은 위험과 대처의 어떤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 불과하다.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성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동조하는 한, 왕의 존재는 매우 실용적이어서, 사실 그 때문에 왕정은 언제 어디서나 출현하였고, 심지어 거부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위험의 대처와 내적인 통합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지만, 이는 사실 상 왕에게는 동시에 수행해야 할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능력으로 요청된다. 이를 수행할 적격자에 대한 현실적인 요청은 왕정의 조건과 이와 같은 왕정에 부합하는 왕의 성격을 미리 결정한다. 한마디로 왕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워야 하고, 사나우면서도 관용적이어야 한다.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든 이러한 이율배반의 다중성을 갖추는 것은 훌륭한 군주에게서 보이는 미덕이자, 성공한 군주의 조건이었다.

만일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일관되게 고집하거나, 현실을 오인하여 도치하여 대처하면, 매우 큰 파국을 맞게 된다. 용맹의 폭력성을 외부의 적에게 현시하였을 때에는 영웅으로서 칭송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신민에게 그러한 얼굴을 돌렸을 적에는 자칫 과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폭군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십상이다. 자애와 관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부 통합에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외부의 적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보일 경우 어리석은 군주로 낙인찍히는 경우는 너무나 빈번하다.

이는 한 인격에게 요구되는 다중성이 얼마나 어려운 요구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요구는 왕과 같은 통치자에게는 당연히 요구될 일로 여겨졌고, 언제나 그렇듯이 전대 왕들의 이와 같은 왕의 활동이 준 역사적 교훈들은, 후대의 지식인들에 의해 왕 뿐 아니라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 윤리로 변모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공자의 경우는 이를 시중(時中)으로 정리하였고, 마키아벨리 역시 역사적 현실을 통해 군주의 다인격성을 주장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시중과 다인격성은 결국 같은 논리의 다른 양태이다. 공자와 마키아벨리의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덕목을 윤리적으로 혹은 정치의 기술로 강조하였다는 것뿐 아니라, 사실 상 이는 새로운 성격의 덕목을 제시하였다기보다는 고대에 왕에게 요구되던 덕목을 다시 복원, 혹은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왕정의 조건에 대한 인식을 딛고 보자면, 조선 왕의 성립 조건을 조선이 개창한 순간부터만 고려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왕의 통치가 독특하기는 하다. 주인의 노예 통치와 대비하여 보더라도, 이는 통치라기보다는 차라리 마술이다. 노예를 통제하는 주인은 대면적으로 상징과 폭력을 동원하여 직접 지배를 수행할 수 있겠지만⁸⁾, 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민들을 일일이 대면하여 통제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추상도 높은 마술을 필요로 한다.⁹⁾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마술을 구사하는 왕이라도, 그는 한 명이고, 신

6) 『서경(書經)』, 「요전(堯典)」.

7) 칼 A.비트포겔 저, 具宗書 역, 『東洋의專制主義：總體的 權力の 比較研究』, 法文社, 1991.

8) 주인의 노예 통제에 대해서는 Orlando Patterson, *Slavery and social death : a comparativ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참조할 것.

9) M. Taussig, *The Magic of the State*, Routledge, 1997.

민(臣民)은 수십만 혹은 수백 만 명인데, 한 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수를 혼자 힘으로 그것도 어느 한 때에 복종시킬 수 있는 기술은 세상에 없다. 조선의 태조가 왕의 자리에 올라 수십만 명을 복종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에도 기인하겠지만, 그보다는 한반도에서 고대로부터 축적되어 온 사회적 통치 기술이 사회에 축적되어 내려온 결과이다. 게다가 그의 마술이 펼쳐지기 이전에 신민들은 이미 마술에 걸려 있어서, 새로운 마술이 펼쳐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마술이 시연될 장소가 없었다면 사실상 마술은 무용할 것이다.

조선의 왕들도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자기 왕조를 성립한 공을 자기 왕조의 노력에만 돌리지 않았다. 예를 들면 태조는 자기 왕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김유신의 자손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며 우대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수인 후손들을 자신의 정권 안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현실적 고려도 한몫 하겠지만, 정작 태조가 든 이유가 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조선의 현재 강역이 김유신에 의해 확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관념에서 왕조를 새로 개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만큼은 새로운 왕조가 그 전대 모든 왕조의 유산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산에는 강역뿐 아니라 인구, 재화, 정치적 유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이는 사실상 매우 정밀한 현실 인식이다.

이 같은 왕의 자리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선의 왕이 갖는 지위, 특히 그들의 권력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부딪친다. 많은 연구자들이 고대부터 조선까지 왕의 치적을 평가하면서 가장 널리 사용하였던 용어 중 하나가 ‘왕권 강화’이다. 서술 방식을 보면, 이 용어의 사용이 모호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왕권강화가 어느 특정한 왕 개인이 귀족이나 다른 지배 세력들과 경합하면서 이루어진 권력 강화인지, 아니면 왕의 자리 그 자체가 강력해 지는 것인지 모호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관료제의 정비는 이 둘 모두일 수 있지만, 특정 세력을 숙청하는 일은 왕 개인의 권력에 해당한다. 조선 왕들의 실제 양태를 관찰해보면 동일한 왕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통약하여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행사하였던 왕권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듯이 비친다. 예를 들어 단종이나 연산군, 광해군 같은 왕은 중도에서 신하들에 밀려 권좌에서 내려왔고, 태종이나 세종, 영조, 정조 같은 왕은 신하들을 제압하여 더할 수 없이 많은 권력을 휘둘렀던 것같이 여겨진다. 왕 개인의 특성에 비추어 왕권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은 왕의 자리에 부여된 왕권과 왕 개인이 그 자리를 활용한 왕권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은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미 설정된 왕의 권리를 활용하는 것에 가깝다.

만일 통상의 이해 방식처럼 왕의 권력을 왕 개인의 특질에만 귀속시키려한다면, 왕의 나이, 성격, 전력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왕권 이해는 매우 곤란하다. 선조가 즉위하였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15세였다. 그렇다면 즉위 당시 선조의 왕권은 약한 것이어야 한다. 한창 혈기 방장할 때인 25세에 즉위하였던 정조와 대비해 보면, 대신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그렇다고 왕권 자체에 변동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그리고 같은 왕의 재위 기간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위상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예컨대 영조의 경우만 하더라도 온갖 역경을 딛고 즉위한 초기로부터 말년까지 그의 존재적 위상을 살펴보면, 불가사리처럼 계속 존재를 불려 나갔음을 존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는 그러한 존송 과정을 자신의 정치 행위에 적극 활용하였다.¹¹⁾ 그는 주어진 왕권을 자신의

10) 김혁, 「駕洛三王事蹟考의 간행과 金海金氏의 ‘문화의 정치’」, 『규장각』 50, 2017.

정치 역량으로 잘 활용하려 하였던 왕이지, 왕권 그 자체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고 보는 것은 불가하다. 오히려 그 반대의 해석, 이를 테면 왕권의 약화가 됨에 따라 왕의 작위적인 활동이 심하였다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조선 왕을 제한하고 있는 중대한 조건 하나를 더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왕의 권력은 명목적으로는 황제의 책봉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황제가 통치의 권리를 인준해 주는 형식으로 권력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 인정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추인(追認)에 불과하였다.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사후에 인정받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으며, 추인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어도, 즉위 사실이 뒤집힌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게다가 조선의 왕이 통치의 정당성을 중국 황제에 기댄 적도 없었다. 이는 책봉과정에서 전달하는 책력의 의미를 탐색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선은 중국의 책력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이는 중국 황제의 시간, 다시 말해 공간에 포섭되는 복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 행위였다. 이것이 복속의 의미라는 것은 명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족들이 명의 연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점, 노론 집안에서는 책력에서 청의 책력을 사용하되, 청의 연호가 있는 부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반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은 매년 명이나 청에 동지사를 보내 새로운 책력을 받는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그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의례적 표현에 불과할 뿐 관상감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책력을 사용하였고, 중국 사신들이 내방할 때면 연로에서 조선에서 제작한 책력을 숨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조선 왕이 자신의 왕국을 독립적인 시간간 안에 두고자 하는 의도도 한 몫 하였던 것 같다.¹²⁾

조선 왕이 중국 왕과는 다른 원리로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천자라는 말에서 살필 수 있듯이 왕은 천(天)의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표명하며 천제(天祭)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천하에 공표한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제후국인 조선에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며, 더욱이 위에서 살폈듯이 신민 통치에서 중국 천자로부터 권위를 빌려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권력 구조를 확립하려 하지 않았던 것도 알 수 있다.

3. 왕의 형상과 위의(威儀)의 개념

왕은 신민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고, 또 신민들도 자신이 보았으면 하는 모습으로 보고자 한다. 보이고자 하는 모습과 보고자 하는 모습은 서로 마주 비치며 소실점을 형성하고, 그 소실점의 끝에 형상이 형성된다. 따라서 형상은 서로의 소망을 반영하기에, 서로(특히 보여주고자 하는 쪽에게는) 일종 규범으로 작용하는데, 왕은 이 형상을 통해 도리어 자신의 현실적 모습을 통제하고, 신민들도 기대하는 왕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런 일은 유독 왕과 신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왕에게는 더욱 중요하였다. 사실상 그 형상 때문에 왕의 마술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왕의 형상이란 왕의 실제 모습과 무관하다. 어느 왕이 억지로 지어 자신을 드러

11) 김혁, 「영조의 존호와 왕권 -존숭도감의례를 중심으로」, 『영조대왕자료집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2) 김혁, 「역서(曆書)의 네트워크: 왕의 시간과 일상생활」, 『영남학』 18, 2010.

내는 모습과도 관계없다. 어느 왕에 대한 어느 신민의 주관적인 인상도 아니다. 차라리 그 보다는 왕과 신민이 공유하고 있는 표준이다. 따라서 왕의 형상은 순전히 왕의 것도 아니고 신민의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왕의 것이기도 하고 신민의 것이기도 하다. 관념에 어룡댄다고 허상이라고 말한다면 왕의 형상이 갖는 현실적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 형상에 대한 기댓값에 왕과 신민들이 모두 접근하게 되면 그에게 권위가 부여되어 권력 작동이 원활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왕이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과 신민들이 공유하는 표상과 어긋난다면, 그의 국가는 그의 활동량과는 사실상 실패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그의 권력이 신민들에게 더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¹³⁾

이와 같이 왕의 형상은 왕의 권위가 구현되었는가를 가능할 수 있는 실체적 개념인 만큼, 왕은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질 형상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정조는 세손 시절 지방으로 외유하여 돌아오던 중 볼 일이 너무 급하여 시종에게 고통을 호소하였다. 시종은 마침 가까이 지나고 있던 경기감영으로 세손을 안내하여 간신히 근심을 풀게 하였다. 이 소식이 영조의 귀에 들어갔고, 그러자 영조는 매우 진노한다. 시종들을 모두 의금부로 압송하고 급기야 유배를 보내는 강한 처벌을 내렸다.¹⁴⁾

주기적으로 볼 일을 보는 것은 인간의 생리이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생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리가 자연스런 현상임을 이해 못할 영조도 아니건만, 어쩌서 그토록 분노하였던 것일까? 그의 말 그대로 옮기자면 세손으로 하여금 ‘위의(威儀)’를 잃게 했다는 것이다.

집작 가는 바는 있다. 세손이 근심을 해소하고자 가마에서 내려 허둥지둥 감영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군졸이고, 관노고 아랫사람들이 모두 보았을 것이고, 그것이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 말 중에 ‘얼굴을 들 수 없다’거나 혹은 조선 시대의 청탁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광안(光顔)”에서의 얼굴은¹⁵⁾, 분명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체면의 의미에 가까울 것이다. 실록 번역자들이 ‘나라의 체면’이라고 번역한 ‘국체(國體)’도 신체나 그 일부를 대면적 관계에서 자기 존재를 타자에게 드러낼 때 느끼는 떳떳함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를 잃었다는 것은 체면을 잃었다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의미인 것 같다. 여기서의 문맥과 관련 있는 위의(威儀)의 뜻을 사전에서 참고해 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추려 진다.

‘1) 고대 제향 등 전례 중에서의 동작, 의절 및 사람을 대하는 예의, 2) 장중한 의용과 행동거지, 3) 복식의표(服飾儀表), 4) 제왕 혹은 대신의 의장, 호종.’¹⁶⁾

사전에서 위의 개념들을 뽑아내기 위해 사용된 방식은 대체로 시기 순이므로, 이를 통해 위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역되어 전개되었는지도 동시에 알 수 있다. 원래는 고대의 제례에서 행하는 예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므로, 위의의 문자적 뜻인 ‘위엄있는 의례’라는 말에 가깝게 사용되었다. 그 이후 이 말은 의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례를 행하는 장중한 몸짓을 일컫는 말로 확장되었고, 이후에는 그 몸짓을 수식할 수 있는 복식이나 의장물, 호종들을 가리키는 쪽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용(中庸)』에서 “예의(禮儀)가 3백가지이고, 위의(威儀)가 3천 가지이다.”라는 구절은 1번 뜻의 예문으로 사용하였는데, 공영달은 “威儀三千者, 即《儀禮》中行事之威儀”라고 하여 위(威)를 자세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위(委)와 통용되는 것으로 보고 곡례(曲禮)로 해석하고 있는

13)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로빈슨 지음, 최완규 옮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 2012.

14) 『대전록(待闕錄)』.

15) 김혁, 「조선시대 청탁문서의 특성」, 『고문서연구』 32, 2008.

16) 『漢語大詞典』, 「威儀」.

듯하다. 하지만 맹자는 양혜왕을 일러 “왕을 멀리서 바라보니 그다지 왕 같지가 않았고, 왕에게 가까이 나아갔으나 위(威儀)도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2번의 뜻으로 위(威)의 본뜻이 상대방에게 위협적이다. 위엄이 있다는 뜻으로 새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례를 행하는 몸짓을 위엄의 태도로 보는 것은 꽤 설득력이 있다.

위 맹자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위(威儀)를 왕다움과 연관 짓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부분인데, 이것은 단지 맹자 개인의 주관적 느낌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왕다움의 형상이 그의 머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威)의 여부가 왕다움의 지표이며, 어쨌든 그의 말대로라면 왕다움의 형상에는 위(威)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그는 자신이 왕답다고 여긴 요왕, 순왕, 우왕, 탕왕과 같이 서경에 등장하는 고대의 제왕에게서는 그런 위(威)가 있었다고 상상했을 것이다.

위(威儀)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한편, 사실 그의 위(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한 인상을 준다. 도널드 먼로는 고대 중국에서 사용하였던 “덕(德)”의 자형을 카리스마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는데,¹⁷⁾ 이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위(威)와 덕 사이에는 깊은 친연성이 있는 것 같다.

카리스마 개념은 그리스 식의 ‘카리스’와 성서 식의 ‘카리스’, 로마의 그라티아가 결합하면서 발전하는 경향을 주는 데 그 핵심은 ‘매력’, ‘유혹’, ‘은총’, ‘베품’, ‘무위(無爲)’의 개념이 통합되면서 발전하는데, 여기서 주종을 이루는 정서는 기쁨이다.¹⁸⁾ 그런데 앞 뒤의 문맥을 보아도 위(威)는 기쁨 보다는 엄숙함, 두려움 등 종교 집단이나 군영에서나 느낄 법한 매우 진지한 감정으로 차 있다. 그런데 덕의 한 쪽 측면은 베품의 개념과 일부 결합되어 있음을 『대학』 ‘치국(治國)’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물이 모이면 백성들이 흠어지고 재물이 흠어지면 백성들이 모인다.” 재물을 흠는다는 것은 여민동락(與民同樂)의 개념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기쁨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덕 안에는 위(威)의 엄숙주의와 여민동락의 기쁨이 공존하는 셈인데, 이러한 모순적인 쌍은 앞서 언급한 바 있던 왕정의 조건으로부터 말미암은 왕의 다중적 성격의 덕목과 일치한다.

앞서 영조가 왕세손이 위(威)를 잃었다고 지적한 대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일인지, 어째서 영조가 그토록 과도하게 화를 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위(威)를 잃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예법을 어긴 것이 된다. 체면을 잃으면 수치를 느끼지만, 위(威)를 잃으면 왕세손이 자신의 신분에 맞는 법도를 넘은 것으로 왕세손이 아니게 된다. 법도를 넘어 행위하게 되면 그 사람(其人), 다시 말해 그에게 부여된 형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이를 미루어 이해하면, 왕이나 왕세손도 배변을 할 때에도 어떤 규칙을 택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을 어기고 배변을 하는 행위는 왕이나 왕세손의 행위가 아닐뿐더러 나아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왕이나 왕세손이 아니라는 논법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이렇게 되면 조선이 엄숙한 규범의 사회인 것처럼 비치겠지만, 이 사건의 배면은 그 뿐만이 아니었

17) Donald J. Munro, *The concept of man in early China*,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

18) 마르셀 에나프, 앞의 책.

19) 이런 논법은 정명(正名)의 논리는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걸왕과 주왕이 아무리 폭군이지만, 신하로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제선왕의 물음에 맹자가 “인을 파괴한 사람은 도적이요, 의를 파괴한 사람은 강도입니다. 도적이냐 강도는 일개 필부이니, 필부 하나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논리이다. (『맹자』, 「양혜왕」 하.)

다. 사실상 세손의 이런 행위가 대신들에게 흠을 잡혀서 자칫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꼴이 날지 모른다고 우려한 때문이다. 사도세자가 그런 참변을 당한 것도 결국 ‘왕다움’의 문제에 걸려 넘어진 것이며, 그러한 위기가 의심 받게 되고, 광범위한 흠집 내기로 뒤주 속에서 죽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왕의 관념 - 덕의 표상과 은혜의 정치

사료에서 왕에 대해 직접 일컫거나 비평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관찬, 사찬, 개인일기 등에서 왕을 비평적인 관점에서 언급하는 경우를 과문한 필자는 본 적이 없다. 간혹 상소에서 국체를 설명하면서 ‘한 나라의 국체는 한 사람의 신체와 같아 왕은 머리, 대신은 복심, 대간은 이목으로 은유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며,²⁰⁾ 이 조차도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체가 참람함 짓으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자칫 역적으로 몰리기 딱 좋기 때문인 것 같다.

적어도 문헌상으로는 조선 왕의 존재는 일정한 부피와 질량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그의 위치가 갖는 독특성 때문이다. 조선 왕의 지위는 일본 왕과는 달리 법전을 포함한 어디에서도 기능적으로 배당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사료에서 왕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록에도 왕의 존재를 언급할 때 “상(上)”이라고만 써서 가장 윗자리에 있는 위치로만 지칭되고, 상소에서도 “주상전하(主上殿下)”로 호칭하여 그의 있는 장소만을 가리킬 뿐이다. 그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있다면, 사후에 묘호가 대신한다.

조선 왕의 이와 같은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표상이 있는데, 다름 아닌 왕이 집무 시에 입던 정복인 곤룡포의 보(補)에 붙은 용 문양이다. 이 문양의 의미는 도상적으로만 파악될 수 없는데, 알프레드 겔이 적절히 지적하였듯이²¹⁾, 이와 같은 실용화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였는가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왕은 이 옷을 입고 중앙에 앉아 좌우로 도열한 대신들을 마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신들은 흉배에 학 문양, 무신들은 호랑이 문양을 붙이고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광아(廣雅)』 익조(翼條)에 따르면 용은 상상 속의 동물로 『주역』의 건괘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을 은유하고 있고, 형태상으로도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왕에게 요구되는 다중적인 성격을 표상한다.

용은 변화무쌍함 때문에 강력한 무엇이지만,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가장 뚜렷하게 존재하면서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추상물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면서도 그래서 어느 것도 아니다. 도(道)를 설명하는 듯한 이러한 표현의 상징물이 용이라면 왕의 존재도 실제로 이런 설명에 부합되는 면이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조선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황제도 곤룡포를 입었기 때문이다.

20) 『무진봉사(戊辰封事)』.

21) Alfred Gell, *Art and Agency: An Anthropological Theory*. Oxford: Clarendon, 1998.



조선 초기의 용보.



조선 중후기의 용보.

조선의 중후기에 사용된 용보 문양에서 사실상 조선 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용보는 양식적으로는 정면관을 취하고 있는 명나라 황제의 것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명청대 황제의 용보 문양에 비한다면 훨씬 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용의 포즈가 앞으로 튀어 나오게 부각되어 있고, 그 결과 다른 문양들은 뒤로 물러나 있다는 인상을 준다. 용의 몸통이 리듬감 있게 감기면서 묘한 균형을 드러내는데, 이를 통해 용의 존재감은 더욱 배가되고 있다. 이는 회화 기술의 발전이라고 여겨지지만, 도상을 통한 상징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용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발톱에 비하면 용의 표정은 매우 해학적이고 희화적이다.

특히 토끼의 눈과 닮은 것으로 여겨지는 눈은 사실상 매우 귀엽다. 명청 황제의 용보들이 대체로 자신의 위대성을 과시하며 공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위대성의 표현보다는 힘을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는 듯한 묘한 응축력을 보여준다.

날마다 이 용보를 가슴에 단 조선 왕이 학과 호랑이 문양의 흉배를 단 신하들과 실제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가슴에 단 용보가 스스로를 어떤 식을 보이하고자 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적어도 자신을 무서운 왕, 상대방을 제압하는 왕 대신에 되도록 너그러운 왕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선왕들이 덕치를 추구한다는 이념을 수용하면서, 위의보다는 은혜의 정치를 추구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왕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였는가는 신하들의 상소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성은(聖恩)”이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은혜를 베푸는 왕이었다. 은혜를 베푸는 왕의 형상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학』의 치국편에서 등장하는데, 조선에서는 자신의 왕다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보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를 유럽 중세의 왕이 치료의 왕이었던 것과 대비해 보면, 조선의 왕이 얼마나 세속적인 왕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왕들은 주로 연주창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는데,²²⁾ 이것은 왕이 실제로 이러한 마술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신성성을 치료 은사를 베푸는 예수의 형상을 은유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이다. ‘왕=연주창 치료’의 형상화는 16세기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맥베스』에서 왕을 이야기 할 때 연주창의 치유 능력과 함께 언급되는 데에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형상이 유럽 중세에 얼마만큼 지배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로마나 유럽 중세의 은총 개념에서도 자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22) 마르크 블로크, 박용진 옮김, 『기적을 행하는 왕』, 한길사, 2015.

나 신의 은총을 가탁한 것으로, 로마시대의 세나카나²³⁾ 예수에게 나타난 무조건적인 자선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다. 행위는 유사하여도 조선 왕이 증여하는 근거는 민심을 수습하는 방략적인 차원이 다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기적을 일으키는 왕처럼 자신의 행위가 예수를 은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신민들이 증여를 통해 맺는 구체적인 정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고대의 대값음 관계에 비길 수 있다. 신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으로써, 보은으로 충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실 왕은 신민들에게 부채²⁴⁾, 의약품, 식료품 등 단오, 연말에 내리는 정례화된 선물 하사 외에도, 경과(慶科), 특권의 하사²⁵⁾, 죄수 방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일어난 의병장들이 남긴 기록이나 전기를 보면, 한결같이 자기 선대에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언급하고, 보은으로서의 충성을 서약하며 일어난다. 적어도 제한된 층에게는 은혜의 정치가 유효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로 크게 분열되는데, 이 문제는 왕이 베푼 은혜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은혜의 구조로 묶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사실상 의병장에게 동원된 병졸들은 왕과의 관계보다는 의병장과의 관계 때문에 동원된 경우가 많았다.²⁶⁾

은혜의 정치가 갖는 최대의 약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충성으로 보답하고자 하겠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원한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경과(慶科)이다. 경과는 왕실에 경사스러운 일, 예를 들면 왕대비가 오래 병을 앓다가 나았다든지, 원자가 태어났을 때와 같은 경우로, 이러한 때 동락(同樂)의 차원에서 식년이 아닌데도 치르는 과거를 말한다.

영조 때 특히 경과의 횡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정조 대에 이르러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여 경과의 횡수를 줄이고 정상화하고자 하였다는 박현순의 지적은 정조가 영조의 정책을 잇기만 하였다는 기존 연구에 대비한다면 매우 획기적인 지적이 아닐 수 없다.²⁷⁾ 경과에서 은혜의 정치가 갖는 가장 큰 모순이 드러나는데, 정약용의 유명한 지적처럼 그곳에서 급제하는 사람은 은혜로 여기겠지만, 낙방한 사람은 원한을 가질 것이며, 더욱이 급제한 사람은 매우 소수이고 낙방한 사람들은 매우 다수라면, 애초에 은혜를 주어 민심을 끌어당기려는 정책의 취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혜의 정치는 사실상 원한의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조 때 은혜의 정치가 극성을 이루었음은 이 시기에 특권(특혜)의 남발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비추어 볼 수 있다. 사실상 그 대상은 기존의 양반층 밑에 포섭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²⁸⁾ 여기서의 문제는 특권의 내용이 대부분 탈역이므로, 양역의 허실화로 지방 정치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혜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유교에는 없다. 왕과 신민들의 관계를 정서에 근거한 유대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복속시킬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는 직접적인 은혜가 아닌 다른 원리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감회진은 중국의 왕권이 전제적이지 않다고 논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도 마찬가지이다.²⁹⁾ 사실상 전제적인 권력을 형성할 수 없었던 유교 정치의 약점

23) 세네카, 김혁 외 3인 옮김, 『베푼의 즐거움』, 놀민, 2015.

24) 김혁, 「조선후기 단오부채 절선(節扇)의 생산과 가치 순환」, 『고문서연구』 36, 2010.

25) 김혁,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 : 완문(完文)의 문서사회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2008.

26) 의병장의 수하들 중 많은 사람은 그의 협호들이다.

27)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28) 김혁, 2008, 위의 책.

때문에, 중국이 망국 상태에 왔다는 강유위의 지적이 있고 보면, 근대 이후 유교의 은혜의 정치를 어떠한 특성으로 이해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³⁰⁾

유럽에서 신이라는 절대적인 통합의 힘을 빌려 은총의 정치를 모색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주는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부여한 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을 문화로 구축하였다는 데에 영향이 크다. 주지도 않는데 보은하는 구조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역사는 진행되어야 했다.

은총의 전형적인 개념은 태양은 악한 자에게 비친다는 세네카의 말에 있다. 그의 이 말은 무조건적인 베품을 주장하면서 한 비유이지만, 실은 은혜의 구조를 넘는 황제권의 성격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도 은혜를 넘어 은총으로 넘어가려는 군주의 의도는 진즉에 농후하였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선묘(宣廟) 초에 신분(申漬) 등 1천여 명이 글을 올려 서얼 신분의 원통함을 하소연하자, 선묘께서 하교하시기를, ‘해바라기가 해를 향함은 겉 가지를 가리지 않으니, 인신(人臣)으로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꼭 정적(正嫡)이어야만 하랴?’ 하였다고 한다.³¹⁾ 이는 선조가 자신을 해로 은유하며, 신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대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이 경우 은총의 비유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내용 상으로는 자기 신민 중 어느 특정한 집단에 대한 은혜를 뛰어넘지 못했다.

영조 때 행하여진 무차별적인 은총의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균역법이나 탕평책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균역법의 경우 감면해 준 세금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도가 성공적일 수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한 연구성으로 제시할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탕평책의 경우도 분당으로 인한 편향성을 막겠다는 의도만큼은 은총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는 지방 출신의 중앙 관직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였듯이 신은 이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균형적인 세계 질서를 상정한 것인데, 법질서와 국가 재정 개념을 기반으로 한 메카니즘의 통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사실상 그 같은 이념은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며, 오히려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논리의 귀결은 사실상 왕권신수설의 시대가 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 것으로, 재정국가의 설립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때서야 비로소 주권 개념도 동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태진이 정조가 갖는 초월적인 군주상을 계몽군주나 절대왕권과 비견하여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의 논의에 깊은 의미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조는 자신을 달에 비유하였다. 어째서 전통적인 군주의 은유인 해가 아니고 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를 정조의 개인적 취향으로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 부분은 나의 연구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므로, 껴의할 수 밖에 없지만, 초월적인 군주상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고종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고종이 도교의 왕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려 하였고, 그 시대에 많은 도교 관련 서적을 편찬하였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것도 과연 개인적인 취향에서 나온 우연한 결과일까? 유교국가의 군주가 도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 구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고종의 구상에 대한 더한 연구도 후일의 과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정치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일 것이다. 후일

29) 甘懷眞, 『皇權, 禮儀與經典詮釋 : 中國古代政治史研究』, 樂學總經鎖, 2003.

30) 강유위, 이정애 옮김, 『대동서』, 을유문화사, 2006.

31) 이는 서얼허통이 논의되는 효정부부터 정조까지 조정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의 연구를 위해 도교의 옥황상제가 기독교의 신이 갖는 지위와 거의 흡사하므로, 사실상 유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인 은혜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덧붙여 둔다.

5. 맺음말

한말의 거유 간재 전우가 의병 기의를 거부하고 섬으로 은거해 버린 일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병 기의를 거부하였던 광종석이 의병으로 일본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를 대며 외교로 걸음을 옮긴 것과는 달리, 간재는 자신은 조정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지 않았으므로 의병에 가담할 의의가 없다고 답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애초의 논의에 비추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무엇보다 20세기가 되도록 왕과의 대면적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결합된 사회관계인 은혜의 정치 관념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과, 조선이 주권에 입각한 국가 건립을 불가능한 정치 개념에서 벗어 날 수 없었고, 이는 전체적인 사회통합에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이는 전제주의적인 국가 건립에 성공한 서양 국가들에 비추어 본다면, 그 때문에 망국의 길을 걷게 된 조선의 입장에서는 국가, 혹은 정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동양 사회에게 전제주의를 뒤집어씌운 견해가 오류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끝으로 이를 앞서 서론에서 제기한 왕정/민주정의 프레임 문제로 다시 가지고 가 생각해 본다면, 이 프레임에서 설정된 왕정은 결코 조선의 왕정이 아니며, 17세기 말에 주권 개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프랑스의 전제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프레임에서 작동하고 있는 민주정이 19세기 말에 형성된 전제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루소의 공상적 민주주의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 전제주의의 관점에서 조선의 왕정을 본다면 매우 합리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구조이지만, 왕정 내에서 조선 말기까지 주권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유산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유산은 바로 유교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정서적 친밀성을 지나치게 간직한 사회라는 점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미션은 우리가 진보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대학』, 『서경』, 『중용』, 『대전록(待闕錄)』,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민족문화대백과사전(民族文化大百科事典).
- 김혁, 「조선시대 청탁문서의 특성」, 『고문서연구』 32, 2008.
- 김혁, 「역서(曆書)의 네트워크: 왕의 시간과 일상생활」, 『영남학』 18, 2010.
- 김혁, 「조선후기 단오부채 절선(節扇)의 생산과 가치 순환」, 『고문서연구』 36, 2010.
- 김혁, 「영조의 존호와 왕권 -존숭도감의궤를 중심으로」, 『영조대왕자료집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김혁, 「駕洛三王事蹟考의 간행과 金海金氏의 ‘문화의 정치’」, 『규장각』 50, 2017.
- 김혁,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 : 완문(完文)의 문서사회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2008.
- 박현모, 『세종처럼』, 미다스북스, 2014.
- 이영훈,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백년동안, 2018.
- 한명기, 『광해군-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 역사비평사, 2018.
- 강유위, 이성애 옮김, 『대동서』, 을유문화사, 2006.
-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로빈슨 지음, 최완규 옮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 2012.
- 니클라스 루만, 『현대사회는 생태학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가』, 백의, 2002.
- 막스 베버, 김덕영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길, 2010.
- 마르셀 에나프 지음, 김혁 옮김, 『진리의 가격-증여와 계약의 계보학, 진리와 돈의 인류학』, 눌민, 2018.
- 마르크 블로크, 박용진 옮김, 『기적을 행하는 왕』, 한길사, 2015.
- 세네카, 김혁 외 3인 옮김, 『베푸의 즐거움』, 눌민, 2015.
- 칼 A.비트포겔 저, 具宗書 역, 『東洋的專制主義 : 總體的 權力的 比較研究』, 法文社, 1991.
- 甘懷眞, 『皇權, 禮儀與經典詮釋 : 中國古代政治史研究』, 樂學總經銷, 2003.
- Alfred Gell, *Art and Agency: An Anthropological Theory*. Oxford: Clarendon, 1998.
- David Graeber, Marshall Sahlins. *On kings*, HAU Books, 2017.
- Donald J. Munro, *The concept of man in early China*,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
- Orlando Patterson. *Slavery and social death : a comparativ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M. Taussig, *The Magic of the State*, Routledge, 1997.

‘조선 = 속국(屬國), 속방(屬邦)’의 개념사

김봉진(기타큐슈(北九州)시립대학)

머리말

속국이란 용어는 근대 이래 다의적이지 애매모호한 개념이 되었다. 이로부터 그 해석을 둘러싼 오해와 혼란이 생겼다. 또한 지금껏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통의 속국이란 비교적 간단명료한 개념이었다. 동아시아 전통 지역 질서(=중화 세계 질서) 안에서 중국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던 나라 즉 책봉-조공국의 별칭이었다. 책봉이란 중국 황제가 정한 정삭(正朔: 正月朔日, 정월 초하루) 즉 책력(冊曆)과 연호(年號)를 주변국 군주에게 반포하는 의례(儀禮)를 가리킨다. 이와 함께 왕작(王爵) 칭호와 인장(印章)을 수여(=封)하는 의례를 행한다. 책봉받은 주변국 군주는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여 황제에게 공물을 바친다(進貢). 즉 조공한다.¹⁾ 이에 황제는 은사(恩賜) 물품으로 회답한다(回賜). 이러한 책봉, 조공은 관련 국가 상호 간의 권리이자 의무인 셈이다.

이렇듯 책봉받고 조공하는 나라 즉 책봉-조공국을 속국이라 칭하기도 했던 것이다.²⁾ 따라서 속국의 ‘속’이란 ‘책봉-조공’ 즉 ‘책봉받고 조공함’을 뜻한다. 동시에 중화권(의 공동체)에 ‘소속함’ 또는 그것을 함께 ‘구성함’을 뜻한다. 책봉-조공은 중화권의 구성국임을 표상하는 의례적 행위인 까닭이다. 당연히 책봉-조공 관계(약칭, 조공 관계)는 ‘지배-복속 dominate-subordinate’ 관계와는 다르다.³⁾ 특히 책봉-조공국(약칭, 조공국) 즉 속국은 ‘식민지 colony’와는 전혀 다르다. 속국=조공국은 기본적으로 ‘내치-외교의 자주’라는 고유한 (inherent) 권리를 향유했다. 달리 말해 ‘동아시아 전통의 특유한 주권(endemic sovereignty)’을 누리고 있었다.⁴⁾ 이를 뒷받침하는 원리나 관념은 물론 서양 근대 주권의 그것과 다르다. 따라서 각각 존재 이유(raison d'être), 운용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라도 주권의 존재 자체는 다름없다.

그런데 서양 근대의 물결이 밀려온 뒤 동아시아 전통의 속국이란 용어는 다의적이지 애매

1) 조공은 일종의 공무역(公貿易) 행위이다. 동시에 사무역(私貿易)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조공 사절단은 대소 규모의 허가된 상인 집단을 수행시키는 까닭이다. 이들 상인 집단은 중국 내지의 곳곳에서, 특히 수도(북 경)에 체류하는 동안 관허(官許) 무역을 행할 수 있다. 이때 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우호 무역을 행하는 셈이다. 이렇듯 공·사 무역을 겸한 것이 이른바 조공 무역이다.

2) 단, 책봉을 받지 않은 채 조공만 행하는 나라(=조공국)도 있었다. 그 밖에 책봉도 받지 않고 조공도 행하지 않은 채 지방의 무역지(貿易地)나 무역항을 통해 호시(互市)만 행하는 나라(=호시국)도 있었다. 이런 나라는 ‘속국’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속국’보다 하위의 나라로서 예(禮)를 모르는 ‘이적(夷狄)’ 범주에 속한다.

3) 오히려 그런 관계를 막고자 서로 비호(庇護)하는 일종의 ‘동맹alliance’ 관계의 범주에 속한다. 또는 서로 은고(恩顧)하는 ‘후원자-고객 patron-client’ 관계의 범주에 속한다. 중국은 속국의 ‘후원자’라는 명분과 의무를 지닌 나라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비호, 은고의 의무’가 속국보다 훨씬 큰 나라이다. 이런 뜻에서(만) 중국을 일종의 ‘종주권suzerainty’을 지닌 나라 ‘종주국suzerain’이라 부를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지배-복속’ 관계에 입각한 ‘종주권, 종주국’과는 내용도 성격도 다르다.

4) 이를 서양 근대 주권과 구별하기 위해 ‘전통적 주권’이라 불러도 좋다.

모호한 개념으로 변질되어 나갔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일본에서 식민지(colony)를 속국이라고 칭하면서 그 번역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청국에서 1860년대부터 1880년대에 걸쳐 ‘조선=속국, 속방’론이 발명되었기 때문이다.⁵⁾ 이로 인해 속국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었다. 그 속에 전통과 근대가 뒤섞인 채 또한 관련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채 해석상 논란을 부추긴 탓이다. 특히 근대주의적 시각으로 왜곡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생긴 탓이다.

실제로 속국 개념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그랬어도 청일 전쟁 이후에는 해소되어야 마땅했다. 조청 간의 책봉-조공 관계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선=속국’론의 근거가 소멸했으니 그 해석을 둘러싼 대립, 혼란의 소지도 남아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랬건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자의적 해석은 이어졌다. 게다가 그 모습을 바꾼 채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⁶⁾ 이에 따른 왜곡/오해 역시 곳곳에 남아 있다. 왜 그랬던가? 어쩌서 그럴까? 한마디로 근대주의적 시각 탓이다. 그리고 자국중심주의와 타국 멸시 탓이다. 이에 앞서 무지한 탓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문제를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조선=속국, 속방’론의 개념사를 고찰한다. 단, 그 고찰에 앞서 동아시아 전통의 속국=조공국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조선=속국, 속방’론의 발명을 고찰한다. 제3절에서는 이른바 ‘속방 조항’에 얽힌 문제를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조선=속국, 속방’론을 둘러싼 대립 양상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청일 전쟁 이후에도 속국 개념의 자의적 해석이 이어진 까닭의 일부를 밝힌다.

1. 속국=조공국의 범주

동아시아 전통의 속국=조공국은 다양한 형태로 출현했다. 또 시대의 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 변형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청대에 이르면 두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청국 예부(禮部)가 상대하는 속국=조공국이다. 이를 편의상 조공국 A라고 표기하기로 하자. 이에선 조선, 베트남, 유구(琉球) 등 청국 판도(통치 영역)의 외부에 있던 나라들이 속한다. 유교 문명/문화를 공유했던 중화권의 나라들로서 그 별칭이 속국이였다. 단, 명목상 속국으로서 형식적 호칭에 가깝다. 이들 나라와 청국의 관계는 예적 위계 관계일 뿐 실질적 통치 관계가 아닌 까닭이다. 이들 나라의 군주(sovvereign)는 ‘내치-외교의 자주’라는 권리를 향유했다. 달리 말해 ‘동아시아 전통의 주권(sovereignty)’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원리/관념이 바로 예이다.⁷⁾

또 하나는 청국의 이번원(理藩院)이 관할하는 번부(藩部), 외번(外藩)의 속국=조공국이다.⁸⁾

5) 후술하나 ‘조선=속방’론은 1882년, ‘속방 조관(條款)’을 바탕으로 발명되었다. 이것은 1860년대부터 발명되기 시작했던 ‘조선=속국’론의 내용 일부를 개편 내지 변태시킨 것이다.

6)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의식, 무의식 속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남아 있다. 또한 때로 음험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7) 예는 성리학/주자학의 시점에서 보면 리(理)의 구현체이다. 리는 보편공공(普遍公共)의 원리이다. 이로부터 ‘권리, 주권’ 관념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 그 상세는 김봉진(2018), Bongjin KIM(2017) 참조.

8) 이번원은 제2대 황제인 청 태종(재위 1626-1643)이 1635년에 내몽고를 정복한 - 내몽고와 회맹(會盟)을 맺은 -- 뒤 그 간접 통치를 위해 설치했던 몽고 아문(衙門)에서 기원한다. 이것을 1638년, 이번원으로 개칭했다. 그 후 청국 판도가 외몽고, 청해(青海), 티베트(서장[西藏]), 신강(新疆; 회부[回部])로 확대되자 이들 지역/나라를 번부 또는 외번이라 칭했다. 그리고 이번원에서 관할했다.

이를 조공국 B라고 표기하자. 이들 지역/나라와 청국의 관계는 예적 위계와 간접 통치가 혼합된 형태의 것이었다. 이때 간접 통치란 ‘실질적, 형식적’ 통치의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이 양면성은 이번원의 직무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봉작, 봉록, 조공’의 관할은 예적이자 형식적인 통치에 해당한다. 한편 ‘역전, 재판’의 관할은 실질적 통치에 해당한다. 일정 정도 번부의 내정에 간여하는 일인 까닭이다. 또한 청국은 중앙 관료를 파견하거나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했다. 이로써 번부가 판도 내부에 속함을 확인하고자 했던 셈이다.

하지만 청국은 번부의 각 지역/나라를 통치하던 토착인 수장(首長)을 대체로 인정하고 존속시켰다. 그랬던 만큼 번부의 수장들은 일정 정도 ‘내치-외교의 자주’의 권리를 향유했던 셈이다. 다만 그 권리는 앞서 보았던 조공국 A의 그것에 비하면 일부 제한되어 있었다. 이렇듯 청국의 간접 통치를 받기는 했으나 다른 한편 번부 수장들은 청조 황실과 친밀 관계를 맺기도 했다. 회맹, 그리고 혼인 관계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청조 황제는 몽골 부족의 최고 수장인 칸(Khan; 복드 세첸 칸, 寬溫仁聖皇帝), 티베트 불교의 보호자(文殊菩薩皇帝) 등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청대의 속국=조공국은 A, B 두 범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 사실을 문헌에서 확인해 보자. 먼저 『흙정대청회전(欽定大清會典)』(총100권의 최종판, 光緒25[1899]年)을 살펴본다. 그 권56에는 “조공국은 동쪽 조선, 동남쪽 유구(朝貢之國, 東曰朝鮮, 東南曰琉球)” 즉 조공국 A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권58까지 조공의 예, 의례에 관한 각종 사례가 이어진다. 그런 다음 조공국 A를 ‘외국’이라 칭함으로써 ‘외번’의 조공국 B와 구별한다. 예컨대 권73에는 “외번과 외국의 빈관(外藩外國賓館)”이란 식으로 구별되어 있다. 또는 권74의 “外藩王公·外國貢使官舍由禮部·理藩院”이란 ‘외번 왕공과 외국 공사가 머무르는 관사는 각각 예부와 이번원에서 [관장한다]’라는 뜻이다.

『흙정대청회전』의 곳곳에는 ‘속국’이라는 용어가 출현한다. 그것은 “외번 속국”(권12, 27, 84)과 “사이(四夷) 속국”(권17, 23, 24, 55)의 두 범주로 나뉜다. 전자가 조공국 B, 후자는 조공국 A에 해당한다.⁹⁾ 덧붙이면 앞의 ‘사이’란 ‘청국 판도 외부’의 주변국을 표상한다. 주지하듯 사이는 원래 중국의 동서남북 사방에 거주하던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의 총칭이다. 또는 중국에 복속하지 않던 사방의 이민족 내지 지역/국가를 칭한다. 이를테면 중국 판도에 속하지 않는, 주변부의 외국을 표상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만국공법(萬國公法)』(전4권, 同治3[1864]年; 약칭 『공법』)을 살펴보자.¹⁰⁾ 그 제1권 제2장 제13절 ‘석반주지의(釋半主之義)’에는 “반주지국 semi-sovereign or dependent

이번원의 직무는 번부와 회맹을 비롯하여 번부의 조공, 봉작(封爵), 봉록(俸祿), 역전(驛傳), 호시, 재판 등을 관할하는 일이었다.

9) 덧붙이면 조공국 B의 수장은 봉작=작위에 따라 ‘외번 친왕(親王), 외번 군왕(郡王), 외번 바일러(貝勒)’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친왕, 군왕, 바일러는 청조 황실의 제1, 2, 3등의 작위이다. 이렇듯 외번의 수장은 청조 황실의 작위를 공유하고 있었다. 반면 조공국 A의 군주는 ‘조선왕, 유구왕’ 등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10) 『만국공법』은 미국인 선교사 마틴(William Martin, 1827-1916; 중국명 丁韜良)이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한역한 국제법서이다. 그 한역을 마틴은 1862년부터 시작하여 1864년에 완료한 뒤 출판했다. 그 출판은 청국이 1861년에 설립한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약칭 총서(總署))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그 번역 사정은 사토 신이치(1996), 제1장을 참조. 덧붙이면 마틴은 1865년, 통서 산하의 어학 교육기관인 동문관(同文館)의 영문 교습(敎習)에 임명되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마틴은 영어, 국제법 등의 교육에 종사했다. 또한 『성조지장(星輶指掌)』(1876), 『공법편람(公法便覽)』(1877), 『공법회통(公法會通)』(1880) 등 국제법서를 한역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은 傅德元(2013) 참조. 본 논문에서는 『만국공법』은 京都崇實館存板(1864年版)을, 휘튼의 원저는 1866 Edition of Richard Henry Dana, Jr.의 판본을 사용한다. 인용할 때는 인용문의 끝에 숫자만 표기한다. 다른 서적의 인용도 같은 요령.

States”(23a)의 일례로서 “번속 vassal State”(24b)가 출현한다. 이때 ‘번속(藩屬)’이란 앞서 본 ‘외번 속국’의 약칭에 해당한다.¹¹⁾ 이를 ‘vassal State’의 한역어로 사용하면서 이른바 ‘반주권 국가’로 분류한다. 한편 제14절 ‘진공(進貢)·번방(藩邦)¹²⁾ 소존주권(所存主權)’에는 “진공 지국과 번방 Tributary States, and having a feudal relations”(25a) 즉 ‘조공국, 번방’이 등장한다.¹³⁾ 그리고 “자립·자주지권 the sovereignty and independence”(25a)의 나라 즉 ‘주권 국가, 독립 국가’로 분류한다. 덧붙이면 『만국공법』은 ‘속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만국공법』은 ‘sovereignty’를 ‘자주(지권)’ 또는 ‘주권, 자주지권리’라고 번역한다. 그리고 ‘independence’를 ‘자립’으로 번역한다. 이와 달리 근대 일본에서는 ‘독립’으로 번역했다.¹⁴⁾ 『만국공법』도 ‘독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나 그 뜻은 화제한어의 ‘독립’과 다르다. “독립 single”의 나라 즉 한 나라로 구성된 ‘단일 국가’를 뜻하는 까닭이다. 그것을 “몇 나라가 서로 합한(數邦相合) united or federal” 나라 즉 ‘연합 국가’와 대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7a). 여기서 주의를 환기할 것은 한어의 ‘자립’과 화제한어인 ‘독립’의 어감이 자못 다르다는 점이다.¹⁵⁾ 예컨대 자립은 속국과 병립할 수 있다. 반면 독립은 병립할 수 없다. 이런 어감 차이는 후술하듯 관련 각국 간의 대립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또 하나 주의를 환기할 것은 동아시아 전통 지역 질서와 서양 근대 국제 질서 사이에는 언어 코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번역의 문제’가 발생한다. ‘번역의 문제’는 또한 동아시아의 한자권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번역어라 해도 그 해석이 달라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거듭 말하나 그 속에 전통과 근대가 뒤섞인 채 또한 관련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힌 채 해석상 논란을 부추긴 탓이다. 특히 근대주의적 시각으로 왜곡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생긴 탓이다. 덧붙이면 근대 일본은 서양어 번역의 산실이었다. 거기서 산출된 화제한어 속에는 일본 고유의 전통과 특유한 근대와 함께 서양 중심적 근대주의가 투영되어 있다. 그런 만큼 각종 편견, 오해에 의한 번역 또한 오역도 섞여있다.¹⁶⁾

조선은 청국의 조공국 A 내지 속국 T였다. 청조 황제의 책봉을 받고, 청국 연호를 사용했다. 사대(事大)의 예를 지키고, 조공 사절을 파견했다. 거듭 말하나 책봉-조공은 중화권 구성국의 의례적 행위이다. 당연히 조선은 ‘내치-외교의 자주’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또한 청국과의 조공 관계는 외교, 안보(비호=동맹), 문화, 무역 등 각종 실리를 얻는 틀이기도 했다. 한편 조선은 이적 왕조인 청국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유교 문명/문화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른바 ‘소중화’ 의식으로 표현되는 그 자부심은 타국에 대한 자존, 우월의식으로 표출되었다.¹⁷⁾ 이런 의식을 지녔던 만큼 자주=주권 의식의 전통이 강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래 조·청 간의 조공 관계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생겨났다. 그리고 널리 퍼

11) 따라서 ‘번속’은 ‘조공국 B의 속국’에 해당한다. 이를 ‘속국 V(=Vassal)’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12) 이처럼 번방(藩邦)에 밑줄을 친 이유가 있다. 이것이 『만국공법』의 원문에는 ‘번속(藩屬)’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4절의 내용을 보면 원문의 ‘번속’은 인쇄상 오식(誤植) 또는 오자(誤字)임을 알 수 있다.

13) 이 ‘조공국, 번방’은 ‘조공국 B의 속국’에 다름 아니다. 이를 속국 T(=Tributary)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14) 즉 ‘독립’은 ‘화제한어(和製漢語)’의 하나이다. 그 번역에 얽힌 사정은 姜東局(2004), 27-33쪽 참조.

15) 그 어감의 차이에 얽힌 문제는 김봉진(2018), 124-125쪽 참조.

16) 이런 사실은 동아시아 개념사의 심각한 문제이다. 그 비판적 성찰과 극복은 중대한 과제임을 지적해 둔다.

17) 그런 의식이 근대에 들어 현실 적응을 방해했던 사실은 접어 두기로 한다.

져 나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전통적 조공 관계와 근대적 지배-복속 관계와의 갈등, 대립이 발생했던 탓이다. 이에 대처하고자 청국은 조선의 비호를 명분으로 그 내치-외교에 간섭했다. 이로부터 조공 관계의 ‘근대적 개편 내지 변질’과 더불어 관련국 사이의 갈등, 대립이 복잡다양하게 파생했다. 그리하여 청일 전쟁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런 일련의 현상과 사태의 원인이자 기점이 바로 ‘조선=속국, 속방’론의 발명에 다름 아니다.

2. ‘조선=속국, 속방’론의 발명

‘조선=속국’론은 1866년부터 1876년에 걸쳐 발명되었다. 그 계기는 프랑스, 미국 등 구미 제국과 일본이 청국에게 조선의 국가적 지위를 문의했던 일련의 일이었다.¹⁸⁾ 이에 대한 답변 요지는 ‘조선은 속국이나 내치-외교는 자주’라는 것이었다. 즉 ‘속국=조공국은 자주’의 권리를 누리는 나라, 주권 국가’라는 조공 관계의 전통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일종의 ‘전통의 발명’이자 전통과 근대의 이종교배(hybridization)의 산물이기도 하다.¹⁹⁾ 거기에는 전통적 조공 체제와 근대적 국제 질서 양쪽의 원리인 예와 국제법이 일정 정도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양쪽의 원리가 조화할지 불화할지, 속국과 자주가 양립할지 대립할지… 어느 쪽으로 향할 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청국은 불화, 대립 쪽으로 향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확률을 낮추고자 1882년, ‘조선=속방’론을 발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1866년 봄, 조선 정부는 최대이자 최후의 천주교 탄압을 벌였다. 국내에 잠입해 있던 프랑스 신부들을 비롯하여 조선인 천주교도 수천 명을 학살했던 것이다.²⁰⁾ 이 소식에 접한 프랑스 정부는 극동 함대의 조선 원정을 결정했다. 7월에 이르러 주청(駐淸) 프랑스 공사 벨로네(Henri de Bellonet)는 총서의 군기(軍機) 대신 공친왕(恭親王; 奕訢, 1833-98)에게 원정의 뜻을 통보했다. 총서는 원정 중지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벨로네는 7월 13일, 조회(照會)를 보내어 조선의 국가적 지위를 문의했다. 이튿날(同治 5년 6월 3일) 총서는 그것을 ‘법국(法國, 프랑스) 조회’라는 문서로 정리하고 있다.²¹⁾

거기에는 “거언(據言)” 즉 총서 답변에 의하면 “고려[조선]는 중국에 조공[공물]을 바치고 있긴 하나, 일체의 국사는 모두 그 자주(雖高麗於中國納貢, 一切國事皆其自主)”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보면 총서는 벨로네의 문의에 대해 ‘조선=조공국, 자주’론으로 회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벨로네는 원정을 이렇게 정당화하려 했다: “그런 고로 [1858년에 체결된 청·불 간의] 천진조약을 끌어들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고려와 전쟁을 하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됨일 뿐 역시 중국은 문책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²²⁾ 덧붙여 청국은 “저 나라[고려]에 하등 간섭할 까닭이 없다(因與彼國原不相干涉也)”라면서 그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그런 다음 1866년 가을에 조선 원정을 감행했다. 그리하여 병인양요(丙寅洋擾)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선 1866년 8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18) 그 일련의 일이 전개된 경위는 岡本隆司(2004)의 제1장 참조.

19) 전통과 근대의 이종교배에 관해서는 金鳳珍(2004), 12쪽의 주5를 참조.

20) 이 사건은 병인사옥(丙寅邪獄), 병인교육(丙寅敎獄), 병인박해(丙寅迫害) 등으로 불리운다.

21)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2권, 27-28쪽.

22) 원문: “故天津和約亦未載入.茲當本國於高麗交兵自然, 中國亦不能遇問.”

의 대동강에 침입하자 이를 그곳 군민(軍民)이 격퇴하고자 불태운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문책과 함께 통상을 요구하려 했다. 이를 위해 1868년 3월부터 총서에 조회를 보내어 교섭을 벌였던 듯하다. 그 해 3월 20일(同治7년 2월 27일)자의 ‘미국 조회’라는 문서를 보면 조선의 국가적 지위를 문의했음을 알 수 있다. 총서의 회답은 “조선은 신복(臣服)에 해당하는 나라이긴 하나 일체 정교(政敎)와 금령(禁令)은 본디 그 나라가 스스로 행하며 홀로 [자]주한다”라는 것이었다.²³⁾ ‘조선은 신속(臣屬)의 나라이나 그 내치-외교는 자주’론을 표방한 셈이다.

1871년, 주청 미국 공사 로우(Frederick F. Low)는 조선과의 직접 교섭을 계획했다.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역시 조선의 국가적 지위를 문의했다. 3월 28일(同治10년 2월 8일)자의 조회 문서를 보면 총서는 “조선은 속국에 해당하긴 해도 일체의 정교, 금령은 모두 그 나라가 주지(主持)한다”(167)라고 회답했음을 알 수 있다.²⁴⁾ 즉 ‘조선=속국, 자주’론을 표방했던 것이다. 그러자 5월에 로우는 미국 극동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향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사정은 총서의 회답과 달랐다. 조선 정부는 ‘속국인 까닭에 외교의 권리가 없다’면서 교섭을 거절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7월의 무력 충돌 즉 신미양요(辛未洋擾)로 이어졌다.

이후 북경에 돌아온 로우는 11월 2일(同治10년 9월 20일), 총서에 조회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힐문했다(234-236): 총서의 회답은 ‘조선=속국, 자주’론을 표방했고 또 “속국에 해당할지라도 단지 유명무실(有名無實)”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측은 “조선이 귀국의 속국이며, 유사시에는 서로 돕게 되어 있다(朝鮮為貴國屬國, 有事望相助者)”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힐문 속에는 ‘청국이 조선에게 미국과 통상 교섭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는 요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요구를 여러 차례 했던 듯하다. 그런 사실은 총서가 작성한 12월 24일(同治10년 11월 13일)자의 상주문(上奏文)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246).²⁵⁾

미국이 여러 번 보낸 조회와 조선이 재차 보낸 자문(咨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의(大意)는 모두 ‘중국 속방’이라는 글귀에 있다. 미국은 속국 두 글자를 빌어서 중국이 세력으로 조선을 압박하도록 함으로써 [조선과의 통상을] 도모하고 있다. 조선 역시 속국 두 글자를 빌어서 중국이 힘으로 미국을 제압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비호를 의뢰하고 있다.

그 대처 방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들 양국의 의도 그 어느 쪽에도 얽히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또 하나는 ‘조선=속국, 자주’론을 방침으로 재확인한다는 것이다.²⁶⁾ 특히 “[조선이] 중국의 보호를 구함이란 결코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단지 중국을 빌어서 어깨의 짐을 덜고자 함일 뿐이다”라고 파악한다. 이로부터 조선의 청국에 대한 적개심, 자존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이 실은 ‘보호’를 의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반발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국은 수년 후 ‘보호’ 정책을 세우게 된다.

청국이 조선의 ‘보호’ 정책을 세우게 된 계기는 조·일 관계의 ‘근대적 개편’에 있다. 이에 앞서 1876년 1월, 일본의 메이지(明治) 정부는 특명전권공사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1847-1889)를 청국에 파견했다. 약 2개월 체류하는 동안 모리는 총서에 여러 차례 조회를 보

23) 원문: “朝鮮雖係臣服, 其本處一切政敎禁令, 概由該國自行專主.” 『清季中日韓關係史料』 제2권, 97쪽.

24) 원문: “朝鮮雖係屬國, 一切政敎禁令, 皆由該國主持.”

25) 원문: “查閱美国歷次照會及朝鮮咨復禮部文仲[中], 大意皆以中国屬國為詞. 美国思欲借屬國二字, 令中国勢 圧朝鮮, 以遂其謀. 朝鮮亦思借屬國二字, 請中国力制美国, 以資庇護.”

26) 그 원문은 “朝鮮雖為中国屬國, 其政敎禁令, 中國向來聽其自為主持”(246)이다.

냈고, 또 일련의 담판(談判)을 가졌다.²⁷⁾ 그 주된 목적은 당시 추진되던 조·일 조약 교섭과 관련하여 조선의 국가적 지위를 논의하는 일이었다. 이와 함께 청국의 개입 의사 여부를 탐색하는 일이었다. 청국은 그 조약 교섭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선=속국, 자주’론의 방침을 지켰던 셈이다. 단, 그 방침은 변경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1876년 1월 14일(光緒1년 12월 18일), 총서는 회답을 보냈다.²⁸⁾ 거기에는 청·일 수호 조규(1871년 9월 체결)의 제1조가 언급되어 있다.²⁹⁾ “이 수호 조규의 [제1조에 규정한] ‘양국 소속 방토를 서로 침월하지 않는다’라는 말[=체약]을 끝까지 지킬 것(終守此修好條規, ‘兩國所屬邦土, 不相侵越’之言)”을 체약국 일본측에 요구한 것이다. 그 취지는 ‘소속 방토의 범주에는 조선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조선을 침월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청국은 개입하여 비호하리라’는 것이다.³⁰⁾ 그런데 ‘소속 방토’는 ‘속방, 속토’의 두 범주로 나뉜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조선을 ‘속방’ 범주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속국’이란 개념 속에 새로운 뜻을 더한 셈이다. 또는 ‘조선=속국’론을 ‘조선=속방’론으로 짐짓 바꾼 셈이다.

그러나 모리는 이튿날 보낸 답서에서 이렇게 반박한다.³¹⁾ “조선은 독립국의 하나이다. 귀국이 말하는 속국이란 단지 공명(空名)일 뿐”이다.³²⁾ 이렇듯 청국측 요구를 완전히 거부했던 것이다. 거기에는 ‘청국은 조·일 조약 교섭에 개입하지 말라. 독립국 조선을 비호할 생각도 말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의도를 청국측은 감지했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조선을 침월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었으리라. 그 ‘독립, 속국=공명’이란 말은 ‘청국의 비호를 배제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권모술수로 받아들였으리라. 실제로 그랬다고 판단해도 좋다. 그 근거가 될 이유는 많다. 이미 일본 정부는 정한론(征韓論, 1871-73)을 내세운 적이 있다. 한편 1872년, ‘속국은 허문(虛文)의 명(名)’이라며 유구 왕국을 일본의 변(藩)으로 만들었다. 또한 1874년에는 유구의 어민이 타이완에서 살해된 사건을 구실로 삼아 이른바 타이완 출병을 감행했다.³³⁾

이러한 모리의 답서에 대해 총서는 1월 18일(光緒1년 12월 22일)에 회답했다.³⁴⁾ 거기서 ‘조선=속국, 자주’론을 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 “수호 조규 안에 ‘소속 방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조선은 실로 중국 소속지방(所屬之邦)의 하나”라고 총서는 주장한다.³⁵⁾ 즉 ‘조선=속국이자 속방’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속국’론과 함께 ‘속방’론을 내걸겠다는 뜻이나 그 중점은 후자에 있다. 그리하여 ‘조선을 확실히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의지를 담은 ‘속방’론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을 내포한 방책이기도 하다. 그 내부로 식민지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³⁶⁾

또한 ‘조선=속방’론은 치명적 약점도 있다. 그 근거가 청·일 수호 조규의 제1조인 점이다.

27) 그 경과는 『淸光緒朝中日交涉資料』권1, 『淸季中日韓關係史料』제2권의 관련 기록 참조.

28) 『淸光緒朝中日交涉資料』권1, (二) 附件三覆日本國節略.

29) 거기에 언급된 제1조의 원문은 ‘양국 소속 방토를 또한 각각 예로 상대한다. 이로써 조금도 침월할 수 없도록 한다(兩國所屬邦土亦各以禮相對, 不可稍有侵越)’이다.

30) ‘소속 방토’란 영어로는 ‘the territorial possessions’라고 표기된다.

31) 『淸光緒朝中日交涉資料』권1, (二) 附件一日本國照會.

32) 원문: “朝鮮是一獨立之國, 貴國謂之屬國, 亦徒空名耳.”

33) 이에 대해 청국측은 항의했다. 그러나 결국 배상금을 주고 철폐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구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1879년, 유구번을 오키나와(沖繩) 현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른바 ‘유구처분(琉球處分)’ 즉 유구 왕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34) 『淸光緒朝中日交涉資料』권1, (二) 附件二覆日本國照會.

35) 원문: “修好條規內載所屬邦土, 朝鮮實中國所屬之邦之一.”

36) 실제로는 청국이 조선의 식민지화를 기도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속방’론은 식민지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체약국 일본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조선=속방’론을 전면 부정하는 일본… 그 적용은커녕 쓸모없는 공론이 되고 만다. 또 하나 조선은 그 조규의 체약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청국이 ‘속방’론을 표방하든 말든 조선은 ‘조약상 관계가 없다.’ 과연 모리는 위의 회답 속에서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⁷⁾ 그 후에도 그런 주장을 반복하는 모리와 청국측의 담판은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2월 12일에 모리는 총서와의 담판을 끝내고자 최종 조회를 보냈다.³⁸⁾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원래 조선은 실로 독립된 [국]체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자주로 상대한다. (중략) 귀국 역시 우리나라를 [청·일] 조규 속의 ‘침월’ 등 글자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 옛부터 이른바 속국이란 공명(空名)일 뿐이다. 무릇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일[다툼]이 벌어지더라도 [청국은] 조약상 본디 간여할 수 없다.³⁹⁾

그런데 이에 앞선 1월 24일, 모리는 허베이(河北) 성 바오딩(保定)에 있던 북양대신 리홍장(李鴻章, 1823-1901)을 방문하여 한 차례 회담을 가졌다.⁴⁰⁾ 무언가 기대했는지 모르나 결과는 대립의 연속이었다. 먼저 조약과 공법의 효용 여부를 둘러싸고 리홍장은 유용론, 모리는 무용론으로 대립했다. 예컨대 모리는 국가 간의 일을 결판내는 것은 ‘힘의 강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리홍장은 어떤 나라든 조약, 공법을 어기는 일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다음으로 리홍장은 ‘조선=속국, 속방’론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모리는 거부한다. 이에 관한 두 사람의 대화를 원문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하자.

森: 高麗[朝鮮]與印度, 同在亞細亞, 不算中國屬國.

李: 高麗奉正朔, 如何不是屬國.

森: 各國都說, 高麗不過朝貢受冊封, 中國不收其錢糧, 不關他政事, 所以不算屬國.

李: 高麗屬國幾千年, 何人不知. 和約[日清修好條規]上所說所屬邦土, 土字指中國各直省, 此是內地爲內屬. 征錢糧管政事. 邦字指高麗諸國, 此是外藩爲外屬. 錢糧政事向歸本國經理.

이렇듯 대화는 평행선을 그렸다. 위 인용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소속 방토’에 관한 리홍장의 새로운 분류이다. 그것을 그는 ‘속토=직성(直省), 내속(內屬)’과 ‘속방=외번(外藩), 외속(外屬)’의 두 범주로 나눈다. 주목할 것은 고려 즉 조선을 포함시킨 후자의 범주이다.

그 ‘속방=외번, 외속’이란 범주는 앞서 본 『흠정대청회전』의 ‘외번 속국=조공국 B, 사이 속국=조공국 A’를 하나로 합친 셈이다. 또는 『만국공법』의 ‘번속=속국 V, 변방=속국 T’를 하나로 합친 셈이다. 즉 ‘속방’은 속국 V, 속국 T 두 범주의 양의성을 띠게 된 것이다. 왜 새로운 분류로 두 범주를 하나로 합쳤을까? 간결히 말하면 조선을 청국 판도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자명하다. ‘조선을 확실히 비호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도를 담아 리홍장은 나름대로 ‘조선=속방’론을 발명했던 셈이다.⁴¹⁾ 역시 조선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한 교육지책의 산물이다(전술). 그러나 이것은 모리가 대변하듯 일본 정부의 반

37) 그런 주장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合照修好條規所屬邦土不相侵越之意, 彼此同守, 不敢斷以己意, 謂於條約 上無所關繫.”

38) 『淸光緒朝中日交涉資料』 권1, (二) 附件七日本國照會.

39) 원문: “原夫朝鮮實具獨立之體, 其內外政令悉自主. 我國亦以自主對之. (中略) 貴國亦不得引條規中侵越等字 加諸我國. 故曰所謂屬國徒空名耳. 凡事起於朝鮮日本間者, 於條約上固無與也.”

40) 『淸光緒朝中日交涉資料』 권1, (二) 附件八李鴻章與森有禮問答節略. 『李文忠公全集』譯署函稿卷四, 光緒元年12月28日附日本使臣森有禮署使鄭永寧來署晤談節略.

41) 그 배경에는 당시 리홍장을 비롯한 양무(洋務) 관료들 사이에 ‘조선 개입책’이 논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본다. ‘조선 개입책’의 상세는 權錫奉 (1986)의 제2, 3장 참조.

발에 직면해 있었다. 후술하나 훗날 조선 정부 내에서도 반발 세력이 형성된다.

3. ‘속방 조항’에 얽힌 문제

1876년 2월,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되었다. 전술했듯 청국은 그 조약 교섭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속국, 자주’론의 기존 방침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을 견제하면서 조선을 비호하기 위한 정책을 고안해 나갔다. 그 하나가 조선을 구미 제국과의 조약 관계로 유도하는 - 개국(開國)시키려는 - 정책이었다. 이윽고 1879년 4월에 일본이 ‘유구 처분’을 감행하자 청국은 개국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나갔다. 그 권유에 조선 정부가 호응한 것은 1881년 이후의 일이다. 당시 고종(高宗, 1852-1919; 재위 1863-1907)과 민비(閔妃, 1851-1895)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부의 개화파 관료는 개화(=근대화)와 개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예컨대 같은 해 1월, 조선 정부는 청국의 총서를 본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약칭, 통서[統署])을 설치했다.⁴²⁾ 통서는 ‘근대적’ 기관으로서 다양한 직무를 맡았다. 그 주된 직무는 외교, 통상을 관할하는 일이었다. 또한 5월에는 12명의 조사(朝士)와 다수의 수행원으로 구성된 시찰단 이른바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일본에 파견했다. 그 주요 임무는 일본 정부의 성(省)·청(廳) 직무를 비롯하여 각지 개항장(開港場)의 세관 업무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공장, 농장 등 근대적 시설을 시찰하는 일이었다. 일부 수행원은 임무를 마친 뒤 일본에 남아 유학했다. 그 한 사람인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게이오(慶應) 의숙(義塾)에 유학하는 동안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6-1901)의 지도를 받았다.

한편 조선 정부는 1881년 12월,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을 청국에 파견했다. 그는 1882년 1월에 텐진(天津)에 도착했다.⁴³⁾ 그의 주요 임무는 청국의 중개를 통해 미국과의 조약을 교섭하는 일이었다. 단, 그는 교섭 전권(全權)을 위임받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의 교섭은 리홍장과 미국 전권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22-95) 사이에 진행되었다. 교섭에 앞선 2월 15일, 김윤식은 리홍장을 만나서 조·청 양국이 각각 작성한 조약 초안을 검토했다.⁴⁴⁾ 그 결론은 청국측 초안(10개조)의 채택이었다. 이 가운데 제1관(款)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⁵⁾

조선은 중국 속방이긴 하나 내정-외교의 일은 마땅히 여태까지 두루(均) 자주(自主)해 왔다. 이번에 조약을 맺은 뒤 (중략) [조·미 양국은] 평행[=평등]으로 상대한다. 양국 인민은 영원히 돈 독하게 화호한다. 만약 다른 나라의 불공한 모독을 받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서로 원호한다.

주목할 용어는 ‘속방’이다. 이것을 청국측은 조약문에 - 이른바 ‘속방 조항’으로 - 삽입하고자 했다. 그 목적은 간단하다. 조·미 양국을 ‘조선=속방’론의 관련국, 승인국으로 끌어들이

42) 그 산하에는 事大司, 交隣司, 軍務司, 邊政司, 通商司, 軍物司, 機械司, 船艦司, 語學司 등 12사(司)가 있었다.

43) 이때 그는 수행하던 학도(學徒)·공장(工匠)들을 텐진의 근대적 시설에 유학시켰다..

44) 金允植, 『陰晴史』上, 高宗18年 辛巳 12月 26日條.

45) 원문: “朝鮮爲中國屬邦而內政外交事宜向來均得自主. 今茲立約後 (中略) 平行相對. 兩國人民永敦和好. 若他國偶有不公及輕侮之事 必彼此援護.”

기 위 함이다. 이로써 전술했던 ‘조선=속방’론의 치명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속방 조항’을 김윤식은 “지극히 좋다(極好)”라며 반겼다.⁴⁶⁾ 그리고 이튿날 16일, 고종에게 보낸 서한 속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高宗18年 辛巳12月 27日條: 원문만 인용).

我國之爲中國屬邦，天下之所共知也。(中略)以若我國孤弱之勢，若無大邦之作保[庇護]，則實難特立[自立]。(中略)天下人，見中國之担任我國，則各國輕我之心，亦從而小阻。且於天下，以均得自主繼之，是則與各國相交無害，用平等之權矣。不背事大之義，不觸失權之忌，可謂兩得。

간결히 말하면 ‘속방 조항’은 조선의 자립, 자주, 평등 등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것이다. 덕분에 “사대의 의리도 어기지 않고, 주권을 잃을 꺼림도 범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양득(兩得)이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짓는다.

당시 김윤식은 ‘속방은 속국 T와 같음’이라고 해석했을 것이다. 그러나 리홍장의 ‘속방’은 전술했듯 속국 T와 속국 V의 양의성을 띠고 있다. 이를테면 애매모호한 개념인 셈이다. 따라서 그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나 번역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또한 조선의 국가적 지위를 둘러싼 갈등, 대립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런 소지는 슈펠트와의 교섭에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건만 김윤식은 물론 리홍장도 미처 예상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3월 25일, 제1차 회담이 열렸다. 리홍장은 슈펠트에게 ‘속방 조항’ 삽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슈펠트는 거부했다.⁴⁷⁾ 그 첫 문장의 영문은 “Chosen being a dependent state of the Chinese Empire has nevertheless hitherto exercised her own sovereignty in all matters of internal administration and foreign relations.”이었다. 이렇듯 ‘속방’이 ‘종속국, 보호국’을 뜻하는 ‘dependent state’라고 영역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따른다면 조선은 속국 V 내지 그 이하의 나라가 되고 만다. 달리 말해 공법상 조약 체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나라가 되고 만다. 그래서 ‘속방=dependent state’의 영역을 문제로 삼고 거부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리홍장, 청국측의 ‘조선=속방’론은 슈펠트, 미국측의 거부에 직면했던 셈이다.

이 문제를 접어둔 채 4월 5일의 제2차, 10일의 제3차 회담은 조약 초안의 토의를 계속했다. 그 문안이 거의 합의된 제3차 회담에서 슈펠트는 ‘속방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리홍장은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내놓았다: ‘속방 조항을 삭제한다. 그 대신 조약의 조인이 끝난 뒤 조선 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같은 취지의 <조회(照會)>를 보내도록 한다’라는 것이다.⁴⁸⁾ 이런 절충안에 슈펠트는 동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4월 19일의 제4차 회담에서 전문 14개 조의 초안을 가조인(假調印)함으로써 조약 교섭을 완료했다

5월 초순, 리홍장은 부하인 마젠충(馬建忠, 1845-1900)을 청국측 대표로서 인천에 파견했다. 한편 슈펠트는 5월 13일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튿날 조선측 전권이자 정사(正使)인 신헌(申櫓, 1811-1884), 부사(副使) 김홍집(金弘集, 1835-1896)과 첫 대면을 가졌다. 이후 양측은 마젠충의 중개로 회담을 거듭한 뒤 5월 22일, 전문 14개 조의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약칭, 조·미 조약)을 조인했다. 이를 후 조선측은 고종의 <조회>를 슈펠트에게 전달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⁴⁹⁾

46) 원문: “惟敝邦在中國，爲屬國，在各國爲自主，名正言順，事理兩便。條約中，此一款插入似爲極好。”

47) USDS, DD, China, 1843-1906, Vol. 60, No.4, Shufeldt to Frelinghuysen, March 31st, 1882.

48) USDS, DD, China, 1843-1906, Vol. 60, No.5, Shufeldt to Frelinghuysen, April 10th, 1882.

49) 원문: “朝鮮素爲中國屬邦，而內政外交向來均由大朝鮮國君主自主。今(中略)彼此立約，俱屬平行相對。大朝鮮國君主明允將約內各款必按自主公例。(中略)大朝鮮國爲中國屬，其一切分內應行各節均與，大美國毫無干涉。” 이 해설은 岡本隆司(2004) 제2장, 朴日根(1981), 210-219쪽, 奥平武彦(1969), 136-139쪽, Jones(1936), Chapter VIII 등 참조.

조선은 본디 중국 속방이긴 하나 내정-외교는 여태껏 두루 대조선국 군주의 자주로 행해 왔다. 이제 (중략) 피차의 조약을 맺고 나서 함께(俱) 평행으로 상대한다. 대조선국 군주는 명백히 승낙하노니 앞으로 조약 내의 각 조항을 반드시 자주하는 공례(公例)에 따라 행할 것이다. (중략) 조선은 중국의 속(屬)이나 일체의 분내(分內, 보유한 권리)는 마땅히 각 절목에 맞춰 고르게 행할 것이니 미국은 조금도 간섭하면 안 된다.

그 취지는 앞서 본 ‘속방 조항’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은 마지막 문장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조선=속(방)’이란 조·청 양국 간의 사항/일인 만큼 - 마땅히 조선이 알아서 대응할 것이니 - ‘미국은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조회>를 슈펠트는 <조회>를 수납하여 본국 정부에 송부했다. 이를 받은 미국 정부는 그 내용이 어떠한지 단지 ‘국왕의 서한’일 뿐 조약상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⁵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아마 슈펠트에게 전달된 고종의 <조회>는 그 영문판을 따로 갖추지 않았던 모양이다. 따라서 <조회> 안의 ‘속방’을 어떻게 번역할지는 - 마치 각자 자유에 맡겨진 듯한 - ‘방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를테면 미국측은 나름대로 번역할 수 있었던 셈이다. 과연 슈펠트로부터 <조회>를 입수한 북경 주재 대리 공사 홀콤(Chester Holcombe, 1842-1912)은 그 전문을 이렇게 번역했다(밑줄 인용자).⁵¹⁾

Chosen has been from ancient times a State tributary to China. Yet hitherto full sovereignty has been exercised by the Kings of Chosen in all matters of internal administration and foreign relations. Chosen and the United States in establishing now by mutual consent a treaty are dealing with each other upon a basis of equality. The King of Chosen distinctly pledges his own sovereign powers for the complete enforcement in good faith of all the stipulations of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regards the various duties which develop upon Chosen as a tributary state to China, with these the U. S. has no concern whatever.

이렇듯 ‘속방’을 “tributary (state)”로, 조선은 “완전한 자주/주권 full sovereignty”을 누려 왔다는 식으로 번역했던 것이다. 이를 송부받았을 미국 정부의 반응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4. ‘조선=속방’론을 둘러싼 대립

조·미 조약이 체결된 지 약 2개월 뒤인 1882년 7월에 임오군란이 발생했다. 그러자 청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을 진압했다. 이를 계기로 청국은 조선의 내정-외교에 개입하려는 이른바 속방화 정책에 착수했다.⁵²⁾ 이것은 조선 정부 내의 개화파 세력을 온건파와 급진파로 양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속방화 정책에 동조했던 김윤식 등은 온건 개화파. 반면 이에 반발

50) 아니, 어쩌면 거의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51) USDS, DD, China, 1843-1906, Vol. 60, Enclosure 1 and 2 in Holcombe's No.133 to Frelinghuysen, June 26th, 1882.

52) 예컨대 청국은 조선과 1882년 10월의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비롯한 세 가지 무역 장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른바 ‘속국’에 대한 ‘종주국’의 지위를 강화시키고자 했다. 이로 인해 양국의 전통적 조공 관계는 ‘근대적으로 개편/변질’되어 나갔던 셈이다.

했던 김옥균(金玉均, 1851-1894) 등은 급진 개화파를 형성했다. 그리고 1884년 12월, 당시 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원조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역시 한성에 주둔하던 청국군의 개입으로 사흘 만에 실패했다.⁵³⁾ 이 정변의 실패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특히 청국의 속방화 정책을 강화시키는 악영향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자 고종과 민비를 중심으로 하는 궁정 세력이 저항을 시도했다. 청국을 견제하고자 1885년 봄부터 러시아와의 밀약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독일인 외교 고문이자 총세무사(總稅務司) 즉 Foreign Advisor and Inspector-General of Customs이던 뮐렌도르프(P.G. von Möllendorf, 1848-1901)였다. 그는 리홍장의 추천으로 임오군란 후인 1882년 12월에 부임했다. 부임 후 급진 개화파와는 대립했다. 그러나 갑신정변 실패 후에는 조선 정부 내에 퍼져 있던 반청 감정에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와의 밀약 교섭에 가담했던 것이다.

이를 탐지한 리홍장은 조선 정부를 압박하여 뮐렌도르프를 해임시켰다. 그리고 그의 직책을 둘로 나누어 각각 미국인을 임명하여 부임시켰다. 외교 고문에는 상하이의 미국 총영사 데니(O. N. Denny, 1838-1900), 총세무사에는 청국 해관의 직원이던 메릴(Henry F. Merrill, 1853-1935)이 임명되었다. 단, 메릴의 직책은 'Chief-Commissioner'였다. 이는 조선 해관의 격을 낮춘다는 뜻이었다. 후술하나 메릴은 1885년 10월 부임한 뒤 청국의 총세무사 하트(Sir Robert Hart, 1835-1911)의 부하처럼 근무했다.⁵⁴⁾ 덧붙이면 리홍장은 1885년 11월에는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를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劄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책에 임명하여 파견했다.⁵⁵⁾ 임무는 조선의 내정-외교를 감시/감독하는 일이었다. 이후 약 10년 동안 주재하면서 그가 벌였던 악행은 조선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기 일쑤였다.⁵⁶⁾

(1) 메릴의 입장: '조선=속방'론의 추인(追認)

조선에 부임하기 전에 메릴은 리홍장의 훈령 5개조를 받았다.⁵⁷⁾ 그 제3조는 “중국이 조선을 속번(屬藩)으로 보호한다는 뜻에 어긋나면 안 된다. 또 다른 나라의 참예(攬預; 관여, 간섭)를 받아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다.⁵⁸⁾ 주목할 것은 ‘속번’이란 용어이다. 『만국공법』의 ‘번속’(=속국 V)을 앞뒤를 바꾸어 놓은 셈이다. 아무튼 애매모호한 개념이긴 하나 거기에 담긴 의도는 분명하다. ‘조선을 그 내정-외교에 간섭해서라도 보호하겠다. 타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리홍장의 의도에 전면 동조했던 사람이 하트였다. 예컨대 그는 1886년 12월 4일 에 메릴에게 보낸 서한 속에서 이렇게 주장한다.⁵⁹⁾ “China cannot afford to

53) 이듬해 4월, 청·일 양국은 텐진 조약을 체결했다. 그 제1조는 양국군의 철수를 규정했다. 그런데 양국은 제3 조에서 ‘장래 조선에 출병할 때 행문지조(行文知照, 상호 통지)한다’는 약속을 했다. 이 조항은 10년 뒤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54) 高柄翊 (1970)의 「朝鮮海關과 淸國海關과의 關係의 變動—메릴과 하트를 中心으로」를 參照. 청국 해관의 상제는 岡本隆司 (1999) 참조. 하트의 생애는 Bredon(1909), Drew(1913), Stanley(1950) 등을 참조.

55) 그의 직책은 ‘감국(監國)’ 또는 영어로는 ‘Resident’라고도 표기되었다. ‘Resident’는 당시 ‘식민지 주재관’을 함의하는 용어였다.

56) 그의 악행에 관해서는 李陽子(2002), 林明德(1970), Ch'ên(1961)의 II 등을 참조.

57)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4권, 1944-45쪽.

58) 원문: “不可違背中國保護朝鮮屬藩之意. 亦不能聽別國攬預.”

59) 이 서한은 하버드 대학 휴턴 도서관(Houghton Library)에 소장된 *Sir Robert Hart Papers and*

recognis[ze] Korea's independence, and the longing looks other Powers cast in that direction *must force* China eventually to incorporate and rule the place like a province.” 즉 ‘청국은 조선 독립을 승인할 수 없다. 언젠가는 성(省, province)의 하나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시를 보낸다. “Your present *raison d'être* and my connection with the Korean Customs have one and same foundation — *Korea's dependence* and the necessity there is to tell the world that China *is* Korea's Suzerain: don't forget this!” 그 취지는 ‘조선 세관을 청국 관할로 편입하라. 세계 즉 다른 나라들을 향해 조선은 종주국인 청국의 종속국임을 선포하라’는 것이다. 그는 속방화 정책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실제로 메릴은 하트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조선 해관의 관리권, 인사권을 장악했고 또 무역 통계(1886년도~1894년도)를 청국의 그것과 합본하여 출간했다. 이를테면 청국 해관의 관할 하에 편입했던 섬이다. 이러한 성과를 올리고 있던 메릴에게 하트는 끊임없는 찬사의 서한을 보냈다. 그 가운데 1888년 5월 29일자 서한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담고 있다.⁶⁰⁾ “In all that concerns Korea, the one point to start from is that Korea *is* China's tributary and that China *will not only* fight anybody rather than give up her suzerainty, *but will* be forced to absorb Korea if troublesome scheming goes on there. It is useless for America to say [Korea/the Korean] ‘assert your independence!’ It is useless for Japan to say ‘come to my arms!’”

거기서 하트는 ‘조선=tributary’라고 하면서도 ‘청국은 종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 유사시 에는 흡수병합하게(absorb) 될 것’임을 강조한다. 그런 다음 ‘미국이 조선/인에게 “너의 독립을 주장하라!”고 말함은 - 일본에게 “나의 무기가 되어 달라!”는 말처럼 - 소용없는 일’이라며 조롱한다. 이런 조롱은 조선의 외교 고문 데니와 그의 저술을 의식해서 나왔으리라 여겨진다. 바로 그즈음 데니의 『청한론(淸韓論) *China and Korea*』이 출판되어 있었다. 이를 하트는 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롱을 내뱉게 되었음은 이해될 수 있으리라. 이제 데니의 저술 내용을 살펴보자. 그와 함께 유길준의 논문을 대비해 보기로 한다.

(2) 데니와 유길준의 입장: ‘조선=속국, 속방’론 비판

데니는 1886년 3월에 부임했다. 그는 부임 직후 조선 궁정과 러시아 공사 웨베르(Karl I. de Weber, 1841-1910; 1885년 가을 부임) 사이에 진행되던 제2차 밀약 교섭에 접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안스카이의 교섭 방해, 고종 폐위 음모(1886년 여름) 등 악행을 견문했다. 그리하여 반청 감정을 품게 된 그는 고종에게 자주 외교의 추진을 권고했다. 그의 권고에 따라 고종은 1887년 가을에 박정양(朴定陽, 1841-1904)을 주미 공사, 조신희(趙臣熙, 생몰미상)를 유럽 5개국 공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고종은 청국 예부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그 파견 승인을 받고자 했다.⁶¹⁾

Letters (2 boxes)의 *Transcription of Letters* (M. S. Chinese 4. 1)에 들어 있다. 그 원문은 Morse (1910-1918), Vol. III, pp.16-17, Note 52에 인용되어 있다.

60) *Transcription of Letters* (M. S. Chinese 4. 1). Morse (1910-1918), Vol. III, pp.15-16, Note 50.

61)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4권(2375쪽), 光緒十三年八月二十二日(1887年10月8日) 자의 자문.

거기서 고종은 이렇게 말한다: “조선은 서양 각국에 사절을 보내려 한다. 반드시 교시를 청하여 윤준(允准, 승인)을 기다린 뒤 다시 상의(再訪)함으로써 속방 체제에 맞출 것이다.”⁶²⁾ 한 마디로 ‘속방 체제’를 지킬 테니 사절 파견을 승인해 달라는 뜻이다. 고종이 말하는 ‘속방’이란 ‘속국 T’로서 ‘속방 체제’란 ‘조공 체제’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속방 체제에 맞출 것”이란 역으로 청국도 ‘속방의 외교 자주/주권’을 존중하여 ‘사절 파견을 승인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과연 고종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⁶³⁾

[청국은 조선이] 미국과 먼저 통호(通好)할 것을 특별히 승락했다. 관원을 파견하고 교섭을 도와 조약을 맺도록 해주었다. 게다가 <조회>를 미리 행하여 ‘조선은 중국 속방이긴 하나 내외의 일은 여태껏 두루 자주해 왔다’는 등의 말로 성명하도록 했다. 이로써 소방(조선)은 후도(侯度, 제후의 법도; 『詩經』大雅, 抑)를 삼가 지키고, 각국과 평행으로 상대하니 체제와 교섭은 양 전(兩全)이 되었다.

한 마디로 ‘양전’론이다. 즉 ‘속방 체제’의 본래 목적은 ‘조공 체제와 조약 체제의 양자 모두를 온전하게 함’에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엔 ‘양 체제를 조선도 지킬 것이니 마찬가지로 청국도 지켜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또한 속방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투영되어 있다.

조선의 사절 파견을 청국은 승인했다. 단, ‘령약삼단(另約三端)’의 세 약조(約條)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 요지는 ‘주재국에 착임하면 그곳 청국 공사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르라’는 것이다. 박정양은 1887년 11월에 한성을 출발하여 이듬해 1월 워싱턴에 도착했다(朴定陽, 『船上日記』).⁶⁴⁾ 착임한 뒤 그는 ‘령약삼단’을 무시한 채 자주 외교를 펼쳤다. 그러자 청국은 이를 문제 삼아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결국 박정양 공사는 1888년 11월에 귀국하고 말았다. 이른바 박정양 사건이다.

데니는 청국이 ‘령약삼단’을 내걸고 간섭하자 이를 비판하고자 『청한론』을 저술했다. 이를 통해 청국의 간섭은 국제법이나 그 학설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청한론』은 1888년 2월에 출판되었다.⁶⁵⁾ 그런데 이에 앞서 그 원고를 읽어본 사람이 유길준이다.⁶⁶⁾ 그는 데니의 저술을 참조하여 「방국의 권리」라는 국한문 혼용의 논문을 썼다.⁶⁷⁾ 이들 두 사람은 각각의 저술에서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국의 ‘조선=속국, 속방’론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먼저 데니의 주장은 다음 문장에 집약되어 있다(25; 밑줄 인용자).

To those who are versed in international affairs Korea cannot be considered a dependent state, for the reason that the law and the facts have placed her in the column of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 where she will remain, unless, through the force of

62) 원문: “朝鮮派使西國。必須先行請示。俟允准後再訪。方合屬邦體制。”

63) 원문: “特允與美國首先通好。而派員襄辦妥訂條約。並先行照會。聲明朝鮮爲中國屬邦而內主外向來均得自主等語。使小邦恪守侯度。而在各國平行相待。體制交涉務歸兩全。”

64) 한편 조신희는 1887년 가을에 유럽으로 출발했으나 홍콩에서 머물다가 귀국해 버렸다.

65) 『청한론』은 한성본과 상하이본의 두 가지 판본이 있다. 본 논문은 O. N. 데니—著, 岡本隆司監修·訳註, 『淸韓論』을 인용한다.

66) 유길준은 전술했듯 게이오 의숙에서 유학한 뒤 1883년 1월에 귀국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報聘使)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을 수행했다. 그 공식 일정을 마친 후인 11월부터 그는 미국에 남아 유학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소식에 접한 그는 예정되었던 하버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그리하여 1885년 5월경부터 유럽을 거쳐 12월에 귀국했다. 귀국 후 그는 갑신정변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았으나 처형을 면한 채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다(연금 해제는 1892년 봄).

67) 『兪吉濬全書 I 西遊見聞』에 실려 있다. 이에 앞서 그는 거의 같은 내용의 한문 논문인 「國權」(『兪吉濬全書IV』)을 쓰기도 했다. 이들 논문과 『淸韓論』과의 비교 고찰은 金鳳珍(2004), 제2장 참조.

superior numbers, she is taken out of it. Korea has the right of negotiation, -- a vassal state has not; Korea has concluded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with other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 without reference to China, which a vassal state cannot do; and in virtue of those treaties has dispatched public Ministers to the courts of her respective treaty powers, while vassal states cannot even appoint Consuls-General but only Consuls and commercial agents. Korea has the right to declare war or peace, which a vassal state cannot do except through its suzerain.

요컨대 ‘조선은 주권 독립 국가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의 하나로서 종속국 dependent state, 가신국 vassal state 따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청국의 ‘조선=속국, 속방’론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다름 아니다. 또한 데니는 ‘속국, 속방’의 해석을 둘러싼 조·청 양국 간의 불일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한다: “The trouble seems to arise from this: the language used by the King to express his *tributary* relations, is persistently and erroneously interpret to mean *vassal* relations by China and her supports.” (29) ‘속국, 속방’ 관계를 조선은 ‘*tributary* relations’라고 해석하는 반면 청국은 ‘*vassal* relations’라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한편 유길준은 위에서 인용한 데니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의역(意譯)하고 있다: “속방은 그 복사(服事)하는 나라의 정령(政令) 제도를 오로지 준수하기에 내외의 제반(諸般) 사무를 자주 하는 권리가 전혀 없다. 그러나 증공국(贈貢國, 조공국)은 강대국의 침벌(侵伐)을 면하기 위해 그 부적(不敵)한[=겨루지 못할] 형세를 스스로 생각하여 비록 본심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약장(約章)을 준수하고 공물을 바친다. [이로써] 그 향유하는 권리의 분도(分度, 일정한 한도)로서 독립 주권을 확존(獲存, 획득 보존)한다.” (112) 그 요지는 ‘조선은 주권 독립 국가’라는 것으로 데니의 그것과 일치한다. “증공국” 즉 조선은 “당당한 독립 주권국의 하나”라는 것이다 (112).

위 인용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용어가 하나 있다. ‘약장’이 그것이다. 이로써 ‘조공 관계를 일종의 조약 관계로’ 유길준은 보고자 했던 셈이다. 이로부터 ‘약장을 어길 경우 항의할 수 있다. 그래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약장을 폐기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과연 그는 “약장의 위배(違背)는 신의를 깨뜨리니 공법이 불취(不取; 불허)하는 것”(114)이라 말한다. 그리고 조공 관계란 “아(我; 조선)의 공(貢)을 받고, 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서로 인정하는 약장”이라 주장한다(114-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답은 두 가지다. 「방국의 권리」의 답은 “자보(自保)하는 계(計)를 작(作)하나니”(115) 즉 ‘스스로 보전할 대책을 만들겠노라’는 것이다. 한편 「國權」의 답은 “宜絶貢抗辭, 以論其無道之習” (『兪吉濬全書IV』, 40) 즉 ‘마땅히 조공을 끊고 항의함으로써 그 무도한 버릇을 비판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유길준은 자신의 이론을 펼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그의 ‘양절체제(兩截軀制)’론이다. 청국의 간섭과 이로 인해 조선의 조약 관계에 생긴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 전개한 이론이다. 그 논리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116-117): 다른 독립 주권 국가들과 “수공국도 동등한 조약을 맺었고, 증공국[=청국]도 동등한 조약을 맺었다. 따라서 수공국의 동등한 체약국이 증공국의 동등한 체약국이고, 증공국의 동등한 체약국이 수공국의 동등한 체약국이다.” 그럼에도 “수공국이 그 자존하는 지위를 위해 [조선과] 여러 나라와의 동등 조약을 사절(辭絶)하거나, 이미 파견한 공사를 되돌리거나, 이미 개방한 항구를 폐쇄하여 만국 사이에 오만하게 홀로 처(處)하는 것이 옳을까? 이 역시 옳지 않다.”⁶⁸⁾ 왜냐면 증공국과 수공국 각각의 체제가 다른 나라에 대해 “양절” 즉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체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17).

이와 같이 유길준은 ‘양절 체제’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는 곧 청국의 ‘조선=속국, 속방’론의 비판과 상통한다. 바로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양절’ 체제가 만들어낸 요인이었던 까닭이다. 이를 바로잡는 방법의 하나는 고종이 전개했던 ‘양전’론이다. 이에 따라 ‘조공 체제와 조약 체제의 양자를 온전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자명하다. 청국의 ‘속방 체제’는 물론 ‘근대적으로 변질된’ 조공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길이다. 실제로 역사는 그런 길로 나아갔다.

맺음말

1894년 봄, 전라도에서 동학 농민군이 봉기했다. 그리고 각지를 점령하여 세력을 확대한 뒤 5월 27일에는 ‘폐정(弊政) 개혁’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조선 정부는 청국의 원병을 요청했다. 청국은 6월초에 청국군을 파병하여 아산만에 주둔시켰다. 이에 일본은 텐진 조약 제3조(전술)를 내걸고 일본군을 한성에 파병했다. 이렇듯 양국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일본측은 청국 측에게 조선의 공동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국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7월 23일 새벽, 경복궁을 강점하는 한편 청국군을 공격했다. 이로써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경복궁을 강점한 일본측은 대원군을 앞세우고 정부를 개조했다. 즉 개화파를 중심으로 하는 (제1차) 김홍집(金弘集, 1842-1894) 내각 즉 갑오개혁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그 초기 개혁을 주도했던 기관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위원 17명)이다.⁶⁹⁾ 7월27일에 설립된 군국기무처는 12월 17일까지 존속 동안 약 210건의 개혁 의안을 의결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7월 30 일에 의결된 ‘의안 2호’이다. 즉 “청국과의 조약을 개정하고 또 특명전권공사를 열국에 파견할 것”을 의결한 것이다. 그 취지는 조·청 간에 체결된 ‘세 가지 장정’(주52)의 개정은 물론 조공 관계의 폐기에 있었다. 이에 앞서 7월 25일, 갑오개혁 정부는 이미 ‘세 가지 장정의 일률(一律) 폐 파(廢罷)의 건’(『舊韓國外交文書』제9권)이라는 문서를 청국에 통지했다.

이후 조공 사절의 파견은 폐지되었다. 이어서 갑오개혁 정부는 청국에게 공법상의 새로운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단, 1896년 2월에 일어난 아관파천(俄館播遷;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에 의해 갑오개혁 정부는 붕괴되었다.⁷⁰⁾ 그리하여 고종의 주도로 새 정부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나서 1897년 10월, 고종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이로부터 2년 뒤 1899년 11월에는 한·청 간의 평등 관계에 입각한 ‘통상조약’(15개조, 해관 규칙)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양국은 조공 관계를 폐기했다. 마침내 조공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던 것이다. 당연히 ‘속국, 속방’이라는 용어는 양국의 공식 문서로부터 사라졌다.

따라서 ‘조선=속국, 속방’론 역시 사라졌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방향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그 론이 일부 학자 사이에서 재생산되고 확산되어 나갔던 탓이다. 이런 사상(事象)을 ‘역사의 비아냥, 조소’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한 계기를 만든 학자의 하나가 모스(Hosea Ballou Morse, 1855-1934)였다. 그는 1874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뒤 청국 해관에 취직 즉 하트의 부하 직원이 되었다. 이후 부세무사, 세무사를 거친 다음 총세무사 관서의 통계 국장을 역임했다. 1909년에 퇴직하고 나서는 영국으로 건너가 중국 연구에 종사

68) 인용문 안의 “개방한 항구”란 평양을 가리킨다. 당시 조선은 평양을 개항하려 했으나 청국이 이를 저지하고 있었다.

69) 유길준 역시 그 위원이 되었다. 그리고 개혁을 주도했다.

70) 갑오개혁 정부가 존속했던 1년 반 동안 진행된 ‘갑오경장’에 관해서는 柳永益 (1990), (1998) 참조.

하면서 여러 저작을 출판했다⁷¹⁾. 그의 주저(主著)는 Vol. I, II, III의 셋으로 구성된 Morse (1910, 1918)이다.⁷²⁾

그의 조선관(朝鮮觀)을 보자. 예컨대 Vol. II에서 이렇게 서술한다: “She [Qing China] was the suzerain power, and as such was bound to protect her vassal [Korea] from external aggression and internal disorder. This duty she never renounced.” (p.27) 조선은 청국 즉 종주국의 ‘속국 V’이었다는 것이다. 또 “China made some mistakes in her Korean policy at first; but after Korean affairs had been placed in the hands of Li Hung-chang, and from the time when he had recognized his first false step and had replaced Mr. Von Möllendorf to Mr. Merrill, the mistakes were fewer.”(Ibid.)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그 취지는 메릴은 뮐렌도르프와 달리 리홍장의 ‘속방화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했노라는 것이다. 모스 역시 그랬다는 뜻을 Vol. III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p.2).

For centuries Korea had been vassal to China; and both courts fully recognis[z]ed the reciprocal obligation, by which the one gave protection against external aggression and internal disorder; and the other paid tribute and solicited recognition and investiture for each new ruler. [...] The Manchu ruler mounted the throne of China in 1644, and the subject kingdom of Korea resumed its position of vassalage to the Chinese emperor which was not disturbed for more than two centuries.

‘조선=속국’론이다. 게다가 조선이 청국과 1644년에 남한산성에서 ‘성하(城下)의 맹(盟)’을 맺은 이래 줄곧 ‘속국 V’였다는 논리이다.

거기에 담긴 오류, 오해를 새삼 지적할 필요는 없으리라. 아무튼 모스의 여러 저작은 훗날 중국 연구의 고전이 되었다. 그리고 구미 제국은 물론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연구자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⁷³⁾ 그대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그 영향을 받은 학자의 하나가 저명한 국제관계학자였던 - 영국 학파의 창시자인 - 불(Hedley Bull, 1932-1985)이다. 그의 *The Anarchical Society*(『무정부 사회』)를 보면 “중국과 속국 V China-and-its-vassals”와 같은 “종주국 체제를 구성하는 독립 정치체 사이에서는 한 나라=종주국만 주권을 보유한다”고 서술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⁷⁴⁾ 이때 ‘속국 V’의 범주에는 “중화 제국과 그 조공국들 Imperial China to its tributary states”가 포함되어 있다.

단,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 1907-91)는 예외에 속한다. 비록 ‘조선=속국 V’론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수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그는 1929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영국에 가서 모스를 방문하여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⁷⁵⁾ 그러나 어느덧 비판 의식을 품게 되었던지... 훗날 페어뱅크는 Fairbank ed. (1968)에서 독자적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종주권suzerainty’이란 용어를 쓰는 대신 “우월 superiority”이라고 표현한다.⁷⁶⁾ 그리고 중화 세계 질서와 구미 국제 질서가 지닌 “별개의 용어 체계 two

71) 모스의 생애에 관해서는 Fairbank, et al.(1995) 참조.

72) 그 Vol. I 첫 면에는 ‘To Sir ROBERT HART, Bart. [Baronet] INSPECTOR-GENERAL OF CHINESE IMPERIAL CUSTOMS AND POSTS’라는 헌사(獻詞)가 부쳐져 있다.

73) 그러나 그의 오류, 오해는 지적도, 수정도 받지 않은 채로 있다.

74) Bull (1977), p.11.

75) 그러는 동안에 그는 Morse (1910, 1918)를 힘들게 읽었노라고 한다.

76) J. K. Fairbank, ‘A Preliminary Framework’ in Fairbank ed. (1968), p.2.

distinct systems of terminology”의 차이를 지적한다(p.5). 이를 주목하고 음미한다면 ‘조선=속국 V’론의 오류, 오해를 지적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이 길을 여는 일은 동아시아 개념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사료〉

- 『舊韓國外交文書』(전21권), 제8~9권, 高麗大學校亜細亞問題研究所編纂委員會編, 高麗大學出版部, 1965년~1973년.
- 『萬國公法』, 京都崇實館存版, 1864年刊.
- 朴定陽, 『船上日記』(1981년 김원모 교수 발굴 자료).
- 『兪吉濬全書』 I~V, 一潮閣, 1971(影印本).
- 『從政年表·陰晴史』, 韓國史料叢書第6, 國史編纂委員會編, 1958.
- 『清光緒朝中日交涉資料』(全88卷) 卷一, 北平故宮博物院編, 北京: 文海出版社, 1963.
- 『清季中日韓關係史料』(全11卷) 第二卷, 第四卷,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台北: 精華印書館, 1972.
- 『清韓論』 O. N. 데니 저, 오카모토 다카시 (岡本隆司) 校訂·譯註, 横浜: 成文社, 2010.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1886 Edition of Richard Henry Dana, Jr., in *The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edited by James Brown Scott,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3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General Records of Department of State, Diplomatic Despatches, China, 1843-1906. (USDS, DD, China로 약칭함)

〈한국어〉

- 高柄翊 1970, 『東亞交涉史의 研究』서울대학교 출판부.
- 權錫奉 1986, 『清末 對朝鮮政策史研究』, 一潮閣.
- 김봉진 2018, 「사대의 재해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 의 설계』(사회평론 아카데미, 2018)의 제1부 제3장.
- 朴日根 1981, 『美國의 開國政策과 韓美外交關係』, 一潮閣.
-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清交涉』, 檀大出版部.
- 柳永益 1990, 『甲午更張研究』, 一潮閣.
- 柳永益 1998, 『東學農民蜂起와 甲午更張』, 一潮閣.
- 李陽子 2002, 『朝鮮에서의 袁世凱』, 釜山: 신지書院.

〈중국어〉

- 林明德(린밍더) 1970, 『袁世凱與朝鮮』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台北: 精華印書館).
- 傅德元(푸더위엔) 2013, 『丁韞良與近代中西文化交流』臺大出版中心.

〈일본어〉

- 岡本隆司(오카모토 다카시)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古屋大學出版會.
- 岡本隆司 1999, 『近代中國と海關』, 名古屋大學出版會.
- 奥村武彦 1969, 『朝鮮開國交渉始末<附·朝鮮の条約港と居留地>』, 刀江書院.
- 姜東局 2004, 『「屬邦」の政治思想史-19世紀後半における「朝鮮地位問題」をめぐる言説の系

- 譜』, 東京大學大学院法学政治學研究科博士論文.
- 金鳳珍 2004, 『東アジア「開明」知識人の思惟空間 鄭觀応・福沢諭吉・俞吉濬の比較研究』, 九州大學出版會.
- 金鳳珍 2000, 「『礼』と万国公法の間－朝鮮の初期開化派の公法観－」, 『北九州市立大学外国語学部紀要』第102号.
- 사토 신이치(佐藤慎一) 1996, 『近代中国の知識人と文明』, 東京大學出版會.

〈영어〉

- Bongjin KIM (2017), 'Rethinking the Traditional East Asian Regional Order: The Tribute System as a set of Principles, Norms, and Practices,' in *Taiw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4, No. 1 (Issue 27), June 2017, pp.119-170.
- Bredon, Juliet (1909), *Sir Robert Hart: the Romance of a great Career*, New York: E. P. Dutton & Company.
- Bull, Hedley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ên, Jerome (1961), *Yuan Shih-K'ai 1859-1916*,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Drew, Andrew B. (1913), *Sir Robert Hart and his Life Work in China*, Worcester, Mass.: Clark University.
- Fairbank, John King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airbank, John King, et al. (1995), *H. B. Morse, Customs Commissioner and Historian of China*,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Griffis, W.E. (1885),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Hobsbawn, Eric and Ranger Terence eds.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F. C. (1936),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Ph. D. Thesis of the Department of History, Harvard University.
- Morse, H. Ballou (1910, 1918),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3 volumes: Vol. I. The Period of Conflict, 1834-1860 (1910); Vol. II. The Period of Submission, 1861-1893, (1918); Vol. III. The Period of Subjection, 1894-1911, (1918). London,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mpany.
- Stanley, F. W. (1950), *Hart and the Chinese Customs*, Belfast: Published for the Queen's University.

주권 개념의 도입과 한국근대사

강상규(방송대)

1. 문제제기: 주권 개념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한국근대사에서 살피다

현대인들은 주권국가 속에서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현상들을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살아간다. 주지하는 것처럼, 주권(Sovereignty)은 근대국제관계 및 근대정치의 근간(根幹)을 구성하는 핵심개념이다. 무엇보다 주권 개념은 대내적, 대외적 측면의 이중성, 즉 영토의 ‘안과 밖’의 세계에 대해 엄격히 구별한다. 요컨대 영토주권 안의 영역에서는 국민으로서 개인이 정치공동체의 공동선과 윤리를 추구하지만, 영토주권 밖의 영역은 개별 정치공동체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반복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영토 안의 세계가 정치윤리와 정치학의 영역이라면, 영토 밖의 세계는 국제정치학의 고유한 연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¹⁾

하지만 기존의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사분야에서 주권에 관한 논의는 이미 ‘전제’해두고 들어가는 문제로서 오래도록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주권 개념을 국가에 불가분적으로 귀속되어있는 추상적이고 불변적인 속성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의 국제정치학이나 사회과학 교과서, 법학 관련 교재들은 ‘주권’, ‘국민’, ‘영토’를 그냥 ‘국가의 3요소’라고 가르치고 만다. 이는 독일의 공법학자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주권국가’ 같은 현상이나 표현들은 사실 동아시아 한자문명권에서 그다지 오래된 개념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더라도, ‘주권(主權)’이라는 용어는 각각 19세기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처음 비로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주권이 한자문명권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주권’이라는 용어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를 거쳐 생겨난 개념인가. 그리고 ‘주권’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만일 이러한 용어들이 어느 지역의 어떤 역사적 환경을 통해 형성된 특수한 개념이라면 어떻게 오늘날 세계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인가. 또한 ‘주권’국가와 같은 용어가 동아시아 문명권에 등장하기 이전에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국가들은 주권국가와 어떤 차이가 존재했던 것인가?

환언하면, 주권이라는 개념은 ‘언제’ 동아시아 한자문명권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이처럼 확고하게 정착된 것일까? 그리고 이런 용어로 지칭되는 현상이 보편화된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처음 나타나던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 또한 ‘주권’이라는 개념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당대 사람들은 이런

1)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해서는, 로버트 잭슨, 옥동석 역, 『주권이란 무엇인가』(21세기북스, 2016)가 참고하기 좋다.

2) ‘주권’이라는 용어는 『朝鮮王朝實錄』데이터베이스(<http://sillok.history.go.kr>)를 통해 확인해보면, 高宗31年10月3日에 처음 등장한다. 1894년 즉 청일전쟁시기에 해당한다.

용어로 지칭되는 현상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며, 한중일 삼국의 반응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했던 것일까?³⁾

본 연구는 이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질문 중에서 특히 ‘한자문명권에 주권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근대사의 맥락에서 주권 개념이 도입’되는 경위와 그 의미를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왜냐하면 ‘주권’이라는 개념처럼 현재의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용어의 의미를 피상적이고 ‘초역사적’ 혹은 ‘비역사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닌 역사적 문맥에서 이해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와 한반도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궤적 위에서 포착해내는 것은 과거는 물론 현재, 미래적 의미에서의 한국 정치학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토대를 다지는 데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萬國公法』의 번역과 ‘주권’ 개념의 등장

1) 19세기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와 문명기준의 역전

한반도가 속해있는 한자문명권은 역사적으로 고유한 정치적, 사회적 경험과 문명의식, 가치관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해왔다. 그런 만큼 중화(中華)질서 혹은 천하(天下)질서 등으로 흔히 지칭되는 이 지역의 문명질서는 서구의 근대국제질서와는 여러모로 다른 성격을 견지하고 있었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리고 중화질서에서 하나의 행위주체로서 국가가 갖는 의미도,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서구 근대국제질서에서 나타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삶을 영위하는 방식도, 지향하는 가치나 세계관도 서구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중화문명이 서구문명과는 다른 문명권에 속한 만큼 서로 다른 ‘문명기준(standard of civilization)’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른바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은 중화질서를 현실적으로 지속시켜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효과적인 제도로써 기능하고 있었다. 문명과 문화의 중심으로 간주되는 중국에 주변국들은 정해진 방식으로 조공을 드렸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우수한 문물과 아울러 문명기준을 제공하며 주변국의 군주를 책봉하는 예(禮)를 갖추었다. 이러한 제도는 대체로 중국과 주변국 양측의 정치세력에게 정치적 권위와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한계 내에서 국가 간의 교역관계를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조선 역시 중국에 대해 전통적인 이념과 예의(禮義)에 근거해서 상호작용을 해왔다. 조선의 사대부나 유학자들의 의식 속에서 중화질서에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형태로 참여한다고 하는 문제는,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 안에 편입됨으로써 대외적인 안보와 대내적인 안정을 구가한다는 현실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중화문명을 기준으로 삼아 보편적인 문명국가, 문화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19세기 중화질서에 존재하던 나라들은 근대국제질서라는 상이한 대외질서관념과

3) 한국에서 이루어진 주권에 관한 개념사적인 연구로는 정용화, “근대한국의 주권 개념의 수용과 적용”, 『세계정치』25집 1호,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2004); 박상섭, 『국가, 주권』(소화, 2008); 신옥희, “근대한국의 주권 개념”, 하영선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창비, 2009); 강상규,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주권’과 ‘국제’ 개념의 탄생”,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다중거울』(2012);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17) 등이 존재한다.

만나게 된다. 전통적인 중화질서는 전 세계로 팽창하기 시작한 유럽 열강에 의해 동요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바로 아편전쟁은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일컬어지는 서구 제국주의의 물리적 공세가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이후 아편전쟁으로 인해 체결한 난징조약(1842)은 서구제국과의 불평등조약의 원형이 되었고 이후 거듭되는 전쟁에 따라 텐진조약(1858)과 베이징조약(1860)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당대의 일본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의 표현을 빌면, 이 시대는 ‘마치 뜨거운 불과 차디찬 물이 만나는 것과 같고’, ‘한 몸으로 두 인생을 겪는 것과 같은’ 충격과 위기, 거대한 변동의 시대였던 것이다.⁴⁾

환언하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19세기는 상이한 문명 곧 ‘동서문명’의 충돌이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왕의 고유한 패러다임을 밀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화문명권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문명기준이 새로운 문명기준에 의해 전복되는 과정이자, ‘문명 기준’이 완전히 ‘역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주권이라는 새로운 국가형식의 탄생

서구의 근대 국제질서는 유럽이라는 특정한 사회에서 형성된 질서체계로서 기존의 다른 질서와는 구별되는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었다. 유럽의 근대 국제체제는 정치권력들이 대외적으로는 이슬람 문명권을 타자화(他者化)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중세유럽의 교황과 같은 보편화된 권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즉 자신의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체를 부정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독립적이고 경쟁적으로 싸우고 공존하는 가운데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요컨대 유럽의 근대 국제질서는 몇 개의 강국과 다수의 군소(群小)국가 간의 ‘경쟁적 공존’이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서 성립해 나갔던 것이다.

유럽 근대 국제질서의 주요한 특성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구에 나타난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은 과거의 중세국가와는 달리 피아를 명확하게 가르는 선(線)개념으로 표현된 ‘영토’ 내에서 단일하고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비교적 협소한 유럽권역 내부에서 서로 국경을 접하며 대치하게 되면서 무력으로 우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항시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독립, 자국의 국가이익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의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가 군주에게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방법과 그 정당성을 역설하는 『군주론』(1513)을 내놓은 것도 이처럼 유럽에서 근대국가가 태동하던 역사적 문맥에서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위에서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갖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권’(Souveraineté, Souveränität, Sovereign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국가의 속성으로 등장하여 서서히 정착되어가게 된다. 주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프랑스의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의 저작인 『국가론』(1576)에서부터였다.⁵⁾

4) 福澤諭吉, 「緒言」, 『文明論之概略』(東京: 岩波文庫, 1995), pp.10-12.

5) 장 보댕과 그의 주권론에 관해서는 장 보댕, 임승휘 옮김, 『국가론』(책세상, 2005); 박상섭, 『국가, 주권』(소화, 2008)을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종교전쟁인 30년 전쟁(1618-1648)이후 성립한 이른바 ‘웨스트팔리아체제’는 유럽의 국가들 사이의 질서가 로마 교황이나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대표되던 중세적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주권’국가들 간의 근대 국제체제로 넘어가는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주권’국가 들의 탄생과 근대 국제체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간과해서 안 될 사실중의 하나는 서구 근대국가들이 대내적으로는 군주의 위신과 국력을 과시하여 국내의 모든 계급과 모든 계층의 ‘강렬한 충성심’을 환기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부(國富)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영토의 확장과 식민지정착을 추구하면서 가장 선호했던 정책이 다름 아닌 바로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전쟁이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지난 4-5세기 동안 대규모의 전쟁과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국제적 협약들이 유럽식 근대국가체제 - 국제정치적 의미와 국내체제 양면 모두에 걸쳐 -의 모습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30년 전쟁과 웨스트팔리아조약(Treaty of Westphalia), 스페인 왕위계승전쟁과 유트레히트 조약(Treaty of Utrecht), 나폴레옹 전쟁과 비엔나 회의(The Congress of Vienna), 1차 대전과 베르사이유 조약(the Treaty of Versailles), 2차 대전과 얄타협정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들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들이 전쟁을 만들어 냈지만 동시에 바로 그 전쟁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국가들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⁶⁾

유럽에서 계속되는 전쟁은 ‘주권’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하는 국제질서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무질서한지를 명백히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대외적으로 배타적 독립성을 지닌 ‘주권’ 국가 간의 국제질서는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전시나 평시에 이들 국가 간의 관계에 규칙과 질서를 부여하려는 모색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대적 의미의 ‘국제법(law of nations)’의 윤곽이 점차 명료해지게 되는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나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1632-1694), 바텔(Emmerich de Vattel, 1714-1767) 등에 의해 결실을 보게 되면서부터였다.

원래 근대유럽의 기독교문명의 소산으로서 기독교 문명권내의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려는 의도에서 형성되어가던 국제법은 다른 문명권의 국가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유럽문명국만을 국제법의 주체로서 상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름아닌 유럽문명의 세계지배라는 역사적 상황과 맞물린 것이었다. 기독교 문명국 간의 논리가 형식적으로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이행이라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상, 유럽문명국과 이질적인 문명국가간의 관계는 법적 무질서의 상태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이질적인 문명세계는 다른 ‘문명기준’에 입각해 바라보게

6) 박상섭,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근대국가 형성기 유럽의 군사와 정치”, 『정경세계』(국제사회과학학술연구소), pp.287-288; 전쟁과의 관련성 속에서 근대국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근대 관료제도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에 관해서는 “근대 관료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는 권력정치에 의해 규정된 상비군(常備軍) 창설의 필요성과 군사기구와 관련된 공공재정의 발전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다”는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30)의 논의와 아울러 “모든 국가조직은 원래 전쟁을 위한 군사조직이었다”는 오토 힌체(Otto Hintze, 1861-1940)의 언급만을 상기해두고 넘어간다.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Gü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d.(Berkeley, Los angels and London: Bedminster, 1968), p.972; Otto Hinz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in Felix Gilbert(ed.),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181.

되면 ‘야만’에 다름 아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 국제법이 비유럽문명권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미합중국의 탄생은 유럽 기독교문명의 계승자로서 특별히 유럽국가의 지리적 확대에 간주되었다. 그리고 ‘국제’ 사회(Family of Nations)의 일원 - 국제법적으로는 국제법적 주체-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기왕의 종교적인 요소를 대신하여 ‘문명’이라는 자격요건이 요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국제기준’ 혹은 ‘문명국 표준주의’가 거론되었으며, 결국 문명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구미국가에 의해 판단되어진 국가는 국제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로서의 ‘승인(recognition)’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대적 의미에서의 주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서구권 국가들은 서구의 문명기준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갖추었다고 구미 열강에 의해 판단되어지기 전에는 국제법의 영역 ‘밖’에 놓이게 되며, ‘문명의 신성한 의무’라는 미명하에 서구 문명국가의 ‘보호’ 대상으로 전락하기 십상이었다.⁷⁾

예컨대 19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양국가와 맺은 조약이 예외 없이 불평등조약이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명적 요소의 미비라는 명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문명국가의 비서구권에 대한 포섭과정은 스스로를 ‘보편’이자 ‘문명기준’으로 인식해가는 과정인 동시에 그것을 비서구권에게 인식시켜가는 과정이었다.⁸⁾ 이 과정에서 되었으며 차별과 배제의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오리엔탈리즘이 재생산되고 확산되었음은 따로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근대 국제질서체제가 형성되는 데는 이른바 ‘물적 토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사의 성립이란 유럽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과 병행해서 진행된 것이었다. 대외확장을 촉구한 요인이 성장해가는 ‘자본(資本)’이라 한다면, 신흥 자본가들의 해외에서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제법규의 존재는 그만큼 필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서구 근대국가의 발전에 따라 경제적 부와 군사력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밀착되어 갔으며, 신흥자본가 세력의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제법’과 그것을 물리적으로 지원해줄 군사력의 존재는 그만큼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유럽의 근대국가들은 유럽 내부에서는 ‘주권국가’ 간의 수평적이고 독립적이며 대등한 국제관계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지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비서구지역에서는 ‘제국’의 모습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3) 만국공법에 등장한 주권 관련 용어들

아편전쟁은 서세동점으로 일컬어지는 서구 제국주의의 물리적 공세가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그리고 장구한 역사위에 구축된 중화질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편전쟁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대한 전환’의 양상을 예고하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19세기 한중일 삼국이 거대한 전환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자문명권에 번역되어 등장한 것이 바로『만국공법』

7) 국제법의 문명적 편견에 대해서는 Schwarzenberger, Georg,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Law", *Current Legal Problems*, Vol.8(London: Stevens & Sons Limited, 1955); 筒井若水, "現代國際法における文明の地位", 『國際法外交雜誌』 66卷(1967); Gerrit W. Gong,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Oxford: Clarendon Press, 1984);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禮와 서양 公法』 (나남, 1997)

8) 강상규·이혜정, "근대 국제정치질서와 한국의 만남",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2007)

(1864)이라는 서적이었다. 이 책은 외세의 압력이 얹힌 위기의 현장마다 예외 없이 나타났다. 오늘날의 국제법에 해당하는 이 용어는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丁騷良, 1827-1916)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당시의 저명한 국제법 관련서적을 한자 문명권에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번역서의 제목으로 처음 등장했다.⁹⁾ 하지만 이 용어에는 단지 오늘날의 국제법이라는 차원으로 치환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이미 근대국제질서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느껴지는 국제법과, 19세기 상이한 대외질서관념 간에 각 축이 벌어지던 동아시아 국가들 앞에 등장한 만국공법 사이에는 매우 다른 차원의 간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동아시아의 문명사적 전환기라는 상황에서 근대국가 간 질서를 상징하는 만국공법은 서구와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불평등 조약의 체결이라는 새로운 위기의 접점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sovvereign state)라는 ‘새로운 국가형식’과 함께 조약체제(treaty system)라는 ‘새로운 국가 간의 교제 및 교섭방식’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간과되어 온 것과는 달리 대단히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19세기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주권’ 개념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만국공법』이 핵심적인 매개 고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주권 개념과 관련된 심화된 논의를 위해 휘튼의 저작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와 마틴의 『만국공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직접 살펴보기로 하자. [표1]은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와 마틴 번역본 『만국공법』(1864)의 대목차를 비교하는 표이다. 여기에 1882년 일본 사법성의 지시로 휘튼의 영어원문을 직접 완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오오츠키 세츠조(大築拙藏)의 『휘튼씨 만국공법(惠頓氏萬國公法)』의 대목차도 함께 비교해 보았다. 목차에서 드러나듯, 휘튼의 원본은 4부로 되어있으며, 『만국공법』은 총 4권으로 되어있다. 그중 1권은 만국공법의 정의(定義)와 연원(淵源), 그리고 주체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1권 2장에서는 ‘주권’ 국가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권은 국가의 기본권, 3권은 평시(平時)국제법, 4권은 전시(戰時)국제법을 다룬다.

[표1]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와 중국/ 일본의 번역본 목차 비교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55) 목차	마틴 번역본 『萬國公法』(1864) 목차 大築拙藏, 『惠頓氏萬國公法』(1882) 목차
Part I. Definition, Sources, An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第一卷 釋公法之義明其本源題其大旨 第一編 제목 부분이 생략됨
Ch.1. Definition and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Ch.2. Nations and Sovereign States	第一章 釋義明源 第二章 論邦國自治自主之權 第一章 公法ノ辭義淵源及ヒ其要旨ヲ論ス 第二章 邦國及ヒ自主國ノ論
Part II. Absolute International Rights of States	第二卷 論諸國自然之權 第二編 各國固有ノ權利ヲ論ス

9) ‘만국공법’이란 미국의 국제법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헨리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국제법 서적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을 중국에 와있던 선교사 마틴이 번역하여 동문관(同文館)에서 『만국공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1864년)하게 되면서 한자문명권에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이다. 이후 이 용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반세기 남짓 생명력을 유지하고 사용되었다.

Ch.1. Rights of Self-preservation and Independence	第一章 論其自護自主之權
Ch.2. Rights of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	第二章 論制定法律之權
Ch.3. Rights of Equality	第三章 論諸國平行之權
Ch.4. Rights of Property	第四章 論各國掌物之權
Part III. International Rights of States in Their Pacific Relations	第一章 各國自護自主ノ權利
	第二章 法律制定ノ權ヲ論ス
	第三章 諸國平行ノ權
	第四章 各國所有ノ權
	第三卷 論諸國平時往來之權
	第三編 平時各國交際ノ權利
Ch.1. Rights of Legation	第一章 論通使
Ch.2. Rights of Negotiation and Treaties	第二章 論商議立約之權
	第一章 公使往來ノ權
	第二章 商議及ビ約定ノ權利
Part IV. International Rights of States in Their Hostile Relations	第四卷 論交戰條規
	第四編 敵國ニ對シテ有スル權利
Ch.1. Commencement of War and its Immediate Effects	第一章 論戰始
Ch.2. Rights of War as between Enemies	第二章 論敵國交戰之權
Ch.3. Rights of War as to Neutrals	第三章 論戰時局外之權
Ch.4. Treaty of Peace	第四章 論和約章程
	第一章 始戰ノ論及ビ交戰ニ因テ直チニ生スル所ノ成果
	第二章 敵國ニ對スル交戰權利ノ論
	第三章 中立國權利ノ論
	第四章 和約ノ論

우선 휘튼이 주권(sovereignty)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요약하면, 주권은 특정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최고 권력으로서 ‘대내적 주권(internal sovereignty)’과 ‘대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으로 구분된다. 대내적 주권은 헌법이나 공동체의 근본 법률에 의해, 한 국가의 인민(people)에 내재하거나 지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헌법과 같은 대내적 공법(internal public law)에 의해 규제된다. 반면 대외적 주권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나 기타 정치체와의 관계에서 갖는 독립에 관련되며, 국제법(international law)과 같은 대외적 공법(external public law)에 의해 규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⁰⁾

그러면 마틴의 번역본인 『만국공법』에서는 sovereignty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하자. 우선 [표1]을 보게 되면 ‘sovereign state’의 경우, 의외로 ‘주권(主權)’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자주지권(自治自主之權)’이라고 번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츠키 세츠조의 『휘튼씨 만국공법(惠頓氏萬國公法)』(1882년)에서도 ‘주권국가’가 아니

10) 휘튼의 원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Sovereignty defined.> Sovereignty is the supreme power by which any State is governed. This supreme power may be exercised either internally or externally. **[Internal sovereignty]** Internal sovereignty is that which is inherent in the people of any state, or vested in its ruler, by its municipal constitution or fundamental laws. This is the object of what has been called internal public law, *droit public interne*, but which may more properly be termed constitutional law. **[External sovereignty]** External sovereignty consists in the independence of one political society, in respect to all other political societies. It is by the exercise of this branch of sovereignty tha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one political society are maintained, in peace and in war, with all other political societies. The law by which it is regulated has, therefore, been called external public law, *droit public externe*, but may more properly be termed international law. Wheaton, Henry,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London & Philadelphia, 1836)의 6th edition(Little, Brown & Company, Boston, 1855), p.29.

라 ‘자주국’이라고 번역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¹¹⁾ 실제로 휘튼의 원저와 마틴의 번역본을 비교 대조하면서 살펴보면, sovereignty라는 용어가 주권(主權), 자치자주지권(自治自主之權), 자주지권(自主之權), 관할지권(管轄之權), 국권(國權)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한역(漢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하나의 용어로 번역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한 고민의 산물인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sovereignty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매우 낮은 하나의 용어만을 사용하였다면, 이 개념은 한자문명권의 수용자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번역자 마틴이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번역어로 채택한 주권이라는 하는 용어가 한자문명권에서 그다지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군주 혹은 황제의 권력’ 또는 ‘직권을 가진 관리’를 의미하는 말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기에¹²⁾ 이 용어를 번역어로 채택하였을 때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문명권에 사용되던 친화적인 용어들을 문맥에 따라 동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overeignty에 해당하는 번역어 중에서 ‘주권’이라는 용어가 『만국공법』의 주요한 장면마다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개장 37개절로 구성되어있는 1권내에서만 ‘주권’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40여 차례나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은 번역자 마틴의 의도를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추정해보면, 번역자 마틴은 ‘자주지권’을 비롯한 한자문명권에 익숙한 표현들을 통해 sovereignty를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기존의 용어와는 차별성을 담지하는 새로운 개념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어 쓴 것이라고 판단된다.¹³⁾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마틴의 번역본에서는 sovereignty와 관련하여 ‘독립(獨立)’이

11) “幕末의 2대 베스트셀러는 뭐니 뭐니 해도 후쿠자와 유키치의 『西洋事情』과 휘튼의 『萬國公法』이다.”라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지적이나, “지금까지 나라 문을 닫고 살아오던 우리 국민은 처음 각국의 교통에도 條規가 있다는 것을 알아 識者들은 다투어 이 책을 읽는 모습이였다.”는 오시다케 타케시(尾佐竹猛)의 언급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만국공법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몰입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丸山眞男, 加藤周一, 『翻譯と日本の近代』(岩波, 1998), p.119; 尾佐竹猛, 『近世日本の國際觀念の發達』(共立社, 1932), p.34 다음의 [표2]는 일본에 휘튼의 국제법 저서가 어떻게 소개 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2] <明治維新전후 일본에 소개된 휘튼의 국제법 저서에 관한 번역서 一覽>

刊行年度	翻譯書名	翻譯者	特 記 事 項
1865年	『萬國公法』	마틴	和裝6冊
1868年	『萬國公法釋義』	堤穀士志	4冊, 마틴의 漢譯의 日譯, 原文의 제2권 제2장 제3절까지
	『交道起源 一名 萬國公法全書一號』	瓜生三寅	和裝3冊, 휘튼의 英文原著를 직접 翻譯, 제1권 제1장 제12절까지
1870年	『和譯萬國公法』	重野安繹	和裝3冊, 마틴의 漢譯原文과 日譯을 함께 수록. 제1권 제2장까지
1875年	『萬國公法』 (始戰論)	大築拙藏	和裝2冊, 司法省 메이지寮의 명령에 의한 것, 휘튼의 英文原著를 직접 번역한 것으로 제4권제1장의 전쟁개시 부분을 번역한 것. 이무렵 臺灣정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출판된 것
1876年	『萬國公法蠡管』	高谷龍注	和裝8冊, 마틴의 漢譯을 싣고 필요에 따라 漢文에 註釋을 붙인 것
1882年	『惠頓氏萬國公法』	大築拙藏	洋裝1冊, 司法省의 명령에 의해 휘튼의 英文 原著를 직접 完譯한 것

12) 진관타오, 류칭평 지음, 양일모, 송인재, 한지은, 강중기, 이상돈 옮김, 『관념사란 무엇인가』 1(푸른역사, 2010), p.386.

13) 하지만 번역자 마틴의 의도와 달리, 이처럼 대내적인 최고성과 배타적인 독립성을 기본특징으로 하는 ‘주권’이라는 개념과 아울러 국가 ‘평등’ 관념에 근거한 주권국가들 간의 대외질서관념을 중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패러다임을 중국이 수용한다는 것은 ‘제국으로서의 중화’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기왕의 중화질서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강상규, 「중국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 25집(2006.7) 참조.

라는 번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국공법』1권에서 독립이란 어휘는 단 1회만 등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오오츠키 세츠조의 번역본(1882년)을 검토해보면 ‘주권’이라는 표현을 58회나 사용하고 ‘자주’라는 표현을 48회, ‘독립’이라는 표현 역시 30차례나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주 독립’ 혹은 ‘독립 자주’와 같이 두 개의 말을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두 개의 『만국공법』서적이 아닌 1870년에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1827-1910)가 마틴의 한역원본에 일본어 번역을 함께 수록한 『和譯萬國公法』을 검토해보더라도 ‘주권’이란 표현 대신에 ‘자주’, ‘자립권’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후 한자문명권에 ‘주권’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확고하게 정착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sovereignty를 지칭하는 용어가 주권 이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그렇게 된 경위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예컨대 19세기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를 살았던 조선의 위정자들이나 지식인의 정치적 언어와 그들의 인식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한편 ‘international’이라는 용어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1]의 목차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마틴은 ‘international’을 대개 ‘제국(諸國)’이라고 번역하였다. 이외에도 마틴은 international을 ‘천하(天下)’라거나 ‘만국(萬國)’과 같은 용어를 빌어 설명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에게 익숙한 ‘국제(國際)’라는 용어는 『만국공법』이나 전술한 다른 두 권의 공법서적에서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애초에 한자문명권에 ‘국제(國際)’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마틴이 이 용어를 창안해내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작 ‘국제(國際)’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제’라는 용어가 한자문명권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미즈쿠리 린쇼(箕作麟祥, 1846-1897)가 울지(Theodor D. Woolsey)의 저서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하면서 ‘국제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창안해내면서부터였다. 미즈쿠리는 울지의 만국공법 관련저서-[표3]에서 보듯이 이 책은 마틴에 의해서 1877년 『공법편람』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됨-를 번역하여 1873년에 6책(冊)으로 된 『국제법: 일명 만국공법(國際法 一名 萬國公法)』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된다. 한자문명권에서 ‘국제법’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면서 비로소 ‘국제’라는 말도 최초로 창안되어 사용되었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⁴⁾

그리고 ‘만국공법’이라는 번역어도 흥미롭다. 책의 제목으로서는 international law의 자연법적인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만국공법이라고 번역했지만, 목차에서는 그냥 ‘공법(公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international이라는 개념을 ‘일국(一國)’이 아닌 ‘여러 나라 간(間)’이라는 점에서 공(公)이라고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마틴의 『만국공법』의 1권을 살펴보면, 만국공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책의 제목과 서문, 그리고 범례에서 뿐이고, 정작 본문 중에서는 모두 ‘공법’이라는 용어로 번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에서 보듯이 마틴이 번역하여 간행한 만국공법 관련 서적들의 이름이 『공법편람』『공법회통』과 같이 그냥 ‘공법’으로 나오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14) 국제개념의 등장과 관해서는, 강상규,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주권’과 ‘국제’개념의 탄생”,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다중거울』(2012) 참조.

[표3] 중국의 동문관에서 마틴이 한문으로 번역하여 간행한 만국공법 관련서적

원 저 자	번역자	원서 제목(초판) 및 번역에 이용된 판본	번역본제목	간행년도
Henry Wheaton (惠頓, 1785-1848)	W.A.P.Martin	<i>Elements of International Law</i> (1836)/1855년 제6판	萬國公法	1864
Theodor D.Woolsey (吳爾璽, 1801-1899)		<i>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i> (1860)/1874년 제4판	公法便覽	1877
Johann C. Bluntschli (步倫, 1808-1881)		<i>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i> (1868)/프랑스어 판본	公法會通	1880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국제’라는 개념 또한 주권국가라는 새로운 국가패러다임을 접하게 된 중화문명권의 국가 그중에서도 일본이 ‘주권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기존의 언어와는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번역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국제’ 개념에는 근대국가 ‘간’의 독립적이고 상호병렬적이며 그런 만큼 ‘무정부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국제’라는 용어가 중국에 수용된 것은 청일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다.¹⁶⁾

3. 조선의 근대국제무대 진입모색과 새로운 대내외 위기들

1) 국왕과 개혁세력의 대외정세인식과 국제무대 진입노력

주권 개념이 조선에 어떻게 ‘변용’되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 중화 문명권의 정치적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화질서의 변동이 아편전쟁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서 비롯되었다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 변동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라는 일본 국내의 정치변동을 기점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서양의 충격(western impact)’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의 여파가 이제 동아시아 문명권 내부로 깊게 퍼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지금까지 언급한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요컨대 동아시아 문명권 내부의 국가 ‘간’ 관계도 기왕의 중화질서하의 ‘조공 책봉’이나 ‘사대교린’과 같은 의례적인 관계로부터 근대 ‘국제’질서의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로 변환하게 되

15) 일본에서 미즈쿠리 린쇼가 국제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후에도 만국공법이라는 용어는 계속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다 1881년 동경대학에서 국제법학과를 설치한 후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서서히 정착되는 과정을 밝게 된다. 하지만 보편원리로서의 공법이 가지는 이미지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만국공법, 만국교제법, 외국교제공법 천하의 공법 등등의 용어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앞서 소개한 오오츠키 세츠조의 1882년도 번역판『휘튼씨 만국공법(惠頓氏萬國公法)』에도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16) 최근 중국측 연구에 의하면, ‘국제’라는 용어가 사용된 최초의 기록은 Kang Youwei(康有為)가 1897년『일본서목지(日本書目志)』에 ‘국제법’을 거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1901년 이후 ‘국제법’이라는 용어의 사용빈도가 ‘만국공법’이라는 말을 넘어서게 되며, 1905년 이후에는 만국공법이라는 용어사용 빈도를 월등하게 압도하게 된다. 진관타오, 류칭평 지음, 양일모, 송인재, 한지은, 강중기, 이상돈 옮김, 『관념사란 무엇인가』 2(푸른역사, 2010), pp.255-257.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70년대에 나타난 청과 일본 간에 조약관계의 성립(1871), 일본과 조선 간의 조약 체결(1876), 그리고 유구(琉球)왕국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병합(1879) 등의 일련의 사건은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가 본격적으로 변동되기 시작되었으며, 중화질서의 주변부에 위치하던 일본이 이러한 정치변동을 주도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유구병합 과정은 중국 측의 위기의식을 급격하게 심화시켜 놓았고, 중국의 위기감의 심화는 조선에 대한 간섭과 압박의 심화, 즉 기존의 전통적인 조청(朝淸)관계의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본의 유구병합이 마무리되고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갈등의 핵심 이슈는 이른바 ‘조선문제’로 이전되어 나타나게 된다.¹⁷⁾

이처럼 조선의 대외적 지위라는 문제가 긴박하게 제기되는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만국공법’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1879년 조선의 개화승 이동인(1849-1881)이 개화파 김옥균(1851-1894), 박영효(1861-1939)의 경제적인 후원과 일본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의 부산별원의 협력을 통해 몰래 일본에 밀입국(1879년 9월)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동인의 밀입국이유가 ‘열국(列國)의 공법(公法)’ 곧 만국공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되어있어, 1876년 일본과의 조약을 전후하여 세계의 변화에 주목한 소수의 개혁지향 세력들이 무엇보다 주목한 것이 기존의 중화질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다루는 만국공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이들 개화세력이 이처럼 만국공법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다면 만국공법의 핵심개념인 sovereignty의 번역어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을 리 없다. 그렇다면 왜 이들 역시 ‘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

이 문제에 관해 이해하려면, 마틴의 번역본을 비롯한 공법서적들이 sovereignty의 번역어로서 주권(主權)이외에도 자치자주지권(自治自主之權), 자주지권(自主之權), 관할지권(管轄之權), 국권(國權)등 다양한 용어들이 문맥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다는 앞서 지적한 내용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개혁세력이나 지식인 그룹은 『만국공법』을 접하면서, 공법질서 하에서의 국가의 권리를 ‘주권’이라는 생소한 용어보다는 당대인들에게 훨씬 익숙한 ‘자치자주지권’ 혹은 ‘자주지권’이라는 용어로 이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새롭게 변화된 내용을 ‘자주’라는 기존의 언어를 통해 담아냄으로써 난세의 혼돈이 증가하고 급격하게 ‘문명기준이 역전’되는 당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환언하면, 조선 지식인들이 만국공법에 나온 주권국가의 권리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자주자(自主者)’라는 개념, 즉 “자기생각대로 행하여 자기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大漢和事典』卷9)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이를 만국공법 질서에 참여한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믿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당시 국왕 고종이 조선이 만국공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어떤 식으로든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게 되는 계기로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여기서는 조일간의 수호조규에 관한 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1876년 1월)에서 시작되어 1881년 2월까지 17회에 걸쳐 오고간

17) 이에 관해서는 강상규, “일본의 유구병합과 ‘조선문제’의 부상”,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논형, 2008) 참조.

18) “東仁ハ元來僧侶ナレトモ、居常愛國護法ノ神經家ニテ、挽近朝鮮國々運日々ニ衰頽シ、宗教ハ既ニ地ヲ拂ントス。此時革命黨朴泳孝、金玉均等國家ノ衰運ヲ奮慨シ、大ニ刷新セントス。又東仁モ意見符節セシユエ、朴泳孝、金玉均兩氏ヨリ東仁ヲ引見シ、重用スルニ至レリ。故ニ列國ノ公法等ヲ知ラン爲メニ我宗門ニ歸入シテ、日本ヘ渡ン事ヲ以テセリ。東仁ハ朴泳孝ヨリ送レル純金ノ丸棒四本、餘レニ示シ、是レヲ路費トシテ渡ント云ヘリ。(중략) 是レ即チ韓國改革黨日本ヘ渡海スル始トス。” 조동걸, 「奧村의 朝鮮國布教日誌」, 『한국학논총』 7(국민대학교, 1985), p.270; 萩原延壽, 『遠い崖：アーネスト・サトウ日記抄, 14卷 = 離日』(東京：岩波書店, 2001), pp.82-83. (강조는 필자)

조선의 이유원(1814-1891)과 청의 리홍장(李鴻章, 1823-1901) 간의 서신 교환을 생각해보기로 하자.¹⁹⁾ 그러나 고종은 수년전 조일 수호조규 이래 비판 여론에 둘러싸여 기존의 배외정책을 본격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설득력 있는 논리와 정치적 계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의 배외정책에 대한 고종의 변화 의지가 현실정치의 장에서 구체적인 일련의 개혁적인 정책의 형태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책략』이 전래된 직후인 1880년 9월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책략』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고종은 한편으로는 『조선책략』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정책전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미수교 방침을 확정하고 비밀리에 이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²⁰⁾ 1880년 12월 조선 정부는 ‘사대, 교린, 군무, 변정 등과 관련된 일을 전담할 새로운 아문(衙門)’을 마련하라는 고종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국가기관으로서 통리기무아문(이하 통리아문으로 약칭)을 설치한다. 통리아문은 고종의 주도하에 조선 정부가 ‘배외(排外)’와 ‘척사(斥邪)’정책을 기조로 하던 기왕의 방침을 전환하고 외국과의 교섭 및 통상, 군사력의 강구에 관한 일을 전담케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기구였으며 동시에 고종의 정치적 구상이 깊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고종은 조선이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19) 사실상 조선 정부와 청의 실력자 리홍장이, 사적인 서신교환이라는 비공식적인 형식과 루트를 통해, 조선의 대외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은, 기존의 朝淸관계에 있어서 조선의 내외정에 간섭하지 않았던 관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리홍장과 이유원의 서신교환에 관해서는, 原田環, “朝・中‘兩截體制’成立前史: 李裕元と李鴻章の書簡を通して”(1981), 『朝鮮の開國と近代化』(1997)를 참고할 수 있다. 리홍장은 유구병합(1879년 4월) 직후에 이유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화이론적 명분론이 아닌 ‘만국공법’에 의거하여 서양국가와의 조약관계를 강력히 권유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리홍장이 조선이 만국공법 질서로 완전히 귀속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청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 평등 관념에 기반한 만국공법 질서의 전면적인 수용이란 결국 기왕의 중국적 세계질서의 해체를 의미하는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홍장의 의도는 전략적 요충지인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어디까지나 이이제이(以夷制夷)에 의한 ‘현상유치책’의 차원에서 만국공법을 활용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중화질서와 만국공법 질서의 절충과 동거를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일 년 후 조선에 전해진 『조선책략』에서 ‘친중국’과 만국공법에 의거한 미국과의 조약체결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사상적 맥락이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논형, 2008)를 참고할 수 있다.

20) 『조선책략』에서 만국공법에 관한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조선책략』을 통해 황준헌(黃遵憲, 1848-1905)은 서구 열강 간에는 ‘이른바 군세(오늘날의 세력균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서양의 공법(公法)은 남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면서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조약을 통해 만국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 조선이 무사할 때 조약을 맺어야 공평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만국공법의 효과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국공법에 관한 중요성은 수신사 김홍집(1842-1896)이 가지고 온 또 다른 책 『이언(易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언』의 제1편인 「공법을 논함(論公法)」에서는 유럽제국들의 관계를 규제하고 화목케 하는 것이 만국공법 때문이며, 중국도 여러 국가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들과 대국하려면 만국공법을 익혀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상규, “고종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한국사 시민강좌』 19집(1996); 하지만 당시의 현실정치의 장에서 ‘조선책략’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책략』의 내용 분석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연행사절을 통해 수많은 외국서적들이 유입되고 있었지만, 당시의 전국적인 배외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사상적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적인 소통의 여지가 거의 차단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감안해볼 때, 『조선책략』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파문은 단순히 서적의 파격적인 내용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조선책략』은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한 정치적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는 오히려 『조선책략』의 전략적 가치를 발견한 고종이 이를 현실정치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쟁점화 시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론화시킴으로써 기존의 배외정책을 돌파하는 하나의 구체적 계기로 삼으려 했던 측면을 간과하고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친중국(親中國)’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리홍장의 서한 등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²¹⁾ 청국이 조선의 내치와 외교를 존중하는 입장[貴國政教禁令悉由自主 此等大事豈我輩所可干預]을 견지하면서 호혜적인 관계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고종은 이것이 한편으로 청국의 전략적 태도임을 의식하면서도,²²⁾ 현실적으로 청국을 일종의 후원자로 삼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양국가들과의 조약체결을 추진하고 청국과의 관계도 만국공법 질서에 따라 재정립해나가며 대내적으로 시급한 개화 자강정책에 착수하려고 하였다.

2) 만국공법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들

주권국가들이 활동하는 근대국제질서에서 비서구 국가들이 주권국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왕의 주권국가, 사실상 구미국가들과의 조약을 통한 승인과정을 거쳐 자신의 영토 안에서 최고의 권위체임을 인정받고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국가임을 공인받아야 했다. 그래야 주권국가로서 국제무대의 멤버십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틴의 『만국공법』에서는 ‘주권’이나 ‘승인’의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하자. 『만국공법』의 제1권 제2장「나라의 자치와 자주권에 관해 논함(論邦國自治自主之權)」에 따르면, 우선 주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²³⁾

“나라를 다스리는 상위 권력을 일컬어 주권(主權)이라고 하고 있다. 이 상위 권력인 ‘주권’은 국내 외적으로 행사되어지는데, 국내에서 행해지면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 백성(民)에 속하거나, 군주에 속하거나 한다. 이에 관해 논하고 있는 것을 일찍이 내공법(內公法)이라고 하였는데 국법이라고 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주권’이 외부인 국외에서 행해지면, 곧 본국이 자주(自主)하여 타국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각국이 평시나 전시상태에 있거나, 혹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모두 이 권리를 근거로 하니, 이를 논하여 일찍이 외공법(外公法)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공법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²⁴⁾

이와 아울러 주권국가의 ‘승인(recognition)’에 관해서는,

“만일 새로 성립된 국가가 여러 국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이른바 승인이란 그 나라가 자립, 자주국임을 인정받고 서로 더불어 왕래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대한 판정여부는 여러 국가의 의지에 의해 그 내국법이나 군주 등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일단 국가로 승인되면 그 내국법이나 집권자 등에 관해서 간섭받지 아니하고, 민간에 분쟁이 있을지라도 공법은 내란이 극히 심해지거나 외적이 정복하여 그 나라의 주권이 전멸될 때까지 그 나라가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²⁵⁾

21) 『고종실록』16년 7월 9일(辛巳條); 『용호한록』4권, 23책, 「直隸總督文淵閣大學士 李鴻章抵嶺山李相國書」; 『清季中日韓關係史料』2, p.368, 문서번호 309-2.

22) 이러한 관점에서 김홍집의 귀국보고서의 대화를 곰곰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승정원일기』 고종 17년 8월 28일, 酉時). 고종: 청사(淸使)가 러시아 문제로 근심하며, 우리나라 일에 힘써 서로 도와나가려는 의지가 있던가? 김홍집: 신이 淸使를 만났을 때 몇 차례 말한 바가 모두 러시아에 관한 문제였으며,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곡하고 간곡해 마지않았습니다. 고종: 저들(중국인)이 비록 우리나라와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하자고 하지만, 이를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곧 우리도 또한 부강지술(富強之術)을 시행하는 것이 요구될 따름이다.

23) 이에 관해서는 강상규, “고종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한국사 시민강좌』 19집(1996) pp.217-219 참조.

24) <主權分內外> “治國之上權, 謂之主權, 此上權, 或行於內, 或行於外, 行於內, 則依各國之法度, 或寓於民, 或歸於君, 論此者, 嘗名之爲內公法, 但不如稱之爲國法也, 主權行於外者, 卽本國自主, 而不聽命於他國也, 各國平戰, 交際, 皆憑此權, 論此者, 嘗名之爲外公法, 俗稱公法, 卽此也.” Martin, W.A.P. 譯, 『萬國公法』(亞細亞版)第一卷二章五節, p.92.

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 규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나타난 자주국, 평등한 권리와 같은 용어는 기존의 교린관계의 언어이면서도 만국공법적, 근대적 국제관계의 언어가 교묘하게 중첩되어 섞여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석하는 일종의 ‘편의적 오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들은 당시에 조약 반대론자들과 찬성론자 간에 왜양일체론 vs. 구교회복론이라는 입장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이는 한미관계의 출발점이자, 한국이 최초로 서양국가와 맺은 조약이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1882년의 시점에서 조미조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조선-중국-미국측 삼자간의 전략적 선택이 결합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미국과의 조약은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한국근대사에서 주권, 자주와 독립의 논의가 사실상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19세기 조선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을 겪으며 전국에 척화비가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조선 조정의 일각에서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이 국왕과 측근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집요하게 진행되다 마침내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다. 당시 한반도 ‘안과 밖’의 상황은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국제관계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조선, 중국, 미국 측의 입장을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열강들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다음은 당시 조선의 국왕 고종이 미국 측에 보낸 영문으로 된 조회문의 내용이다.

조선국왕은 여기 국서를 보냅니다. 예로부터 조선은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던 국가(tributary state)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조선의 국왕은 국내외의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한 자주지권(full sovereignty)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은 이제 상호동의를 의하여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 평등을 기초(a basis of equality)로 상대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국왕은 분명히 말하건대 만국공법(international law)에 따라 본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의로써 자신의 자주지권(his own sovereign powers)을 완전히 수행할 것입니다. 조선이 청에 대해 조공국가(tributary state)로서 갖는 의무에 관해서 미국은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이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함에 있어 이러한 예비적 설명을 붙이는 것이 의무라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미국대통령 각하, 1882년 5월 15일²⁶⁾

25) <主權未失國未亡> “若新立之國，蒙諸國相認，所謂認者認其爲自立自主之國而與之往來也，入大宗與否，悉由諸國情願，或視其在內國法，或視其國之君上而定，可也，至於舊國，則其在內之國法，無論何如，執權者不拘何人，即民間有紛爭，公法視其國猶存，必待內亂既甚，或外敵征服，而致其主權全滅，始視其國爲亡矣”。Martin, W. A. P.譯, 같은 책, 第一卷 二章 五節, pp.92-93.

26) Denny, O. N., *China & Korea*(1888)pp.18-19, "His Majesty, the King of Chosen, herewith makes a communication. Chosen has been, from ancient times, a state tributary to China; yet hitherto full sovereignty has been exercised by the Kings of Chosen in all matters of internal administration and foreign relations. Chosen and the United States, in establishing now by mutual consent a treaty, are dealing with each other upon a basis of equality. The King of Chosen distinctly pledges his own sovereign powers for the complete enforcement in good faith of all the stipulations of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regards the various duties which devolve upon Chosen as a tributary state to China, with these the U.S. has no concern whatever. Having appointed envoys to negotiate a treaty, it appears to be my duty, in addition thereto, to make this preliminary declaratio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

이후 실제로 미국은 조선과의 조약을 비준하고 북경주재공사와 동격인 특명전권공사(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를 조선에 파견하게 되는데,²⁷⁾ 이때 미국 대통령의 비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대군주께서 조선은 대내 대외적인 정치문제는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교섭의 대의를 위해서도 자치권(self-control)이 있는 조선은 독립국가(independent state)로서의 여러 권리와 여러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상원의 충고와 동의를 얻어서 본인은 본조약이 제3국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권국가(sovereign nations)간의 협약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라고 인준하는 바입니다.”²⁸⁾

이러한 내용은 한국근대사의 외교현장에서 주권, 자주와 독립의 논의가 사실상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얼마 후 조선은 영국, 독일과도 조약을 체결한다.

이와 관련하여, 1882년 8월 5일 고종이 내린 교서는 이처럼 세계의 달라진 변화상에 주목하고 달라진 국제무대에 새롭게 적응하겠다는 국왕의 대외정세 인식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시사적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선은 외국과 교섭을 하지 않아 해외사정에 어두운데, 작금의 세계의 대세는 춘추열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만국병립(萬國竝立)의 시대로서,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도 만국공법 질서에 따라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고 있다. (나) 이번엔 조선이 영국, 미국, 독일 등과 평등의 원리 하에 조약을 맺은 것은 이러한 대세에 따른 것으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오로지 척화론(斥和論)으로 일관함으로써 조선이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라) 또한 서양과 공법에 입각해 조약을 맺는 것과 사교(邪敎, 여기서는 천주교)의 확산은 별개의 문제로서 조선이 이룩한 문명의 성취는 앞으로도 지켜갈 예정이다. (마) 사교(邪敎)는 배척하되 서양의 발달된 기(器)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서양의 기(器)까지 배척하게 되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약한 조선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바) 얼마 전의 양이(攘夷)사건[壬午軍亂]으로 인해 나라는 위기에 노출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등 우리만 더욱 어려운 형국에 놓이게 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 최근 맺은 외국과의 조약은 세계의 대세에 동참하는 것이니 외국인에게 친절할 것이며, 만일 외국측이 문제를 일으키면 조약에 근거하여 내가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아) 이제 외국과 선린관계에 들어감으로 전국의 모든 척화비를 없애니, 이러한 의도를 깊이 헤아리고 협력해 달라”는 것이었다.²⁹⁾(가나다 구분은 필자)

요컨대, 교서를 통해 고종은 “만국병립의 상황이 바로 세계적 대세이며, 종래의 배외정책이나 양이적(攘夷的) 관념은 조선이 세계 속에서 고립시켜 위태롭게 할뿐이다. 조선의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과 ‘이용후생의 원칙에 입각한 부강책’을 절충하여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간에 평등’한 관계에 따라 새로운 만국공법적 질서에 근거해 조선의 대외관계를 전

May 15th, 1882.”

27) McCune, G. M. & Harrison, J. A.,(eds.),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I.(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1951), p.23, No.1, Fredk. T. Frelinghuysen to Lucius H. Foote, March 9, 1883.

28) *Diplomatic Documents*, National Archives, Chester A. Arthu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His Majesty, The King of Chosen, March 14, 1883, 김원모, 『한미수교사: 조선보빙사의 미국사행편』(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33에서 재인용.; 미국측 비준서의 한문 번역본은 『舊韓國外交文書』 10권(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18-19에 수록되어있다.

29) 『承政院日記』高宗19年8月5日.

면적으로 재정립해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³⁰⁾

다음 표는 고종이 국내외의 다양한 압력 하에서 체결한 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을 표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4] 조선(대한제국을 포함)이 체결한 근대적 조약 일람

구분	조약 체결일	비준 교환일	전권대신	
			조선	상대국
일본(日)	1876.2.26.	1876.2.26.	신헌(申櫨)	黑田清隆
미국(美)	1882.5.22.	1883.5.19.	신헌(申櫨)	R. W. Shufeldt
영국(英)	1882.6.6.	비준 보류	조영하(趙寧夏)	G. Willis
	1883.11.26.	1884.4.28.	민영목(閔泳穆)	Harry Parkes
독일(獨)	1882.6.30.	비준 보류	조영하(趙寧夏)	M. von Brandt
	1883.11.26.	1884.11.18.	민영목(閔泳穆)	Ed. Zappe
러시아(露)	1884.7.7.	1885.10.4.	김병시(金炳始)	Cod. Waeber
이태리(伊)	1884.6.26.	1886.7.24.	김병시(金炳始)	Ferd de Luca
프랑스(佛)	1886.6.4.	1887.5.31.	김만식(金晩植)	F. G. Cogordan
오스트리아(奧)	1892.6.23	1893.10.5.	권재형(權在衡)	Roger de Biegeleben
청(淸)	1899.9.11.	1899.12.14.	박제순(朴齊純)	徐壽朋
벨기에(白)	1901.3.23.	1901.10.17.	박제순(朴齊純)	Leon Vincart
덴마크(丁)	1902.7.15.		유기환(兪箕煥)	A. Pavlow

『구한말조약회찬』 『구한국의교문서』를 참조하여 작성 (날짜는 양력)

3) 조선의 ‘안과 밖’에서 나타난 정치적 엇박자

세계의 변화상에 주목하고 달라진 무대에 새롭게 적응하려는 국왕과 개혁세력의 입장은 끊임없는 내부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가능한 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국왕의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야에 팽배한 뿌리 깊은 화이론적 명분론,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내려오던 강력한 왕권견제의 전통, 대원군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인해 조선의 개화 자강정책은 계속되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른바 ‘공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당시의 여론은 고종과 그를 보좌하는 세력이 추진하는 정책을 문명인을 야만인으로 만들고 5백 년 된 국가를 뒤엎는 행위로 비난하고 있었다.

요컨대 임오군란이 주로 외래와 고유의 제요소,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전통주의자들이 주도하여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갑신정변은 당시 조선의 협소한 정치공간에서 급진적인 방식으로 보다 철저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싶어 한 진보주의자들이 주도한 사건이었다. 임오군란(1882년 6월)과 갑신정변(1884년 10월)은 서로 정반대되는 방향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주도한 사건들이었지만, 타협과 조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급격한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그 과정상의 특징이나, 동아시아 질서가 변동하면서 ‘조선문제’가 첨예한 국제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던 와중에서 발생함으로써 주도세력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

30) 고종의 자주주의의 성격 및 형성과정에 관해서는 강상규, “1870-1880년대 고종의 대외관과 자주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 근대국가 수립과 한일관계』(경인문화사, 2010) 참조.

으로 공히 외세의 간섭을 불러들이고 그 간섭을 질적으로 심화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다.

개혁과 개방을 둘러싼 내부의 엇박자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가운데 대륙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인 한반도는 현상유지세력인 중국과 현상타파세력인 일본, 그리고 구미 제국주의열강에 의한 삼중압박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며 변화의 모멘텀과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다.

한편 조청(朝淸)관계의 ‘변질’은 고종을 비롯한 개혁세력들에게 ‘자주’란 사실상 ‘중국의 간섭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미로 느껴지게 하였고 이에 따라 ‘자주’라는 개념은 점차 만국공법적 개념인 ‘독립(independence)’의 의미로 전이(轉移)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갑신정변의 여파로 인한 강렬한 보수회귀의 분위기 속에서 친청(親淸)세력의 득세와 청의 조선에 대한 압박 증가, 국왕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는 리홍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었다.

韓王(=고종)은 自主에 잘못 빠져들어,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를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韓王之謬於自主, 至死不悔)³¹⁾

이후 사태전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학 농민봉기라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와 외세의 개입에 의한 탄압,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외세간의 전쟁으로 귀결되어지게 된다. 이처럼 문명사적 전환기라는 거대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끊임없는 엇박자 속에서 조선은 개혁의 타이밍을 잃고 ‘주권’ 국가 간의 근대 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고스란히 봉쇄당하는 형국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제국의 교차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등장

1) 청일전쟁과 중화질서의 붕괴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청일전쟁은 중화문명권의 문명기준이 명실상부하게 역전되었으며, 중화질서가 사실상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예의(禮義)를 중시하던 조공, 책봉질서로부터 근대 주권국가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무정부적인 속성을 근대국제질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현실 국제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권 개념이 국가의 자주와 평등을 강조하는 만큼 역설적으로 제국주의적 군사주의가 팽배하여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로 전환되는 사태로 이어질 소지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른바 근대국제질서의 이중성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한편 청일전쟁은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래 한반도에서 팽창하려는 일본세력과 이를 저지하고 조선을 실질적인 종속국으로 삼으려는 중국의 대립이 전쟁으로 비화된 사건이었다. 일본은 한반도를 중화질서에서 분리해내고 자신의 영향권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시모노세키조약의 제1조에서 전쟁 당사국 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중국은 조선의 독립을 확인하고 조공(朝貢)전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31)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卷, (1980). 문서번호 1242, p.2306.

위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청일전쟁은 역설적이지만 임오군란이후 조선을 압박해 오던 청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로서 잠시나마 숨 쉴 여유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의 일본에의 예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청일전쟁은 조선이 ‘문명개화’와 ‘자주독립’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조선의 개화정책 이후 청일전쟁까지의 시기가 기왕의 조선의 전통적인 사대교린외교와 명분상의 평등권에 입각한 근대적 외교관계가 착종되면서 이중적인 질곡의 고통을 겪었던 시기였다고 하면, 청일전쟁 이후 나타난 삼국간섭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 간의 세력균형이 질적,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과 청국의 대립을 중심축으로 전개되던 세력 균형 구조가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립구조로 전환하면서, 청국과 러시아가 접근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열강 간의 견제구조가 변화하고 있었다.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서 ‘주권’개념이 조선에서 수용된 것은 청일전쟁(1894-1895)시기에 처음 나타났다. 하지만 관견(管見)에 의하면, ‘주권’이라는 용어가 조선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한성순보』(1883년 10월~1884년 10월 무렵까지 발행)와 『한성주보』(1886년 1월~1888년 7월까지 발행) 정도인 것으로 여겨진다.³²⁾ 그리고 보다 본격적으로는 박영효가 일본에서 작성한 ‘내정개혁을 위한 건백서’(1888)와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길준은 『서유견문』의 제3편 <방국(邦國)의 권리>에서 주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라의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내적인 주권이다. 나라 안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치 및 법령은 그 정부의 입헌적인 기능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외적인 주권이다. 독립과 평등의 원리에 따라 외국과 교섭하는 일이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한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형세가 강한지 약한지, 그 나라의 시작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땅이 큰지 적은지, 국민이 많은지 적은지를 따질 것 없이, 국내외 관계의 참다운 형상에 의하여 단정할 수 있다. 천하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범하지 않을 때에는 독립과 자주에 기초하여 그 주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법이다. (중략) 대개 국내외의 정치와 외교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외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 나라가 정당한 독립국이다. 그러한 나라를 주권국의 자리에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독립 주권의 뚜렷한 증거는 다른 주권 독립국과 동등한 수호조약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거나 사신을 주고받으며, 강화나 교전에 관한 선언을 자주적으로 행하는 것이다.³³⁾

지금까지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서 이 글을 읽으면 『서유견문』이 그 당시 얼마만큼 파격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세동점이라는 19세기 동아시아의 문명사적 전환기의 긴박한 상황 하에서 ‘주권’과 같은 핵심 용어가 조선에서 사용된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아주 한정된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었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2) 대한제국 탄생과 자주독립국가의 선언

조선 조정은 1896년 5월, 마틴이 번역한 블룬칠리(Johann C. Bluntschli, 1808-1881)의 국제법 서적, 『공법회통』을 출간한다. 이러한 만국공법류의 서적을 조선에서 정식으로 발간한 것은 청국과의 조공관계를 청산한 상황에서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공법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32) 『漢城旬報』 1883년 11월 20일, 1884년 9월 19일<公法說>, 『漢城週報』 1886년 2월 1일, 3월 1일 등.

33)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서해문집, 2004), p.104, p.109.

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환궁할 무렵, 국내에서는 칭제건원-즉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는 상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존호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위축된 왕권의 회복을 모색하고 있던 고종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조선 조정에서는 칭제를 바라는 여론과 고종의 의지를 반영하여 그해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확정, 반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할 환구단을 축조하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9월 말부터 칭제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이때 칭제논의를 연 것은 농상공부협판인 권재형(權在衡, 1854-1934)이었다. 그는 『공법회통』의 84, 85, 86장을 인용하면서 국가의 원수(元首)는 반드시 제호(帝號)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제국이건 왕국이건 모두 평등한 것이다. 자주(自)의 왕국을 가리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황제의 칭호는 반드시 여러 국가를 겸병하거나 영토가 광대한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상소를 올렸다.³⁴⁾ [표5]는 이때 나타난 칭제 상소들을 간략하게 도표화한 것이다.

이처럼 다시 칭제논의가 일단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상소가 빗발치지면서 이전의 상소들과는 다른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당시의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저항적 성격을 지니는 내셔널리즘이 자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왕조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을 상징하는 국왕 고종의 정치적 위상이 극적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고종은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 조정대신들과 재야세력들이 칭제의 논의를 더욱 공론화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자주독립국에 대한 자각과 칭제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는 계기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5] 1897년 9월 하순 이후에 나타난 칭제 상소 및 상주

날짜	상소 및 상주자	칭제의 논거
9. 25.	권재형(權在衡)	『공법회통』 제86장 자주국, 84장 러시아 황제
9. 26.	유기환(俞箕煥)	유럽의 사례와 비교, 전통적인 정통론에 입각
9. 26.	심노문(沈魯文)	자주권에 입각
9. 28.	김두병(金斗秉)	전통적인 정통론에 입각
9. 29.	김재현(金在顯) 외 716명	국가 간 평등한 왕래, 『만국공법』에 근거, 전통적인 언설 병행
9. 30.	이수병(李秀丙)	전통적인 정통론에 입각, 『춘추』의 의리 강조
9. 30.	심순택 등 조정대신의 상주	각국 평등, 독립과 자주(自)의 권리, 전통적인 정통론 병행
10. 1.	심순택 등 조정대신 세 차례 상주	『만국공법』과 전통적인 언설 병행
10. 2.	심순택 등 조정대신 다섯 차례 상주	독립과 자주권 주장
10. 3.	김선주(金善柱)	전통적인 정통론
10. 3.	곽선곤(郭善坤)	전통적인 정통론
10. 3.	정재승(丁載昇)	『만국공법』과 세계의 대세론, 전통적인 언설 병행
10. 3.	심순택 등 조정대신 두 차례 상주	만민의 공론, 유신의 적기임을 강조, 『만국공법』의 자주권 주장과 전통적인 언설 병행-고종의 裁可

『고종실록』; 한영우, 「대한제국성립과정과 '대례의궤(大禮儀軌)」; 『한국사론』 45집(2001)을 참고하여 작성.

34) 『고종실록』 광무원년 9월 25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한 뒤 고종은 조칙(詔勅)을 통해 자신이 국호를 바꾸고 황제로 등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게 된다.

(가) 檀君과 箕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개의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雌雄을 겨루어 오다가 高麗에 이르러서 馬韓, 辰韓, 弁韓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을 統合三韓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태조(太祖)께서는 나라를 여시면서 판도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히셔서, … 사천 리 강토에 一統의業을 세우셨다. 禮樂과 法도가 堯舜의 시기를 이어 받았고 山河가 공고해져 우리 자손 萬世의 반석이 되었다. (나) 오로지 내가 不德하여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하늘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돌려 안정으로 바꾸고,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신하와 백성, 軍伍와 市井들이 한결같은 소리로 일제히 제의하면서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렸으니, 내가 황제의 지위에 오르라는 것이었다. (다) 이같은 건의를 내가 사양하였으나 도저히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陰曆) 白嶽의 남쪽에서 天地에 告하는 제사를 올리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天下를 가진 號를 정하여 大韓이라고 하였고 이 해를 光武元年으로 정했으며 太社와 太稷으로 (宗廟와 社稷의 神位版을) 고쳐 썼다. 王后閔氏를 皇后로, 王太子를 皇太子로 책봉하였다.³⁵⁾(가나다 구분은 필자)

위의 조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조선은 檀君과 箕子 이래 유구한 역사를 가지며 요순의 문물과 제도를 정통으로 계승한 문명국가이다. (나) 그런데 국왕 자신의 부덕으로 인해 난세를 만나 위기에 이르렀다. 이제 위기를 안정으로 돌리고 자주와 독립의 권리를 누리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수많은 신민들이 상소를 통해 청제하라는 공론을 만들어냈다. (다) 이같은 신민들의 공론을 도저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이제 천지에 제사를 올려 황제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올해를 광무원년으로 그리고 국호를 과거 삼한을 대통합했던 역사에 비추어 대한(大韓)이라 정한다.

위의 조칙이 새롭게 탄생한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이며 고종 자신이 대한제국의 정치적 구심점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임은 부연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년 뒤인 1899년에 반포된 「대한국국제」 1편이 만국공법, 그 중에서도 『공법회통』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임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경향을 고려하여 한 가지만 지적해두려고 한다. 그것은, 고종황제가 「대한국국제」를 발표한 의도가 국내적 차원에서만 협소하게 이해되거나 해석되어서는 그 시대적인 맥락이나 전체 그림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종황제는 제국의 헌법적 성격을 갖는 「대한국국제」에 새로 성립한 대한제국이 만국공법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대한제국이 ‘중화질서의 내부에 존재하던 조선’과는 달리 ‘새로운 문명기준’인 만국공법에 의거한 자주독립 국가라는 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대한제국의 군주인 자신은 대한제국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정치적 구심축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국국제」의 제1조에서 “대한국(大韓國)은 세계 만방에 공인(公認)되어 온 바 자주독립(自主獨立) 혹은 제국(帝國)이니라”라고 하고 있는 점이나, 『공법회통』의 68장에 있는 ‘방국의 기본적 권리 다섯 가지’³⁶⁾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대한국국제」가 ‘공법’이라는 레퍼런스에

35) 『高宗實錄』 34年10月13日: “(가)朕惟檀箕以來 疆土分張 各據一隅 互相爭雄 及高麗時 吞竝馬韓辰韓 弁韓 是謂統合三韓 及我太祖龍興之初… 幅員四千里 建一統之業 禮樂法度 祖述唐虞 山河鞏固 垂裕我子孫萬世磐石之宗 (나)惟朕否德 適丁艱會 上帝眷顧 轉危回安 訟獨立之基 行自主之權 戈臣百姓 軍伍市井 一辭同聲 叫嘩齊下 章數十上 必欲推尊帝號 (다)朕揖讓者屢 無以辭 於今年九月十七日 告祭天地于白嶽之陽 卽皇帝位 定有天下之號曰 大韓 以是年爲光武元年 改題太社太稷 冊王后閔氏爲皇后 王太子爲皇太子”

36) 『公法會通』의 68장에 따르면, “邦國之主權有五, 自立政體, 一也, 自定律例, 二也, 自行治理, 三也, 自選臣工, 四也, 自遣使臣, 五也, 凡此五者若行之不偉公法, 則他國不得擅預”이라 하여 ‘주권국가는 자립정체(自立政體), 자정율례(自定律例), 자행치리(自行治理), 자선신공(自選臣工), 자견사신(自遣

의거하고 있음을 계속하여 강조(3조, 6조, 7조, 8조, 9조)하고 있는 것은 대한제국이 ‘새로운 문명기준에 의거한 자주 독립 국가’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조선이 자주독립국가 곧 주권국가라는 점을 새로이 환기시키고 확고히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제국의 선포(1897년 10월 12일)와 「대한국국제」의 제정(1899년 8월 17일)은 강력한 군주권을 바탕으로 만국공법에 입각한 근대국제질서에의 참여의지를 구체화시킨 상징적 행위였던 것이다.

아울러 「대한국국제」를 제정한 직후에 청과 대등한 관계에서 한청통상조약을 체결(1899년 9월 11일)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한국과 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근대적 조약으로서 조공 책봉의 유산을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주권국가로서 상호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은 선포이후 열강들의 승인을 받았으며 앞서 [표4]에 정리한 것처럼 벨기에, 덴마크 등과도 조약을 맺게 된다. 이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기고 결국 망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5. 맺음말: ‘주권’에 관한 비역사적인 이해를 넘어서기 위하여

20세기는 주권국가에 의한 국제질서의 시대였다. 한중일의 20세기 역사는 결국 서양 따라잡기이자 근대 따라잡기에 과녁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불완전한 주권체의 부침(浮沈)의 역사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권’이나 ‘국제’와 같은 용어가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에 등장하여 수용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주권’과 ‘국제’로 표상되는 서양의 대외질서관념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기존의 질서가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권과 국제라는 용어가 탄생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국제정치’의 현장과 만나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주권’개념이 유럽에서 탄생하여 한자문명권에 전파 수용되는 과정을 만국공법의 역할에 주목하여 다룸으로서 19세기 중화문명권에 존재하던 대외질서 관념이 전면적으로 교체되고, 주권국가들에 의한 근대국제질서로 전환하는 양상과 그 경위를 살펴보았다. ‘한자문명권에 주권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근대사의 맥락에서 주권 개념이 도입’되는 경위와 그 의미를 거칠게 대략적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칭하는 ‘주권’(Sovereignty)이란 용어는 16세기 후반 유럽의 역사에서 생겨난 매우 독특한 개념으로서, 한자문명권/동아시아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의 지평에 주권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주권’으로 표상되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중화질서 내부의 국가 간의 관계가 ‘국제(國際)관계’로서 새로이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주권, 국민, 영토라는 ‘국가의 3요소’에 관한 옐리네크의 설명은 ‘오늘날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지적하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자칫 매우 중요한 오해와 사각(死角)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옐리네크의 이해방식은 주권, 국민, 영토를 근간(根幹)으로 하는 근대국가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겠지만, 주권국가가 인류의 역사에서

使臣)의 다섯 가지 권리를 가지며 무릇 이러한 여러 권리를 행하고 공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타국이 함부로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초역사적인 실체라는 오해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당연히 한자문명권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나 ‘동아시아 근대사’나 ‘한반도의 근대 국제정치사’의 주요한 현장을 포착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일반화된 비역사적 설명과 도식적인 이해로는 과거와 미래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유연한 발상이 근원적으로 생겨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차자료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대

『용호한록(龍湖閑錄)』

『한성순보(漢城旬報)』 1883~1884(동방미디어, 1983)

『한성주보(漢城週報)』 1886~1888(동방미디어, 198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편. 1965-1973. 『舊韓國外交文書』 고려대학교

吉野作造(요시노 사쿠조). 1927. 「我國近代史に於ける政治意識の發生」. 『吉野作造選集』 11卷
(岩波書店, 1995) 「明治政治史の一節:明治前後における公法の觀念」 1927年3月・6月
『政治學研究』2. 岩波.

大築拙藏(오오츠키 세츠조). 1882. 『惠頓氏萬國公法』

朴泳孝. 김갑천역. 1990. 「朴泳孝의 建白書」. 『한국정치연구』 2권 1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
소.

福澤諭吉(후쿠자와 유키치). 1995. 『文明論之概略』岩波文庫.

西周(니시 아마네). 1966. 大久保利謙編. 『西周全集』第2卷. 宗高書房.

송병기 편역. 2000. 『개방과 예측: 대미 수교관련 수신사 기록(1880)초』단국대학교출판부.

魏源(웨이위안). 1847. 『海國圖志』第2版 60卷本.

俞吉濬. 허경진역. 2004. 『西遊見聞』. 서해문집.

尹致昊. 1973. 『尹致昊日記』 國史編纂委員會 6卷. 探求堂.

日本開成所翻刻版. 『萬國公法』(마틴譯『萬國公法』(1864)의 1865년도 일본 수입판)中 公法第一
卷第2章」丸山眞男外編『日本近代思想大系1: 開國』(岩波書店, 1990)

장 보댕. 임승휘역. 1982. 『국가론』박영사.

장인성·김현철·김종학편. 2012.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1: 개항. 대한제국기』서울대학
교 출판부.

鄭觀應(정관잉). 1880. 『易言』

_____. 2003. 『성세위언: 난세를 향한 고언』책세상.

諸橋轍次(모로하시 테츠지). 1980. 『大漢和辭典』全15卷. 大修館書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會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重野安繹(시게노 야스츠크)譯. 1870. 『和譯萬國公法』(鹿兒島藩刊, 1870) 『日本近代思想體
系: 翻譯の思想』(岩波書店, 1991)

芝原拓自(시바하라 타쿠지)外 篇. 1988. 『近代日本思想大系12:對外觀』岩波書店.

萩原延壽(하기하라 노부토시). 2001. 『遠い崖:アーネスト.サトウ日記抄, 14卷. 離日』岩波書
店

Denny. O.N. 1888. China and Korea. Kelly and Walsh, Ltd., Printers, Shanghai. 신복
룡·최수근역. 1987. 『데니문서』 평민사.

Martin, W.A.P. 丁騷良譯. 『公法會通』(1880)(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원본은 Bluntschli,
Johann Kaspar. *Das moderne Volkerrecht der civilisi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1868).

- Martin, W.A.P. 丁健良譯. 『萬國公法』(1864)(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원본은 Wheaton, Henry.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London & Philadelphia, 1836)의 6th edition, Little, Brown & Company, Boston, 1855.
- Martin, W.A.P. 丁健良譯. 『公法便覽』(1877)(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원본은 Woolsey, Theodore D.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1860)
- Park, Il-Geun(ed.), 1982. *Anglo-American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부산: 부산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차자료

- 강상규. 1996. 「고종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한국사 시민강좌』 19집. 일조각.
- _____. 1999. 「근대 일본의 「만국공법」수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87집. 진단학회.
- _____. 2003. 「조선시대 왕권의 공간과 유교적 정치지형의 탄생」. 『애산학보』 29. 애산학회 (2003.11).
- _____. 2006. 「2장. 천하예의지방과 국민부강국가」. 하영선 . 김상배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_____. 2006. 「중국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 25집(2006.7).
- _____. 이해정. 2007. 「1장. 근대 국제정치질서와 한국의 만남」.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 _____. 2008.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논형.
- _____. 2010. 「동아시아의 전환기 경험과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 『한국학연구』 32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2010.3).
- _____. 2010. 「1870-1880년대 고종의 대외관과 자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 근대국가 수립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_____. 2010. 「근대지식체계와 조선사 이미지」. 『동양정치사상사』 9권 2호(2010.9)
- _____. 2010.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주권'과 '국제'개념의 탄생」. 『중국학보』 62집(2010.9)
- _____. 2013. 『조선정치사의 발견』. 창비.
- _____. 2017. 「근대민족주의와 한국외교사」. 『장소와 의미: 동주 이용희의 학문과 사상』 연암서가.
- _____. 2018. 「근현대 '동아시아'질서의 퍼즐 맞추기: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연구』를 읽고」. 『아시아리뷰』 8권 1호(2018. 8)
- 강상중, 임승모·이경덕역. 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2011.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민속원.
- 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사: 42권. 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 김세민. 2002. 『한국근대사와 만국공법』. 경인문화사.
- 김수암. 2003. 「1870년대 조선의 대외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권 1호.
- 김용구. 1997. 『세계관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禮와 서양 公法』. 나남출판사.
- _____. 2001. 『세계관충돌과 한말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08. 『만국공법』. 소화.
- 김원모. 1999. 『한미수교사: 조선보병사의 미국사행편』. 철학과 현실사.
- 김효전. 1989. 「近代韓國에 있어서의 國際法發達」. 『東亞法學』.

- _____. 1987. 「韓國에 있어서 國際法の 初期受容」. 『韓國國際法學의 諸問題』. 박영사.
- _____.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 현실사.
- _____. 2009. 『헌법』. 소화.
- 渡辺浩(와타나베 히로시). 1996. 「『朝鮮國』『日本國』관계와 ‘道理’: 17-19세기」. 『21세기 한일관계』. 법문사.
- 로버트 잭슨. 옥동석역. 2016. 『주권이란 무엇인가: 근대국가의 기원과 진화』. 21세기북스.
- 리디아 류. 차태근역. 2016. 『충돌하는 제국』. 글항아리.
- 박상섭.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근대국가 형성기 유럽의 군사와 정치」. 『정경세계』. 국제사회과학학술연구소.
- _____. 2008. 『국가, 주권』. 소화.
- 배재식. 1982. “Growth of the Law of Nations in the Yi Dynasty of Korea.” 서울대학교 『法學』 23권 4호.
- 서영희. 2003. 『대한제국 정치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용하. 1999.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한국사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국사편찬위원회.
- 신옥희. 2009. 「근대한국의 주권 개념」. 하영선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교학과. 2009. 『한국외교 60년』. 외교통상부.
- 우철구. 1999. 『19세기 열강과 한반도』. 법문사.
- 윤영도. 2005. 『중국 근대 초기 서학 번역: 『만국공법』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이광린. 1982. 「한국에 있어서의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개화사연구』개정판. 1993. 일조각.
- 이근관. 2002. 「동아시아에서의 유럽 국제법의 수용에 관한 고찰: 『만국공법』의 번역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9집 2호. 국제법연구원.
- 이상면. 1987-1988. “Korean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Law after the Open-Door to the West(I, II).” 서울대학교 『法學』 28권 3-4호, 29권 1호.
- 이혜정. 2004. 「주권과 국제관계이론」. 『세계정치』. 25집 1호.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 장인성. 2017.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용화. 2004. 「근대한국의 주권개념의 수용과 적용」. 『세계정치』. 25집 1호.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 조동걸. 1985. 「奥村의 朝鮮國布教日誌」. 『한국학논총』 7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주진오. 2010.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한국 근대국가 수립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진관타오 . 류칭평지음. 양일모외역. 2010. 『관념사란 무엇인가 1, 2』. 푸른역사.
- 최종고. 1982.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 페데리코 마시니, 이정재역. 2005. 『근대중국의 언어와 역사: 중국어 어휘의 형성과 국가어의 발전 1840-1898』. 소명.
- 하영선외. 2009.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 한스 모겐소. 이호재 . 엄태암역. 2013. 『국가 간의 정치』. 김영사.
- 한영우. 2001. 「대한제국성립과정과 『大禮儀軌』」. 『한국사론』 45집.

한영우외. 2006.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金鳳珍. 「朝鮮の萬國公法の受容：開港前夜から甲申政變に至るまで」. 『北九州大學 外國語學部 紀要』第78號, 第80號.

渡辺浩(와타나베 히로시). 1994. 「進歩と中華：日本の場合」. 『近代化像：アジアから考える 5』. 東京大學.

尾佐竹猛(오시다케 타케시). 1932. 『近世日本の國際觀念の發達』. 共立社.

松澤弘陽(마츠자와 히로아키). 1974. 『日本思想大系 66：西洋見聞集』解説. 岩波書店.

-----. 1993. 『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經驗』. 岩波書店.

植手通有(우에테 미치아리). 1971. 「對外觀の轉回」. 『近代日本思想史體系 3：近代日本政治思想史 I』. 有斐閣.

原田環(하라다 타마키). 1981. 「朝・中『兩截體制』成立前史：李裕元と李鴻章の書簡を通して」. 『朝鮮の開國と近代化』. 1997.

伊藤不二男(이토 후지오). 1979. 「國際法」. 『近代日本思想史體系 7：近代日本法思想史』. 有斐閣.

伊原澤周(이하라 타쿠슈). 1999. 『日本と中國における西洋文化攝取論』. 汲古書院.

一又正雄(이치마타 마사오). 1973. 『日本の國際法學を築いた人々』. 日本國際問題研究所.

張嘉寧(장자닌). 1988. 「『萬國公法』成立事情と翻譯問題：その中國語譯と和譯をめぐって」. 『日本 近代思想體系：翻譯の思想』. 岩波.

田保橋潔(다보하시 키요시).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 朝鮮總督府.

田中彰(다나카 아키라). 1984. 『「脫亞」の明治維新：岩倉具視を追う旅から』. NHKブックス.

-----. 1990. 「黒船から岩倉使節團へ」. 『日本近代思想大系1卷：開國』. 東京：岩波書店.

佐藤愼一(사토 신이치). 1996. 『近代中國の知識人と文明』. 東京大學.

住吉良人(스미요시 료이치). 1978. 「明治初期における國際法の導入」. 『國際法外交雜誌』76卷.

芝原拓自(시바하라 타쿠지)外 篇. 1988. 『近代日本思想大系12：對外觀』. 岩波書店.

筒井若水(츠츠이 와카미즈). 1967. 「現代國際法における文明の地位」. 『國際法外交雜誌』66卷.

坂本多加雄(사카모토 타카오). 1994. 「萬國公法と文明世界」. 『日本は自らの來歴を語りうるか』. 筑摩書房.

丸山眞男(마루야마 마사오). 1952/1983. 『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大學.

-----. 1992. 『忠誠と反逆：轉形期日本の精神史的位相』. 筑摩書房.

-----, 加藤周一. 1998. 『翻譯と日本の近代』. 岩波新書.

Beasley, W. G. 1995. *Japan Encounters the Barbarian :Japanese Travellers in America and Europe*. Yale Univ. Press.

Cohen, Paul. 1984.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Gong, Gerrit W. 1984.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Hintze, Otto. 1975.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in

- Felix Gilbert (ed.).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bsbawm, Eric. 1994.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London: Michael Joseph.
- Hsü, Immanuel C. Y. 1968. *Chinese Entrance into the Family of Nations*. Harvard Univ.
- Kennedy, Paul. 1988.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 Nussbaum, A. 1958. *A Concise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 Macmillan, N.Y.
- Schwartz, Benjamin. 1972. "The Limits of 'Tradition Versus Modernity' as Categories of Explanation: The Case of the Chinese Intellectuals", *Daedalus*(Spring 1972).
- Schwarzenberger, Georg. 1955.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Law." *Current Legal Problems*, Vol. 8. London: Stevens & Sons Limited.
- Shinobu, J. 1951. "Vicissitude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History of Japan." 『國際法外交雜誌』 50卷 3號.
- Suganami, Hidemi. 1978. "A Note on the Origin of the Word of International." *British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
- Tanaka, Stefan. 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Univ. of California Press. 박영재·함동주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문학과 지성사, 2004).
- Weber, Max. 196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in Gü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d.). Berkeley, Los angels and London: Bedminster.

혁명 이전의 혁명 관념: 해방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

변성호(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혁명’처럼 남용되는 개념도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현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되었던 혁명 개념은 현재 일상의 사소한 영역에까지 적용되어 사용되는 단어이며 그런 남용의 역사 또한 짧지 않다. 과장의 표현으로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는 경우도 별로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현대사의 사건 중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혁명으로 간주하는 ‘4.19’에 대해서조차 혁명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고,¹⁾ 1960년 ‘4.19’에 이어 1961년에 발생하여 혁명을 표방했던 ‘5.16’ 쿠데타의 경우도 불과 몇 년 전까지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혁명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고백해야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있었다. 정치적으로 적극적 의미 부여가 되는 경우로서 ‘혁명’적 사건은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적어도 ‘4.19’와 ‘5.16’이라는 두 사건의 발생 당시인 1960년대 초반에 해당 사건들이 ‘혁명’으로 불렸던 사실을 인정하고 왜 두 사건은 ‘혁명’으로 불리고 인정될 수 있었는지의 단초를 직전 시기인 1950년대를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혁명’에 대한 혹은 ‘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 권위있는 하나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워졌다. 개별 연구자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타당한 방식으로 혁명의 구성요소들을 정하고 그에 따라 혁명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특정한 하나의 정의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혁명의 역사로 포함되고 나머지는 배제된다.²⁾ 물론 이 글은 정치학이라는 분과 학문의 경계 내에서의 혁명을 논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혁명의 정의와 개념을 처음부터 규정하지는 않는다. 실상 연구범위로 삼은 해방 이후부터 50년대의 시간에 한국에서 보통 의미하는 ‘혁명’적 사건은 없었다. 한국인들이 몸으로 겪는 혁명은 없지만 글이나 라디오로 보고 듣게 되는 혁명들은 있었다. 그것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들이고 이는 과거 국내외의 ‘혁명’들과 연결되어 이해되었다.

이 글이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0년 ‘4.19’ 직전인 1959년까지의 시기³⁾에 한국에서 ‘혁명’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영역이 많음을 인정하고 시작한다. 연구의 동기가 ‘4.19’와 ‘5.16’이 왜 ‘혁명’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그 직전 시기 한국인의 ‘혁명’ 관념을 찾아보는 것이기에 부득이하게

1) 가장 최근의 연구로 김영명. 2017. 4.19의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9(1)이 있다. 김영명은 ‘4.19’를 혁명이 아닌 봉기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 에릭 홉스봄은 같은 논리로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비판하였다. “그녀는 혁명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구성한 이념형으로 다루며, 그에 따라 주제를 정의하면서 자신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배제한다.” 에릭 홉스봄 저. 김정환, 안중철 역. 2008. 혁명가: 역사의 전복자들. 길. p.269.
3) 1960년 1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혁명’을 키워드로 하여 의미있는 신문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1945~59년의 시기를 설정하였으나, 이 시기의 ‘혁명’ 관념이 더 이전, 그러니까 해방 이전의 관념에 비해 큰 변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제 식민지, 더 거슬러 구한말에 이미 혁명이라는 말, 서양의 revolution의 번역어와 동양 고전의 역성혁명의 관념이 혼합된 ‘혁명’에 대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지식인이 존재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1945~59년의 시간 동안 한반도 혹은 남한의 공간에서 정치적 혁명은 없었기에 사건이 부재한 시기의 혁명 관념의 연구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정치적 격변으로서 혁명이 한 국가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말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100년이 안 되는 시기에 한국에서 자칭 혁명으로 부른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요는 연구 시기의 과거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혁명 관념과 미래인 4.19 이후 1960년대의 혁명 관념을 연결시켜 보여주는 것이 이상적이나 다음 연구로 미뤄두고, 혁명은 없었지만 해방 이후 건국과 한국전쟁이라는 초유의 사건들은 있었던 시기의 혁명 관념에 집중하였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혁명 개념을 통해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은 이헌미⁴⁾, 권보드래⁵⁾의 경우가 있다. 이헌미의 연구가 대한제국기, 권보드래의 연구는 주로 1910년대의 혁명 개념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두 연구자의 연구 시기가 서구의 revolution 개념이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1919년 경까지의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본 연구는 그 이후 시기인 1945년 이후부터를 다루고 있다. 리샤오통⁶⁾의 경우는 중국 근대 지식인이 revolution 개념을 동양 전통의 혁명 개념과 구별 및 혼용하는 양태를 밝혀서 해방 이전의 혁명 관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도민은 혁명 개념이나 관념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1956년 헝가리 사태를 남한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했는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연구하여 한국 사회가 동시대지만 머나먼 유럽 국가의 혁명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주었다.⁷⁾

연구를 위한 자료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주로 이용하였다.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의 라이브러리 서비스에서 키워드를 ‘혁명’으로 설정하고 검색한 결과 두 일간신문에서 1945~59년의 기간에 4,038건의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추후 당시의 대표적 지식인 잡지인 『사상계』 및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함석헌의 저작에서의 혁명 관념까지 연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 코젤렉의 혁명 개념사

혁명의 개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다만 연구자별로 완전히 다른 정의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공통되는 지점은 있기 때문에 혁명에 대한 관념을 다루는 이 글의 논의를 돕기 위해 혁명 연구의 권위자 중 한 명인 골드스톤의 정의를 제시하며 넘어가기로 한다. 골드스톤은 혁명의 정의는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대중을 동원하여-군사적 동원이든 민간인의 동원이든 둘 다든-정부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

4) 이헌미. 2012. 반역의 정치학: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5) 권보드래. 2015. 1910년대의 ‘혁명’: 3·1운동 전야의 개념과 용법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5

6) 리샤오통. 2010. 중국 근대지식인에게 있어서의 전통과 혁명. 정치사상연구 16(1)

7) 김도민. 2017. 1956년 헝가리 사태에 대한 남한의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김도민. 2018. 1950년대 세계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남한에서의 젠더적 재현 양상. 역사문제연구. 39.

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⁸⁾

국내 기존 연구를 통해서 혁명 개념이 과거의 한국인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구들에서도 서구의 revolution 개념이 한국에 수용되는 양상을 본다고 했을 때 그 revolution의 개념사를 연구한 코젤렉⁹⁾의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코젤렉은 이 글 서론에서 제기한대로의 혁명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을 설명하¹⁰⁾며 이렇게 광범위한 ‘혁명’의 개념 자체가 우리 근대성의 언어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오직 프랑스혁명을 거친 이후에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의미를 함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revolution은 라틴어 revolutio에서 유래하였고 순환, 별의 주기를 의미했다. 동양에서 역성혁명을 이해한 것과 유사하게 정부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사회 질서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17세기까지 순환으로서의 revolution 관념은 지속된다.

18세기 계몽시대가 되면 revolution의 범위는 세상 모든 것, 도덕, 법, 종교, 경제, 국가, 지구의 일부까지 확대된다.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는 새로운 모델 덕분에 revolution으로 ‘온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념이 생긴다. 당시 revolution은 내전 개념과 대비되어 이해되었는데 내전은 현 상황을 맴돌 뿐이지만 revolution은 새로운 전기를 열어간다는 식이었다. 미국 독립의 사례는 revolution에 대한 희망적인 분위기를 추가했지만 당시 지식인 중 몇몇, 특히 루소는 혁명 후에 무엇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혁명의 불확실성을 주장했다. 이때부터 revolution은 알 수 없는 미래로의 전진으로 여겨졌다. 이후의 revolution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모든 개별을 묶는 메타역사적 개념으로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Revolution’이라는 관념이 생겼다. 동시대의 산업혁명으로 사회적 해방을 위한 운동들이 확대되는 와중에 혁명의 형태가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옮겨가는 단계나 경로가 설정되었다. 즉 정치혁명의 목표가 모든 인간의 사회적 해방, 사회 구조의 변화여야한다는 관념이 새로 등장하였다. ‘Revolution’의 현대적 표현들인 미국, 프랑스, 러시아의 혁명 사례들은 공간적으로 세계혁명을 암시하고 시간적으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의 항구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1830년 7월 혁명에서 “혁명은 영원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혁명은 영원의 시간을 두고 사유되었다. 사회주의도 혁명의 영원성을 선언했는데, 이 선언은 미래에 대한 의식적 기대와 함께 혁명이 결코 달성되지 않으리라는 암묵적 가정이 공존하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또한 대표적으로 레닌과 같은 직업인으로서 ‘혁명가’가 등장한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할 수 없었다. 처음에 혁명은 지지자뿐 아니라 그 반대, 적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일단 혁명의 정당성이 인정되자 혁명은 영원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계속 적을 재생산한다. 또한 혁명은 정당하기 때문에 혁명가는 어떤 수단을 써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혁명은 정치, 사회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일반적 의미의 지배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그 역사적 목표의 달성은 지구적 규모이고 무한한 과업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혁명의 개념사에 대한 코젤렉의 이 짧은 글의 마지막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 각지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다루는데 여기에 한국의 경우도 포함되었다. 그는 제국주의 시대 이후 더 이상 팽창할 곳이 없는 지구에서, 그리고 핵무기로 인한 절대적 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전쟁은 국가 간이 아니라 내전 밖에 남지 않아서인 것이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영구적 혁명과 핵전쟁의 공포를 대체하기 위한 내전은 도대체 무엇이

8) 잭 A. 골드스톤. 2016. 혁명. 교유서가. p.17.

9) Reinhart Koselleck ; translated by Keith Tribe. 2004. Futures past :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p.43-57.

10) 페터 벤데의 짙막한 혁명 개념사 정리는 코젤렉의 연구와 유사한데, 그가 코젤렉의 연구를 직접 인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페터 벤데 엮음. 권세훈 역. 2004. 혁명의 역사. 시아출판사. pp.7-8.

나는 철학적 질문에 답은 할 수 없지만 1945년 이후의 내전들이 참혹한 인명살상을 초래했음은 분명하다.

혁명 개념은 소요, 봉기, 내전 등의 사건 자체와 혼용되기도 하고 대조되기도 했으며, 특정 사건이 발생하여 변화가 일어났어도 사회 근저에서는 예전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프랑스혁명의 결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혁명이 미지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에는 끝이 없는 과제를 위해 영원한 투쟁을 벌이면서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계까지도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의 변화와 누적은 ‘revolution/혁명’ 개념의 다양한 용례를 정당화하고 있고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혁명’의 의미도 다르지 않다.

3. 혁명의 시간 혹은 한국 혁명의 계보

본격적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주로 사용한 동아일보, 경향신문에서 키워드 ‘혁명’으로 검색된 기사 건수를 살펴보자.

<표 1> 1945~59년 ‘혁명’이 포함된 신문 기사의 수¹¹⁾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동아	29	168	143	102	192	74	35	69	59	65	133	265	291	386	381
경향	-	48	126	82	177	43	-	53	77	80	118	165	251	314	111
합계	29	216	269	184	369	117	35	122	136	145	251	431	542	700	492

표에서 나타나듯이 1945~59년의 현실에서 벌어진 ‘혁명’ 사건은 없었지만 혁명을 다룬 기사는 적지 않았다. 여순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공산당과 연루되어 혁명 사건으로 다뤄진 사례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체 검색 결과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적으로서 소련, 공산권의 혁명이 다뤄진 경우와 소위 제3세계의 내전, 쿠데타를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룬 경우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여기서는 우선 국외의 사건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 내의 사건, 담론으로서 ‘혁명’에 대한 관념을 살펴본다. 신문 기사에서 해방 이후 한국의 혁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3·1운동이다.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등도 몇 건 혁명으로 기록되어있으나 거의 대부분 3·1운동이 혁명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학생운동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한국 혁명의 계보로 인식되고 있었다.

3·1운동, 즉 ‘3·1혁명’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1945년 12월 김구가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했던 연설의 내용은 혁명으로서의 3·1운동의 성격을 보여준다.

친애하는 동포제군! (...) 여러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임시정부는 삼일대혁명의 민족적 대유혈투쟁 중에서 산출한 유일무이한 정부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전민족의 총의로 조직된 정부이였고 동시에 왜적의 조선통치에 대한 유일한 적대적존재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시정부는 과거 이 십칠 년간 일대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민족총단결의 입장과 민주주의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여

11) 1950년대 초반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기사의 수가 적다. 경향신문의 경우 1946년 10월부터 관련 기사가 존재하고 1959년 폐간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검색 건수가 적다. 동아일보의 경우 1945년 12월부터 검색 결과가 존재했다. 참고로 1960년의 키워드 ‘혁명’의 검색 결과는 4,687건이고 1961년에 6,361건이다. 소설, 시, 광고도 포함되어 있는 결과이다.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임시정부는 결코 모 일계급 모 일당파의 정부가 아니라 전민족 각 계급 각 당파의 공동한 이해입장에 입각한 민주단결의 정부이였습니다. (...) 지금 우리는 국토와 인민이 해방된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독립주권을 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대한 임무이외다. 우리가 이 임무를 달성하면 오직 삼일대혁명의 민주단결정신을 계속 발양해야 합니다. 남선북선의 동포가 단결해야하고 좌파, 우파가 단결해야 하고 남녀노소가 다 단결해야함이다. 우리 민족 개개인의 혈관 속에는 다가지 단군성조의 성혈이 흐르고 잇읍이다. 극소의 친일파 민족반도를 제한 외에 무릇 한국동포는 마치 한 사람가치 같게 단결해야 합니다.¹²⁾

3·1운동을 ‘삼일대혁명’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귀국 후 김구는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기 위함인지 3·1운동에서 나타난 민족의 하나된 모습과 에너지를 해방된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활용하려고 했다. 수십 년의 일제 지배가 끝났지만 하나의 민족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단군의 성스러운 피를 공유한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민족은 외적의 지배를 받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저항하여 해방을 쟁취했음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한국 민족주의의 상징적 근원인 단군이 등장함으로써 4천 년이 넘는 민족의 시간이 인지되고 있고, 신화적 존재인 단군의 후손, 하늘의 자손인 한민족의 특별함이 강조된다.

3·1운동이 혁명인 것은 전민족이 단결하여 외적에 대항하였고, 이 운동을 통해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여 해방이 될 때까지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4. 50년대에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혁명이 독립운동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립운동 중에서도 해외의 독립운동, 무장투쟁 활동을 혁명으로 인식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물론 이것은 혁명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될 때의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식으로 이해된 혁명들도 있었다.

1946년 3월 1일은 해방 후 처음 맞는 삼일절로 이승만과 김구는 ‘3·1혁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삼월일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빛나는 날이고 또한 세계역사에도 기념할만한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 애국열사들이 처음으로 비군력혁명¹³⁾을 시작하여서 물질적 세력을 정신적 세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주의를 새로 표명하고 그 주의를 표명하기 위하여 다수 애국남녀가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였습니다.¹⁴⁾ (이승만)

나는 먼저 오늘 이 세계혁명사상에 찬연히 빛나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국경일을 당하여야여라 동포 형제□□와 함께 (...) 전민족이 죽임으로써 항쟁하겠다는 것을 소래 높히 외쳤으니 이것은 한국민족이라는 국한된 의미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압박받는 약소민족에게도 이러한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입니다. (...) 우리 한국민족이 오히려 칠, 팔개월이나 계속하여 총과 칼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인류의 혁명사상에 감히 가장 빛나는 부분이 되리라고 믿읍니다.¹⁵⁾ (김구)

두 사람 모두 ‘3·1혁명’의 의의를 한민족 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의 역사와 결부시켰다. 즉 ‘3·1혁명’은 세계 역사의 무한한 시간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자 세계혁명사 계보의 일부라는 것이다. 1947년의 한 기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혁명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혁명파도”가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어찌 후진조선이라고 이에 반향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판단했다¹⁶⁾. 다른 기사는 순전히 세계적 혁명의 흐름뿐 아니라 국제연맹의

12) 동아일보 1945. 12. 20. 1면

13) 다음 날 동아일보에는 비폭력혁명으로 되어 있다. 동아일보. 1946. 3. 2. 1면

14) 동아일보. 1946. 3. 1. 1면

15) 동아일보. 1946. 3. 2. 1면

16) 경향신문. 1947. 2. 28. 2면

창설과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연결시켰다.¹⁷⁾

1950년대 중반의 기사들은 ‘3·1혁명’의 계보를 ‘불란서혁명’에서 찾는다. 프랑스혁명의 성공으로 “자유평등박애의 대(大)스로-간이 전세계 인류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¹⁸⁾ 또 “실로 불란서혁명은 새로운 근대의 민주정신을 발양시키기 위한 불가침의 성스러운 사실(史實)”이었다. 삼일운동은 “세계사적인 무혈혁명”이며,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오래인 동면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중국을 비롯한 인도, 비올빈, 애급 등 들의 자주정신을 불질러” 일으켰다. “만일 불란서혁명이 근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각성시킨 절대한 의의를 가졌다면 삼일혁명은 문자그대로 약소후진국가의 자각과 자립자주 정신을 고무시킨 역사적 운동”이라는 것이다.¹⁹⁾ 프랑스혁명이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선진국들에 영향을 주었던 반면 3·1운동은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 결과 선진국이 아닌 “약소후진국가”를 깨웠으며 대비되었다. 프랑스혁명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운동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전에 ‘3·1혁명’이 ‘민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용된 반면 50년대 중반의 이 글은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게 제국 지배 하의 민족들을 “약소후진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출발선상에 있는 프랑스혁명은 한국인들의 혁명 관념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했다. 앞의 신문 기사를 비롯하여 프랑스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의 이상적 지점으로서 한국의 상반되는 현실과 대비시키기 위해 이용되었다. 또 이 위대한 혁명을 기리기 위해 신문들은 거의 매년 7월 1일이 되면 이 달의 기억할 날로 7월 14일 “불국혁명기념일”을 소개하였고, 한국 외무부 장관이 프랑스로 축전을 보냈고, 한국의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기념파티가 벌어졌다.²⁰⁾ 더구나 한국전쟁에 프랑스가 참전하면서 프랑스혁명의 위대성은 배가되었다.

‘3·1혁명’에서 나타난 민족의 위대함은 한반도가 분단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을 남긴 1950년대의 상황에서 희미한 기억 속의 사건이 된다.²¹⁾ 1919년 이래로 해외에서 2, 30년의 혁명투쟁을 한 “혁명동지”, “혁명선배”는 하나둘 사망하고 “혁명선열”들로 변했다. ‘3·1혁명’ 이후 해외에서 투쟁한 혁명투사와 그의 가족들은 사회에서 잊혀진 채 해방된 조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²²⁾ 그러면서도 ‘3·1혁명’은 아래와 같이 당대 사회에 나타난 분열, 가난을 꾸짖기 위한 준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세계민족혁명운동사에 유례없는 본보기이었다. 지금 생각하고 또 뇌까려보아도,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 그렇듯 신성하고 고귀하고 또 위대한 저력이 흐르고 있었던가. 오늘날 동족상잔의 잔행과, 지금 처럼 반목 불화하는 추태를 목도할 때에, 우리는 과거의 행적이 너무나 허무했던 것을, 통분 또는 호곡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부패한 정치, 이 난마같은 민심, 어느 한 모멘트 삼일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어쩔것인가. 우리는 이준열사를 추모한다. (...) 그러나 혈고, 뜯고, 꼬집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다반사로 하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그것이 하나의 가면이요, 위선이라 단

17) 경향신문. 1947. 3. 1. 1면

18) 동아일보. 1956. 7. 1. 3면

19) 경향신문. 1955. 2. 27. 4면

20) 경향신문. 1947. 7. 1. 2면; 경향신문. 1948. 7. 2. 2면; 동아일보. 1948. 7. 15. 2면; 동아일보. 1949. 7. 15. 1면; 동아일보. 1952. 7. 15. 2면; 동아일보. 1953. 7. 1. 2면; 경향신문. 1953. 7. 1. 2면; 경향신문. 1955. 7. 15. 1면; 동아일보. 1956. 7. 12. 1면; 동아일보. 1957. 7. 1. 3면; 동아일보. 1957. 7. 16. 3면; 경향신문. 1958. 7. 11. 2면; 동아일보. 1958. 7. 14. 3면; 동아일보. 1958. 7. 15. 1면; 경향신문. 1958. 7. 15. 1면

21) 가령 1956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성된 기사에서는 부형 중 나이가 38세가 되시는 분이 있을 거라며 56년의 어린이들에게 1919년이 먼 과거의 일임을 강조하였다. 38세라고 하여도 1919년에 태어났다는 것이니 그들도 체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아일보. 1956. 2. 27. 4면

22) 동아일보. 1957. 10. 17. 2면

정하지 않을 수 없다.²³⁾

혁명으로 3·1운동이 사라진 것은 법조문 특히 헌법에서 ‘3·1혁명’이 사라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조소앙이 작성하여 1941년 제정, 공포되고 1945년 12월 동아일보에 연재로 소개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는 3·1운동이 “3.1혈전”이라고 표기되었지만 혁명의 성격이 내포되어있었다. 또 건국강령에는 “토지혁명”, “혁명적 삼균제도”, “민족의 혁명의식” 등 혁명이라는 단어가 여섯 차례 등장하였다.²⁴⁾ 그러나 제헌국회의 헌법 초안에 있었던 ‘3·1혁명’은 본회의 과정에서 ‘3·1운동’으로 대체되고 이후 헌법 속에서 ‘3·1혁명’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제헌국회의 논의 과정은 혁명에 대한 관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간략히 적어 본다. 48년 7월 8일 기사에 따르면 조국현 의원이 “삼일혁명”이라는 것보다 “삼일항쟁”이라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한 후 이승만 의장도 동의하며 “삼일혁명”은 사라졌다. ‘혁명’ 대신 무엇을 할 것인가 추가로 논의가 되고 ‘운동’으로 결정이 났다. 조국현 의원은 혁명은 한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3·1운동을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조가 고려 왕조를 전복시킨” 역성혁명 혹은 “갑오의 운동”, 즉 갑오개혁과 같은 “제도를 고치자는” 개혁을 혁명과 등치시킨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해당 의원에게는 서구적인 revolution 관념은 찾아볼 수 없다. 재미있게도 이승만이 이런 주장에 대해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은 내가 절대로 찬성합니다. 혁명이라면 우리 나라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인데 원수의 나라에 와서 있는 것을 뒤집어놓는 것은 혁명이라는 게 그릇된 말”이라며 쉽게 문구 수정에 찬성했다.²⁵⁾ 하지만 이승만 자신은 이전에 3·1운동의 혁명성을 계속 주장했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3·1운동을 혁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했다.²⁶⁾

- 광주학생운동 후술
- 후진성 / 혁명단계론 후술

4. 예견된 미래의 혁명?

1945~1959년의 시간 동안 북한과 중국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한국전쟁을 겪었고, 소련의 세계혁명의 의도가 유지되며, 특히 스푸트니크호의 발사로 상징되는 소련의 과학 발달과 무기 능력의 과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연계된 ‘혁명’ 시도로 해석된 사건들을 직접 겪는다. 그러나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는 내전, 반란, 신(新)정부 수립의 ‘혁명’들도 수시로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외국의 사건이지만 빈번한 간접 체험은 해외 ‘혁명’이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해석될 여지를 충분히 제공했다.

1956년의 헝가리 혁명은 앞서 언급한 김도민의 연구에서 많은 부분이 설명되었기에 상술을 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하려고까지 감정 이입을 했던 사건이다. 헝가리 혁명이 ‘반소·반공·자유혁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지만 북한 유학생들이 참여하여 소련에

23) 동아일보. 1955. 3. 1. 1면

24) 동아일보. 1945. 12. 17. 1면;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701&tabId=03&levelId=hm_127_0030

25) 경향신문. 1948. 7. 8. 1면; 동아일보. 1948. 7. 8. 1면; 국회속기록 제1회-제27호. pp.5-7.

26) 이승만. 기미독립운동 정신. 연설일자 1949. 3. 1.

대적하는 입장에 서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그 밖에 나세르의 이집트, 카스트로의 쿠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등의 ‘혁명’도 신문을 통해 빈번하게 소개되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6년부터 두 신문을 합쳐 연간 400건이 넘게 보도된 혁명 관련 기사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후진국’의 ‘혁명’ 기사가 차지한다.

‘후진국’의 ‘혁명’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채택한 대통령중심제를 비판하고 내각책임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일찌감치 제헌국회부터 대통령중심제가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혁명이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라파에 혁명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헌법 초안은 대통령임기제의 장점과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채택한 초안이라고 본다.²⁷⁾

그러나 1950년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중심제의 국가에 정치적 부패 정치적 혁명이 □발하는 악례를 중남미 제국에서 발견”한다는 개헌운동에 대한 민국당의 담화부터 중남미의 ‘혁명’과 대통령중심제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글이 반복된다. 1953년 경향신문의 ‘여적’란은 “남미제국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제도의 결함 때문에 혁명이 빈번한 것”을 슬퍼했다.²⁸⁾ 1954년에도 과테말라 반란을 두고 “중남미 제국이 대통령집권의 순미국식헌법을 채택한 까닭에 빈삭하게 혁명이 발생하는 관계”라고 진단이 나왔고²⁹⁾ 이후 조병옥이 아래와 같이 과테말라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중심제의 불안정성을 주장했다.

‘과테말라’를 위시한 중남미제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받아 미국식의 삼권분립주의 내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독재정치가 아니면 끊임없는 내란과 쿠데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중심제 삼권분립제가 미국에서 무난한 민주발전을 보여왔다고 해서 미국과 같은 정당정치가 발달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전통화되지 못한 국가에서 그와 같은 제도는 내란과 혁명의 원인이 되기 쉽고 소위 ‘민주적인 독재정치화’하기 쉬운 것이다. 문제의 과테말라만 하더라도 미국식 공화국제의 독립을 선포한지 백오십 년 동안 ‘카브데라’의 독재정권이 이십이 년간을 지배하였고, (...) 또한 볼리비아가 공화국제의 독립을 선포한지 백삼십년 동안 육십육차의 혁명이 있었으며 십일 개의 헌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70명의 대통령이 집권을 하였으나 임기를 무사히 마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다.³⁰⁾

조병옥은 중남미 국가들이 모방한 미국의 대통령중심제가 안정적인 이유로 “미국의 민주 행정의 전통”을 들었다. 1955년에는 페론이 실각한 아르헨티나 혁명³¹⁾ 이후 다시 한 번 혁명에 취약한 대통령중심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³²⁾ 그러면서 1956년에는 “정치적 불안정이 만성화하였다는 정평이 있는 중남미지역에서 최근 또 수개의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며 다시 같은 논리가 반복되었다.³³⁾ 1957년 민주당의 곽상훈 의원도 중남미의 ‘혁명’을 언급하며 한국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가 알기엔 대통령제 정부형태로 민주정치를 원만히 이루고 있는 나라는 미국에 국한되어 있는

27) 동아일보. 1948. 7. 1. 1면.

28) 경향신문. 1953. 10. 6. 1면

29) 경향신문. 1954. 6. 22. 1면

30) 동아일보. 1954. 8. 22. 1면

31) 1955년의 아르헨티나의 군부 쿠데타에서 에두아르도 로나르디 장군은 “해방 혁명(Revolución Libertadora, Liberating Revolution)”을 선언하였다. <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argentina/history-7.htm> (검색일 2018년 10월 23일); https://en.wikipedia.org/wiki/Revoluci%C3%B3n_Libertadora (검색일 2018년 10월 23일)

32) 동아일보. 1955. 9. 23. 1면

33) 동아일보. 1956. 9. 27. 1면

것이며 중남미 각국에선 거의 예외없이 대통령이라고 이름만 붙인 전제군주가 장기집정을 감행하여 마침내는 유혈참국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 (...) 이런 나라에 있어 관권은 군주국가나 다름없이 강화되고 민권은 위축되어 공론은 짓밟히고 선거에 있어서는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기 마련이다. 민주정 치란 한낱 공수표에 불과한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나라와 같은 정부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 기서 아무리 국정쇄신을 찾고 아무리 민권 위주를 부르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³⁴⁾

곽상훈은 중남미의 독재 대통령을 전제군주로 등치시키는데 그러한 규정의 논리대로 “역 성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⁵⁾ 글쓴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만든 국가의 국 회의원이었지만 역성혁명이라는 전근대의 관념으로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점이 독특하 면서도 일정한 사고틀의 한계로 작동한 것 같다.

이러한 내각책임제로의 개헌 요구는 계속 거부되었다. 이승만은 1950년에 헌법을 고치는 행위야말로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헌법이 굳게 서지 못해서 국민들이 그 헌법을 보호치 못하게 되면 정당과 정객들이 헌법을 자기들에게 이롭도록 뜯어고쳐서 필경에는 무법한 혼돈상태를 이루어 세력가들이 군기(軍器)로서 다루 게 되나니 이것이 남미주 어떤 나라에서 해마다 혁명전쟁이 일어나는 연고이다. 오늘 우리나라 형편으 로는 만일 정당이나 군벌세력으로 헌법을 조변석개하게 된다면 나라가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권은 또다시 지나간 사십년 전처럼 되고 말 것이니 (...) ³⁶⁾

이승만은 내각책임제 개헌은 물론 자유당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일부 자 유당 의원들이 야당과 힘을 합쳐 내각책임제로 개헌하고 “이대통령을 뒤에 물러앉혀놓고 여당 의원 중심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논의까지 하게 된다.³⁷⁾

그러나 대통령중심제 자체가 혁명에 취약하다는 측과 일단 만들어진 헌법을 쉽게 고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측 두 입장과 달리 동일한 중남미를 비롯한 “후진지 역”의 쿠데타를 분석하면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 의견도 존재했다. <표 1>에서 나타나듯 압도적으로 혁명 관련 기사가 많았던 1958년에 “후진지역의 군부 쿠데타가 또 하나 발생하였 다”며 유행과도 같아, 해외의 새로운 쿠데타 기사가 새롭지 않은 상태를 관찰한 한 사설은 의 회 같은 정치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낙후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제가 근대화 하지 못하고 교육이 보급되지 못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잦은 것”이라고 진단했다.³⁸⁾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를 직접 경험한 역사가 짧은 사실을 기 본 전제로 공유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이 “후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쿠데 타 혹은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가거나 충분히 있다라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 다. 그러나 혁명은 반역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종류의 기사에서는 해외의 사례로서 에둘러 경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이다.

이승만과 자유당이 헌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고치거나 혹은 부정선거 등 헌법 을 어기는 행태를 이어가며 그들의 행동이야말로 ‘혁명’이고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왔다.³⁹⁾ 헌

34) 동아일보. 1957. 1. 1. 5면

35) 앞의 기사

36) 경향신문. 1950. 3. 4. 1면

37) 동아일보. 1956. 5. 24. 1면

38) 경향신문. 1958. 11. 20. 1면

39) 1956년 지방의원 임기연장을 두고 민주당의 조재천 의원은 “법이론상 지방의원의 임기를 연장한다 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대한민국을 군주전제국이니 쏘비엣 공화국이니하고 개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국회는 무제한으로 입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러한 행위가 혁명과 구테-타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 결국 의회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임기도 육년 팔년 종신 등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고 주장

법에 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상이 담겨있으므로 헌법을 고의로 위반하고 곡해하는 집권 정치세력이 반국가적 집단이라는 규정도 가능한 해석이다. 그리고 경향신문의 폐간을 초래한 여적 필화사건에서 나타나듯 폭력에 의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⁴⁰⁾ 혹은 독재와 부패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졌다.⁴¹⁾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길이 부정선거로 막힌 상황에서 폭력에 의한 정권교체의 길은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누군가 공개적으로 폭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모의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야당인 민주당 혹은 그 입장에 가까운 언론사들의 기사는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폭력 혁명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와 자유당의 입장·태도의 변화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정희를 비롯한 육사 출신 장교들이 나중에 실천하듯 만약 누군가, 특히 군대의 고위 장교가 쿠데타를 생각한다면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는 조건은 당시 신문을 통해 파악하기에 쿠데타를 일으킬만한 상태였고,⁴²⁾ 쿠데타를 어떻게 일으켜야 성공하는지에 대한 큰 틀의 방식은 신문기사의 해외 사례를 통해 이미 다 알려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왕궁이나 대통령 관저를 포위 공격하고, 방송국을 장악하여 ‘혁명’의 성공을 알리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은 기사를 통해 반복되어 제시되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군사혁명’의 지도자가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최고 권력을 유지하여 또 다른 독재의 시대를 열고 다른 쿠데타를 초래하는, 이미 1950년대에 세계에서 벌어진 현실은 대한민국의 1980년대까지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듯 하다. 다만 한국에서는 군부 쿠데타보다 일 년 앞서서 국민에 의한 혁명이 일어났다는 점이 다르지만 이 또한 근대 민주주의의 혁명사상의 논리상 가능한 경로였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서구 근대가 아닌 동양의 역성혁명을 통해 혁명을 논했다.

5. 결론

해방 후 1950년대까지 한국에서 혁명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인간 해방 운동으로서의 혁명이 신생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지표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식민지배 시기의 3·1운동은 프랑스혁명의 계보로서 혁명이 되었다. 이 자체에도 민주주의, 민족 독립, 인간 해방 등 다양한 가치와 목적이 혼재된 상태였다. 또한 3·1혁명은 다른 약소민족들을 일깨워준 운동으로서도 인식되었다. 이러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3·1혁명의 직접적인 소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래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임시정부의 전통은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혁명의 여러 층위의 의미 중 한국 내의 체제 전복적 의미(이는 이전의 혁명으로서의 3·1운동 담론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

했다. 동아일보. 1956. 2. 15. 1면

40)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현실을 논하자면 다수결의 원칙이 관용 아랑 설득에 기초한다는 정치학적 논리가 문제가 아닌 것이요, 선거가 올바르게 되느냐 못되느냐의 원시적 요건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물론 진정한 다수라는 것이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가 진정 다수결정에 무능력할 때는 결론으로는 또한가진 폭력에 의한 진정 다수결정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된 다수라는 것은 조만간 진정한 다수로 전환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일 것이니 오늘날 한국의 위기의 본질을 대국적으로 파악하는 출발점이 여기 있지 않을까.” 경향신문. 1959. 2. 4. 1면

41) 동아일보. 1959. 2. 1. 1면

42) 미국 상원에서도 당시 한국 상황이 “혁명이나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동아일보. 1959. 1. 27. 1면

았다)만 고려되어 제헌헌법부터 3·1운동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될 수 없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으로서 ‘혁명’이라는 의미는 갈수록 적게 사용되었다.

1950년대의 중후반으로 갈수록 세계 도처의 ‘제3세계’에서 독립 운동과 군부 쿠데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별 거부감없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소개되었다. 해외의 쿠데타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혁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국내 언론은 번역의 과정에서 혁명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5.16은 1961년에 아무런 무리 없이 ‘군사혁명’으로 불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1950년대의 해외의 많은 군부 쿠데타가 ‘군사혁명’으로 언론에 소개되었고, 5.16은 형식상 전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자유당의 부정적인 정치 행태는 국민적 불만을 초래했고, 야당은 내각책임제를 해야 후진국가의 잦은 쿠데타, 혁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언론과 야당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 역성혁명이 일어나거나 폭력에 의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4.19와 5.16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미 여러 논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개개인의 ‘정신적 차원의 혁명’이 없는 정치지도자의 교체, 정치체제의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없었다. 정치·경제적 ‘후진국’인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1950년대의 예측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만찬 장소 약도

《박가네 하이포크》(B)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28길 63 02-982-2929

